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96
----------	------

202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5. 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6. 5. 27.
4.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승인

##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박경환)

### ○ 2025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3조 62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6%인 55조 4,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2,404억원 (12.7%) 증가하였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1조 2,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259억원(9.5%)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4조 2,859억원입니다.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404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07억원, 지정채권 잉여금 2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조 2,826억원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보다 1조 7,956억원(120.8%)이 증가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조 9,652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7.1%인 40조 6,464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4%인 37조 3,72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조 2,743억원입니다.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375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44억원, 지정채권 잉여금 15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3조 109억원입니다.

###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총 40조 6,464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는 28조

1,297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24조 9,125억원 대비 12.9%인 3조 2,17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 부동산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으로 취득세 2조 3,868억원,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지방소득세 7,331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 제외수입은 1조 2,755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7,181억원 대비 25.8%인 △4,426억원이 부족 징수 되었습니다.
- DMC 용지,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지연 등으로 매각사업수입 △1,716억원, 재산매각수입 △2,930억원을 부족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 보조금은 9조 1,891억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9조 2,584억원의 0.7%인 △693억원이 부족 교부되었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8,094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8,320억원의 1.2%인 △226억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 그 외 지방채는 1,500억원, 지방교부세는 928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의 98.4%인 37조 3,72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주요 분야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37.5%)는 기초연금(3조 4,266억원), 생계급여(1조 5,428억원) 등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4조 169억원(98.7%)을 지출하였고,
- 두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27.2%)는 자치구 조정교부금(4조 3,995억원) 등 10조 1,469억원(99.6%)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육 분야(4조 4,269억원) 등 나머지 12개 분야에서 총 13조 2,08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375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자원 회수시설 설치(443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존 활용(76억원) 등 총 53건, 766억원이고,
  - 사고이월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172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131억원) 등 총 306건, 1,609억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316억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기초연금(218억원), 생계급여(203억원)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조 978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3%인 14조 8,469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6%인 13조 8,35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16억원입니다.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7,029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63억원, 지정채원 잉여금 7억원을 제외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717억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개 특별회계에서 총 14조 8,469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2,509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51억원, 10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2,05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 ※ 수도권사업(△83억원), 하수도사업(△368억원), 도시철도건설(△750억

원), 교통사업(60억원), 광역교통시설(△21억원), 주택사업(△638억원), 도시개발(△256억원), 균형발전(△106억원), 학교용지부담금(117억원), 의료급여기금(△445억원), 한강수질개선(△6억원), 소방(△13억원)

- 도시철도 매출공채의 부족 징수(△969억원), 매입임대 등 주택사업 국고보조금 미수령(△893억원)이 부족 징수의 주 요인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개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의 91.6%인 13조 8,353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2조 3,870억원의 81.2%인 1조 9,374억원이 지출되었고,

※ 수도사업(1조 86억원, 88.1%), 하수도사업(9,288억원, 74.8%)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12조 7,107억원의 93.6%인 11조 8,97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도시철도건설(1조 7,839억원, 95.2%), 교통사업(1조 8,748억원, 94.6%), 광역교통시설(783억원, 89.9%), 주택사업(2조 9,422억원, 94.7%), 도시개발(2조 497억원, 86.0%), 균형발전(1,896억원, 91.0%), 학교용지부담금(175억원, 82.2%), 의료급여(1조 9,374억원, 96.8%), 한강수질(279억원, 94.6%), 소방(9,966억원, 98.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7,029억원으로,

- 이 중 명시이월은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360억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270억원) 등 총 73건, 1,673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753억원),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314억원) 등 총 370건, 5,356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5,236억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545억원), 의료급여(446억원)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말 기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58조 7,637억원이고, 부채총액은 20조 9,137억원이며, 비용은 43조 8,500억원, 수익은 44조 2,857억원입니다.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356억원으로 흑자 운영되었습니다.
- 재정운영결과 흑자 전환의 주 요인은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5회계연도에는 246개 정책 사업에 대하여 45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54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100% 이상)한 지표는 365개로 전체의 80.4%입니다.
- 달성률이 130% 이상인 지표는 71개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89개입니다.
-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사업여건의 변동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을 재구조화 하고 목표를 재정립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6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세입결산

#####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40조 6,464억 3,700만원)와 특별회계(14조 8,469억 600만원)를 합한 55조 4,933억 4,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9조 2,528억 8,600만원)보다 12.6%, 6조 2,404억 5,8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 수 납 액
합 계	53,062,941	57,143,755	55,493,344	191,249	1,459,161
일반회계	37,965,184	42,156,017	40,646,437	189,947	1,319,632
특별회계 <sup>주1)</sup>	15,097,756	14,987,738	14,846,906	1,302	139,529

※ 주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57조 1,437억 5,500만원)중 1조 4,591억 6,100만원이 미수납되고, 1,912억 4,900만원이 정리보류되어 55조 4,933억 4,4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비율은 직전회계연도와 유사한 97%대의 수납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0.1%포인트 증가하고, 미수납액도 여전히 1조 4,591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5	57,143,755	55,493,344	191,249	1,459,161	97.1	2.6
2024	50,634,481	49,252,886	139,988	1,241,606	97.3	2.5
2023	52,245,294	50,758,554	293,169	1,193,571	97.2	2.3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1) 시세 세입관련

- '25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24조 8,037억 2,400만원)보다 13.4%, 3조 3,259억 4,500만원 증가한 28조 1,296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9조 4,449억 6,100만원)대비 95.5%가 수납된 것이나, 지방세 실제징수율은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3-3〉 시세 세입결산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환 금 액
2 0 2 5	24,912,528	29,444,961	28,129,669	95.5	1,949,192
2 0 2 4	24,235,274	25,900,393	24,803,724	95.8	1,964,783
2 0 2 3	24,112,184	25,000,501	23,862,799	95.4	1,634,773

- 시세 세입예산액(24조 9,125억 2,800만원)과 세입결산액(28조 1,296억 6,900만원)을 비교하면, 당초보다 12.9%, 3조 2,171억 4,100만원이 초과수납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밖에 없어 향후 세입 예·결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시세 세입예산·세입결산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2 0 2 5	24,912,528	28,129,669	3,217,141	12.9
2 0 2 4	24,235,274	24,803,724	568,450	2.3
2 0 2 3	24,112,184	23,862,799	△249,384	△1.0

- 징수결정액(29조 4,449억 6,100만원)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5조 9,003억 9,300만원)와 비교하면, 13.6%, 3조 5,445억 6,800만원 증가하였으나, 환급액은 1조 9,491억 9,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9,647억 8,300만원)에 이어 연속으로 환급액 규모가 2조원에 근접하고 있는 바,
- 납세자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전 검증을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 지방세 환급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환급액	행기 착오	정관 오	납세 권구 제	납세 자 착오	차 미 등 기	국 경 세 정	법 개 령 정	법 정 인 산	기 타
지 방 세	1,949,192	2,390	210,222	35,125	12,790	257,181	19,967	1,399,294	12,220	
취 득 세	206,657	520	169,111	18,388	-	-	17,727	-	908	
주 민 세	2,155	57	669	1,345	-	-	-	-	82	
재 산 세	14,989	1,247	5,158	6,193	-	-	170	-	2,218	
자 동 차 세	10,306	7	1	259	9,656	-	23	-	357	
레 저 세	-	-	-	-	-	-	-	-	-	
담 배 소 비 세	22	-	-	-	-	-	-	-	22	
지 방 소 비 세	-	-	-	-	-	-	-	-	-	
지 방 소 득 세	1,691,847	55	22,235	6,035	-	256,345	284	1,399,294	7,595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75	75	115	123	-	-	-	-	60	
지 방 교 육 세	20,475	387	12,070	2,625	3,126	-	1,562	-	701	
지 난 년 도 수 입	2,362	38	857	153	7	836	196	-	27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917 ('26. 4. 7.)

- '25회계연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8조 1,296억 6,9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24조 9,125억 2,800만원보다 3조 2,171억 4,100만원 증가한 바,

- 취득세(2조 3,868억 1,500만원 증가), 재산세(1,240억 7,100만원 증가), 지방소득세(7,330억 4,600만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77억 3,700만원 증가), 지방교육세(2,065억 100만원 증가)는 증가되었으나,
- 주민세(△111억 5,300만원 감소), 자동차세(△723억 2,900만원 감소), 레저세(△15억 300만원 감소), 담배소비세(△209억 6,700만원 감소), 지방소비세(△1,445억 3,200만원 감소)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sup>주1)</sup>	24,685,696	27,893,383	3,207,687	13.0
①	취 득 세	5,600,501	7,987,316	2,386,815	42.6
⑤	주 민 세	824,014	812,861	△11,153	△1.4
②	재 산 세	3,682,864	3,806,935	124,071	3.4
④	자 동 차 세	1,116,638	1,044,309	△72,329	△6.5
	레 저 세	105,158	103,655	△1,503	△1.4
	담 배 소 비 세	561,574	540,607	△20,967	△3.7
③	지 방 소 비 세	2,909,211	2,764,679	△144,532	△5.0
⑥	지 방 소 득 세	7,833,107	8,566,153	733,046	9.4
	지역자원시설세	294,266	302,003	7,737	2.6
	지 방 교 육 세	1,758,363	1,964,864	206,501	11.7

※ 주1)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 ①취득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5조 6,005억 100만원)보다 2조 3,868억 1,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 ②재산세도 직전회계연도보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3조 6,828억 6,400만원)보다 1,240억 7,1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③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소비지출분 19.3%, 취득세 등 보전분 6%)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인 바,
  - '25회계연도 국세 수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은 설비투자 및 수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3조 1,000억원 감소하였으며 모세(母稅)인 부가가치세의 수납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 또한 당초 세입예산액(2조 9,092억 1,100만원)보다 △1,445억 3,200만원(△ 5.0%) 부족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 특히, '25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안분비율과 비교할 때 소비 지출분(19.3%)은 12.6%로 △0.4%포인트 감소하고, 취득세 등 보전분(6%)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타·시도의 안분비율에 가중치를 달리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안분비율이 직전회계연도 대비 추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 특수성과 부가가치세 수납기여도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지출분 및 취득세 등 보전분 등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④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및 유류세 인하정책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1,166억 3,800만원)보다 △723억 2,900만원(△6.5%) 부족 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 ⑤주민세는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4회계연도에는 443만원이었으나, '25회계연도에는 455만원으로 2.7% 증가하였음에도 '25회계연도 서울시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Delta 0.2\%p$  하락하였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세점 기준이 완화되어 면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세는 세입예산액 보다  $\Delta 111$ 억 5,3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⑥지방소득세 수입은 '24회계연도 귀속 법인실적 개선 및 주택 매매량 및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입예산액(7조 8,331억 700만원) 보다 9.4%, 7,330억 4,6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7〉 지방소득세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7,833,107	8,566,153	733,046	9.4
	종합소득분	924,409	1,101,184	176,775	19.1
	양도소득분	723,394	907,680	184,286	25.5
	법인소득분	2,217,473	2,460,979	243,506	11.0
	특별징수분	3,967,831	4,096,308	128,477	3.2

## 2) 시세 세입증 미수납액 관련

- '25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9,685억 5,600만원)보다 16.6%, 1,605억 3,300만원 증가한 1조 1,290억 8,9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8〉 시세세입 수납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5	29,444,961	28,129,669	95.5	1,129,089	3.8
2 0 2 4	25,900,393	24,803,724	95.8	968,556	3.7
2 0 2 3	25,000,501	23,862,799	95.4	852,112	3.4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된 시세 수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5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1조 1,290억 8,9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4,982억 9,400만원과 지난해도분 미수납액 6,307억 9,400만원으로 확인됨
-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9,685억 5,600만원)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납세태만(47.0%, 5,305억 2,100만원)과 무재산(42.0%, 4,736억 9,200만원)에 따른 미수납 비중이 커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징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5회계연도에 발생된 시세 미수납액(1조 1,290억 8,900만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26년 2월말 기준으로 7.5%(850억 8,800만원)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고, 지난 '24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9,685억 5,600만원)의 경우에도 '25년 2월말 기준으로 8.7%, 842억 4,3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미납된 시세에 대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당해연도분의 경우, 납세태만 비중이 34.3%로 확인되며 지난해도분에 대한 장기 체납일수록 납세태만 비중(57.0%)이 높아 체납 기

간별로 미수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취위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 도래		
합계	1,129,089	473,692	36,147	530,521	21,251	2,235	13	2,386	3,692	1,860	-	57,288	
	(100.0)	(42.0)	(3.2)	(47.0)	(1.9)	(0.2)	(0.0)	(0.2)	(0.3)	(0.2)	(0.0)	(5.1)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498,294	265,154	7,281	171,157	404	559	1	173	1,181	245	5	52,129	
	(100.0)	(53.2)	(1.5)	(34.3)	(0.1)	(0.1)	(0.0)	(0.0)	(0.2)	(0.0)	(0.0)	(10.5)	
취득세	135,266	47,540	2,876	60,189	-	51	-	166	184	16	5	24,234	
주민세	7,565	5,364	28	2,154	5	-	-	-	-	-	-	10	
재산세	60,522	32,296	570	26,370	25	19	1	-	492	-	-	745	
자동차세	50,155	33,985	306	15,441	21	4	-	-	11	-	-	385	
레저세	-	-	-	-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	-	-	
지방소비세	-	-	-	-	-	-	-	-	-	-	-	-	
지방소득세	202,542	123,139	3,184	51,440	334	471	-	4	375	227	-	23,364	
지역자원시설세	4,808	1,965	29	2,781	5	6	-	-	12	-	-	6	
지방교육세	37,433	20,861	285	12,778	11	6	-	3	104	-	-	3,382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630,794	208,537	28,866	359,363	20,846	1,676	12	2,212	2,510	1,615	-5	5,159	
	(100.0)	(33.1)	(4.6)	(57.0)	(3.3)	(0.3)	(0.0)	(0.4)	(0.4)	(0.3)	(0.0)	(0.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917 ('26. 4. 7.)

### 3) 시세 세입중 정리보류액 관련

- '25회계연도에 대한 시세 세입 결산결과 정리보류액은 직전회계연도 (1,281억 1,200만원)보다 45.3%, 580억 9,000만원 증가한 1,862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분 정리보류액(154억 8,400만원)과 지난연도분(1,707억 1,800만원)으로 확인됨

〈표 3-10〉 지방세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정리 보류액	사유별 현황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세 정리보류	평가액 부족	기 타
2025	186,202	179	1,739	10,951	976	107,080	124	-	48,509	16,640
	(100.0)	(0.1)	(0.9)	(5.9)	(0.5)	(57.5)	(0.1)	(0.0)	(26.1)	(8.9)
2024	128,112	270	4,960	17,051	818	79,268	12	-	19,171	6,557
	(100.0)	(0.2)	(3.9)	(13.3)	(0.6)	(61.9)	(0.0)	-	(15.0)	(5.1)
2023	285,589	133	259	15,977	1,739	214,939	32	-	39,714	12,794
	(100.0)	(0.0)	(0.1)	(5.6)	(0.6)	(75.3)	(0.0)	-	(13.9)	(4.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917 ('26. 4. 7.)

- '25회계연도에 발생된 정리보류액은 무재산이 57.5%, 1,070억 8,000만원, 평가액 부족이 485억 900만원, 소멸시효 완성이 109억 5,1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무재산 등에 따른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한 후 이루어지게 되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정리보류(109억 5,100만원)는 과세관청이 시효 중단을 위한 채권 보전 조치를 소홀한 측면도 있어 체납처분 유예 및 시효 관리 등의 채권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22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다를 뿐 정리보류 또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적용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잠정적으로 소멸시켜 주는 것인 바,
  -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는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엄격히 적용하여 해당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지방세 세목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리 보 류 액									
		배분금액 부 족	채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 재 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 세 정리보류	평가액 부 족	기 타	
합	계	186,202	179	1,739	10,951	976	107,080	124	-	48,509	16,640
	당해연도수입	15,484	-	50	-	20	9,300	-	-	3,774	2,337
	취 득 세	4,516	-	-	-	-	1,182	-	-	2,635	698
	주 민 세	1,112	-	-	-	-	564	-	-	1	546
	재 산 세	897	-	-	-	5	162	-	-	475	253
	자 동 차 세	582	-	-	-	-	211	-	-	23	344
	레 저 세	-	-	-	-	-	-	-	-	-	-
	담 배 소 비 세	-	-	-	-	-	-	-	-	-	-
	지 방 소 비 세	-	-	-	-	-	-	-	-	-	-
	지 방 소 득 세	7,613	-	50	-	12	6,908	-	-	432	208
	지 역 자 원 시 설 세	61	-	-	-	-	12	-	-	36	13
	지 방 교 육 세	701	-	-	-	1	257	-	-	168	273
	지 난 년 도 수 입	170,718	179	1,688	10,951	956	97,780	123	-	44,734	14,30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917 ('26. 4. 7.)

#### 4)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수가 가감되는 수입원으로서 시세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25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결산결과, 예산액(1조 7,180억 7,200만원)보다 △25.8%, △4,426억 원 감소된 1조 2,754억 7,2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 최근 3개 회계연도의 결산율을 검토하면, 2023회계연도 104.0%, 2024회계연도 88.2%, 2025회계연도 74.2%로 감소하고 있어 세외수입 추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8,630억 9,600만원)보다 △18.2%, △1,575억 200만원 감소된 7,055억 9,4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 **이자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결산액 및 금리인하 기조 등을 감안하여 86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별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이자 반납액이 당초 예측치보다 증가하고, 수입 추계 대비 보조금 정산이자 초과 징수 등의 사유로 160억 8,4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수입**은 3,70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028억 8,200만원으로 제출된 바, DMC F1·F2 용지 공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에 따른 매각지연으로 매각사업수입 예산 1,716억 200만원 전액이 미수납된 결과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됨

-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의 경우, 지난 '22회계연도부터 매각이 불발되어 미수납 및 감액 조정을 반복한 사례로서 '25회계연도에도 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사유로 예산 전액을 부족 수납 처리하는 형태가 반복되었기에 실제 매각 가능한 시점에만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8,072억 600만원)보다 △34.3%, △2,771억 8,700만원 감액된 5,300억 1,9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예산액(3,797억 4,600만원)중 867억 3,6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①구) 국립보건원 부지 공유재산 매각 유찰(△1,272억 5,700만원), ②DMC 홍보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연(△1,016억 4,300만원), ③신흥역세권 매각대금 잔금 미납(△674억 2,600만원) 등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은 예산액 91억 2,300만원 중 32억 9,400만원이 수납되고, 변상금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환급액이 수납액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결산(△2억 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송파구청이 관리 중인 시 도로에 대해 롯데물산(주)에 부과했던 변상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기존에 수납된 변상금과 환급이자 등 총 50억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따로 편성하지 않고, 현년도 세입 예산에서 직접 반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세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오납된 세목을 정정하는 '경정'의 성격으로 이해하려는 집행기관의 관행으로 사료되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판단됨

- 특히,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25년 5월) 및 확정('25년 6월) 시기를 감안할 때,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현행 법령의 반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 현행 법령이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반환의 경우에도 세입조치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현금주의 단식회계에서 세입결산이 음수(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회계질서를 도외시한 사례일 수밖에 없어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12〉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5 회 계 연 도			2 0 2 4 회 계 연 도			2 0 2 3 회 계 연 도		
	예산액	실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수납액	수납률
세 외 수 입	1,718,072	1,275,472	74.2	1,471,493	1,298,325	88.2	1,335,051	1,388,503	104.0
경 상 적 외 수 입	863,096	705,594	81.8	863,465	663,254	76.8	784,933	725,351	92.4
재입대수입	202,323	189,661	93.7	183,716	174,015	94.7	159,401	172,253	108.1
사용료입	153,216	157,923	103.1	144,229	159,816	110.8	155,688	154,990	99.6
수수료입	38,820	37,800	97.4	41,640	34,894	83.8	38,799	36,405	93.8
사업수입 <sup>주1)</sup>	370,527	202,882	54.8	367,492	202,865	55.2	296,900	212,223	71.5
징수교부금수	11,506	14,538	126.4	10,992	14,916	135.7	11,394	8,700	76.4
이자수입	86,702	102,786	118.6	115,393	76,745	66.5	122,748	140,776	114.7
임 시 적 외 수 입	807,206	530,019	65.7	569,364	595,758	104.6	511,971	626,626	122.4
재산매각수입 <sup>주2)</sup>	379,746	86,736	22.8	151,252	82,004	54.2	149,218	168,042	112.6
자치단체간부담금	15,515	15,741	101.5	13,276	13,022	98.1	13,770	13,392	97.3
보조금환수입	275,272	270,965	98.4	248,251	295,306	119.0	213,478	297,241	139.2
기타수입	136,671	156,575	114.6	156,584	205,425	131.2	135,503	147,949	10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9,123	3,294	36.1	8,218	14,583	177.4	7,648	7,766	101.5
과징금	669	1,048	156.7	920	758	82.5	691	588	85.2
이행강제금	-	-	0.0	-	-	-	-	-	-
변상금	5,861	△207	△3.5	4,684	11,340	242.1	4,470	4,403	98.5
과태료	2,442	2,357	96.5	2,508	2,336	93.1	2,361	2,482	105.1
환수금	-	64	-	-	70	순증	-	132	순증
부담금	150	30	20.1	105	77	73.5	124	158	127.0
범칙금 <sup>주3)</sup>	-	-	0.0	-	-	-	-	-	-
지난년도수입	38,645	36,564	94.6	30,445	24,728	81.2	30,498	28,759	94.3

주1) 매각사업수입 △1,716억 200만원 (DMC F1,F2 용지 매각 수입) 포함

주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930억 2,600만원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DMC 홍보관 매각) 포함

주3)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도부터 “범칙금”이 신설

## 5) 지방교부세 관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25회계연도 서울시의 지방교부세 실제수납액은 927억 7,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28억 3,200만원) 대비 △35.0%, △500억 5,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	
	본예산	추경예산	간주처리			
	A=B+C+D	B	C	D	E	F=E-A
지방교부세	94,134	86,811	1,630	5,693	92,779	△1,355
보통교부세	51,802	51,802	-	-	49,082	△2,720
특별교부세	5,693	-	-	5,693	7,058	1,365
소방안전교부세	36,639	35,009	1,630	-	36,639	-

- **보통교부세**는 법령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518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366억 3,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보통교부세**의 경우, '25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의 최종 교부 결정 및 산정 결과에 따라 실제수납액은 기정예산액(518억 200만원)보다 △27억 2,000만원 감액된 490억 8,200만원으로 확인됨



- 특히, 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 중 서울시에 대한 안분비율은 '22회계연도 결산 기준 0.38%에서 '25회계연도 0.18%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대정부 요구는 의견 회신 형태로 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6) 국고보조금등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인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편성하되, ①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③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 시도 동 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수납하고 있음
  
- '25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9조 1,891억 1,3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9조 2,584억 1,100만원)보다 △ 0.7%, △692억 9,800만원이 부족 수납된 바, 주된 원인은 소관 중앙부처가 회계연도 말에 확정내시를 변경하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교부를 보류한 것으로 사료됨
  - 결산결과를 세입과목별로 검토하면, ①**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8조 8,025억 8,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예산액(8조 8,681억 8,300만원)보다 △0.7%, △655억 9,500만원이 부족 수령되었고,
  - 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은 728억 7,7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744억 7,000만원)보다 △2.1%, △15억 9,300만원이 부족 수령되었으며,
  - ③**기금(511-03)**의 경우, 3,136억 4,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예산액(3,157억 5,700만원)보다 △0.7%, △21억 1,000만원이 부족 수령된 것임

〈표 3-14〉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C)=(B)-(A)	부족수령액 (C)/(A)
		수납액 (B)	수납률 (B)/(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9,258,411	9,189,113	99.3	△69,298	△0.7
국고보조금(511-01)	8,868,183	8,802,588	99.3	△65,595	△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511-02)	74,470	72,877	97.9	△1,593	△2.1
기금(511-03)	315,757	313,647	99.3	△2,110	△0.7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표 3-15〉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실제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11,345,543	11,076,542	△269,001
일반회계 <sup>주1)</sup>		9,258,411	9,189,113	△69,298
특별회계		2,087,132	1,887,429	△199,703
기타특별회계 <sup>주1)</sup>		2,052,854	1,853,151	△199,70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420	3,420	-
교통사업특별회계		81,752	79,082	△2,670
균형발전특별회계		57,994	58,061	67
도시개발특별회계		166,890	159,090	△7,8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1,808	167,508	△14,300
소방특별회계		3,054	3,05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19,579	977,067	△42,512
주택사업특별회계		511,802	379,837	△131,965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552	26,029	△523
공기업특별회계 <sup>주2)</sup>		34,278	34,278	-
수도사업특별회계		484	484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794	33,794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 ① 국고보조금(511-01)
-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③ 기금(511-03)을 포함한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 현황임

주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 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과
- ② 보조금수익(673)중 국고보조금(673-01)에 대한 수입결산 현황임

※ 자료근거 : ① 「2025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

② 「2025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③ 「2025년도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4조 9,877억 3,800만원)의 99.1%, 14조 8,469억 6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 미수납액(1,395억 2,9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규모(1,524억 4,300만원)보다 △8.4%, △129억 1,400만원 감소하였고, 정리보류액(13억 200만원) 또한 직전회계연도보다 △66.0%, △25억 2,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6〉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 수 납 액		정리보류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5	14,987,738	14,846,906	99.1	139,529	0.9	1,302
2 0 2 4	14,627,642	14,471,368	98.9	152,443	1.0	3,830
2 0 2 3	14,783,418	14,543,285	98.4	235,941	1.6	4,19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917 ('26. 4. 7.)

- 회계별로 구분하면, ①교통사업특별회계(361억 6,300만원), ②주택사업특별회계(324억 300만원), ③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251억 7,500만원), ④수도사업특별회계(236억 8,500만원), ⑤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175억 1,000만원) 등에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미수납액 감소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7〉 특별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정리보류액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합	계	14,987,738	14,846,906 (99.1)	1,302 (0.0)	139,529 (0.9)
	기 타 특 별 회 계	12,596,140	12,504,961 (99.3)	510 (0.0)	90,668 (0.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98,801	1,798,781 (100.0)	- (-)	20 (0.0)
	① 교통 사업 특 별 회 계	2,024,286	1,987,828 (98.2)	294 (0.0)	36,163 (1.8)
	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2,537	85,027 (82.9)	- (-)	17,510 (17.1)
	② 주택 사업 특 별 회 계	3,075,658	3,043,255 (98.9)	- (-)	32,403 (1.1)
	도시 개발 특 별 회 계	2,362,176	2,358,708 (99.9)	200 (0.0)	3,268 (0.1)
	균형 발전 특 별 회 계	197,733	197,733 (100.0)	- (-)	- (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963	32,963 (100.0)	- (-)	-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58,582	1,957,688 (100.0)	- (-)	894 (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872	28,872 (100.0)	- (-)	- (0.0)
	소 방 특 별 회 계	1,014,527	1,014,103 (100.0)	15 (0.0)	407 (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391,598	2,341,945 (97.9)	791 (0.0)	48,861 (2.0)
	④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160,839	1,136,580 (97.9)	573 (0.0)	23,685 (2.0)
	③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30,758	1,205,364 (97.9)	217 (0.0)	25,175 (2.0)

- 기타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는 납세태만이 전체의 73.1%(662억 9,200만원)를 차지하는 바, 특히 ①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미수납액의 99.7% (360억 5,900만원), ②주택사업특별회계도 전체 미수납액의 92.2% (298억 9,000만원)가 납세태만에 따라 발생한 미수납액으로 확인되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8〉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 또는 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 미 도 래	기	
합 계	90,668 (100.0)	48 (0.1)	416 (0.5)	66,292 (73.1)	392 (0.4)	- -	478 (0.5)	- -	81 (0.1)	7,167 (7.9)	15,790 (17.4)		
도시 철도 건설 사업 비	20 (100.0)	20 (100.0)	- -	- -	- -	- -	- -	- -	- -	- -	- -	- -	- -
① 교 통 사 업	36,163 (100.0)	- -	- -	36,059 (99.7)	- -	- -	- -	- -	- -	- -	- -	104 (0.3)	
광역 교 통	17,510 (100.0)	- -	- -	- -	356 (2.0)	- -	417 (2.4)	- -	43 (0.3)	3,916 (22.4)	12,775 (73.0)		
소 방	407 (100.0)	28 (7.1)	21 (5.4)	263 (64.7)	35 (8.8)	- -	16 (4.0)	- -	37 (9.2)	3 (0.8)	- -		
② 주 택 사 업	32,403 (100.0)	- -	394 (1.2)	29,890 (92.2)	- -	- -	45 (0.1)	- -	- -	1,774 (5.5)	298 (0.9)		
도시 개 발	3,268 (100.0)	- -	- -	78 (2.4)	- -	- -	- -	- -	- -	577 (17.7)	2,612 (79.9)		
의 료 급 여 기 금	894 (100.0)	- -	- -	- -	- -	- -	- -	- -	- -	894 (100.0)	- -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1조 1,608억 3,900만원)의 97.9%인 1조 1,365억 8,0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1,608억 3,900만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증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1조 1,439억 8,600만원)보다 1.4%, 168억 5,3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1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5~'24)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2 0 2 5		1,160,839 (100.0)	1,136,580 (97.9)	573 (0.0)	23,685 (2.0)
	당해연도분	1,138,359 (100.0)	1,119,055 (98.3)	0 (0.0)	19,304 (1.7)
	지난년도수입	22,480 (100.0)	17,525 (78.0)	573 (2.5)	4,381 (19.5)
2 0 2 4		1,143,986 (100.0)	1,121,036 (98.0)	371 (0.0)	22,578 (2.0)
	당해연도분	1,083,293 (100.0)	1,064,244 (98.2)	- (-)	19,049 (1.8)
	지난년도수입	60,692 (100.0)	56,792 (93.6)	371 (0.6)	3,529 (5.8)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96 ('26. 4. 6)

-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25억 7,800만원)보다 4.9%, 11억 700만원 증가한 236억 8,5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자금압박을 사유로 67.9% 160억 8,9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체납된 세입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조 2,307억 5,800만원)의 97.9%인 1조 2,053억 6,4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191억 8,400만원) 보다 31.2%, 59억 9,100만원 증가한 251억 7,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수납 규모 축소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미수납 사유별로는 ‘자금압박’이 전체 미수납액의 62.3%(156억 8,500만원)로 주된 원인이며, ‘납세태만’ 또한 16.6%(41억 8,100만원)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체납된 세입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5~'24)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2025		1,230,758 (100.0)	1,205,364 (97.9)	217 (0.0)	25,175 (2.0)
	당해연도분	1,207,717 (100.0)	1,192,302 (98.7)	- (0.0)	15,415 (1.3)
	지난년도수입	23,040 (100.0)	13,062 (56.7)	217 (0.9)	9,760 (42.4)
2024		1,174,344 (100.0)	1,154,243 (98.2)	916 (0.1)	19,184 (1.6)
	당해연도분	1,121,654 (100.0)	1,107,164 (98.7)	8 (0.0)	14,481 (1.3)
	지난년도수입	52,689 (100.0)	47,078 (89.4)	908 (1.7)	4,703 (8.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79 ('26. 4. 8)

## (4) 지방채 관련

### 1) 지방채 개요

- '25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11조 3,375억 3,900만원)보다 2.0%, 2,319억 3,100만원 증가된 **11조 5,694억 7,100만원**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25회계연도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1,500억원을 차환함에 따라 '25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342억원)보다 1,500억원 증가한 **1,842억원**임
  - **특별회계**의 경우, '25회계연도 중 지방채 1조 6,845억 1,600만원을 발행하고, 1조 5,920억 8,500만원이 소멸된 결과 '25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10조 8,033억 3,900만원)보다 924억 3,100만원 증가된 **10조 8,957억 7,100만원**이며,
  - **기금**의 경우에는 '25회계연도 중 지방채 3,395억원을 발행하고, 3,500억원을 상환한 결과 '25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5,000억원)보다 △105억원 감소된 **4,895억원**으로 확인됨

〈표 3-21A〉 2025회계연도 중 지방채<sup>주1)</sup>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sup>주2)</sup>	2024년도말 현 재 액	2025회계연도 중 증감현황			2025년도말 현 재 액	2025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발생액 <sup>주3)</sup> ①	소멸액 <sup>주4)</sup> ②	증감액 ①-②			
총 계			11,337,539	2,174,016	1,942,085	231,931	11,569,471	215,559	
일반 회 계 (합계)			34,200	150,000	-	150,000	184,200	783	
일반 회 계		마곡산업치 공공원센터(M+센터) 건립	모 집 공 채	24,000	-	-	-	24,000	549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모 집 공 채	8,200	-	-	-	8,200	187
		단 절 된 녹 지 축 연 결	모 집 공 채	2,000	-	-	-	2,000	45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	모 집 공 채	-	150,000	-	150,000	150,000	-
특 별 회 계 (합계)			10,803,339	1,684,516	1,592,085	92,431	10,895,771	207,770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10,803,339	1,684,516	1,592,085	92,431	10,895,771	207,770	
도시 철도 건설 사업비 특별 회 계		도시철도공채 상환(양금 상환) <sup>주5)</sup>	도시철도공채	5,275,193	570,016	774,339	△204,323	5,070,871	69,665
		도시철도공채 상환(양금 상환) <sup>주6)</sup>	모집공채양금	663,000	87,000	-	87,000	750,000	22,455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모 집 공 채	213,600	-	-	-	213,600	6,732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 집 공 채	210,200	89,500	-	89,500	299,700	6,711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 집 공 채	152,200	-	-	-	152,200	3,017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 집 공 채	63,000	20,000	-	20,000	83,000	2,226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모 집 공 채	76,000	-	-	-	76,000	2,911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사비)	모 집 공 채	50,000	-	-	-	50,000	1,475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사비)	모 집 공 채	-	75,000	-	75,000	75,000	-
광역 교통 시설 특별 회 계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모 집 공 채	213,000	-	-	-	213,000	5,261
		동부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사계)	공 자 기 금	83,400	-	-	-	83,400	1,138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30,000	-	-	-	30,000	727
주택 사업 특별 회 계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양도공채	723,552	108,000	164,570	-	666,981	15,825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양금	602,000	265,000	265,000	-	602,000	16,417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모 집 공 채	12,000	-	-	-	12,000	373
		청년 매입임대 사업	모 집 공 채	192,000	-	-	-	192,000	3,766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모 집 공 채	60,000	60,000	60,000	-	60,000	2,377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모 집 공 채	120,000	-	-	-	120,000	3,474
도시 개발 특별 회 계		장미잡행 도시공원 보양사업(시공원)	모 집 공 채	1,280,000	280,000	280,000	-	1,280,000	24,306
		풍납토성 복원	모 집 공 채	48,000	-	-	-	48,000	859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모 집 공 채	15,000	-	-	-	15,000	268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모 집 공 채	12,000	-	-	-	12,000	21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모 집 공 채	10,000	-	-	-	10,000	179

주1) 지방채는 지방채무 중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한 것임(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 미포함)

주2)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3)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5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4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5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모든 사업은 상황에 따라 지방채가 소멸된 것임

주5)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 그 자체에 대한 것임

주6)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모집공채, 정부자금채 등)에 대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② '24~'25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1B〉 2025회계연도 중 지방채<sup>주1)</sup>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sup>주2)</sup>	2024년도말 현재액	2025회계연도중 증감현황			2025년도말 현재액	2025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발생액 <sup>주3)</sup>	소멸액 <sup>주4)</sup>	증감액 ①-②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신림 ~ 봉천터널 건설	생생금모집채	69,368	-	13,025	△13,025	56,343	985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생생금모집채	87,325	-	5,150	△5,150	82,175	1,750
	안양교 확장	공채금모집채	31,500	-	-	-	31,500	645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교~녹천교)	모집채공채금	16,900	-	-	-	16,900	230
	월드컵 대교 건설	모집공채	124,500	-	-	-	124,500	2,560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모집공채	99,996	-	-	-	99,996	2,24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모집공채	65,611	-	-	-	65,611	1,228
	양재대로 구조개선	모집채생생금	48,000	25,000	24,000	1,000	49,000	1,684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모집공채	32,393	-	-	-	32,393	814
	한강상교량 연결로 구조 개선(올림픽대교 남단)	모집공채	11,000	-	-	-	11,000	194
	사당로(구) 범진여객~ 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모집공채	4,000	-	-	-	4,000	70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모집공채	2,000	-	-	-	2,000	35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모집공채	5,000	-	-	-	5,000	118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모집공채	3,000	-	-	-	3,000	71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모집공채	2,000	-	-	-	2,000	47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모집공채	21,100	-	-	-	21,100	648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상생기금	6,000	-	6,000	△6,000	-	205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집공채	-	40,000	-	40,000	70,000	1,52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	모집공채	-	25,000	-	25,000	25,000	36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모집공채	-	30,000	-	30,000	30,000	441
디지털3차도신길간 지하차도 건설	모집공채	-	10,000	-	10,000	10,000	147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모집공채	5,000	-	-	-	5,000	102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모집공채	11,000	-	-	-	11,000	196
	사당역 구형역 알레고리관 개선사업	모집공채	7,000	-	-	-	7,000	156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모집공채	2,500	-	-	-	2,500	55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모집공채	14,000	-	-	-	14,000	320
<b>공 기 업 특 별 회 계 ( 소 계 )</b>			-	-	-	-	-	
<b>기 금 ( 합 계 )</b>			<b>500,000</b>	<b>339,500</b>	<b>350,000</b>	<b>△10,500</b>	<b>489,500</b>	<b>7,005</b>
재난 관리 기금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sup>주5)</sup>	모집공채	500,000	339,500	350,000	△10,500	489,500	7,005

주1) 지방채는 지방채무 중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한 것임(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 미포함)

주2)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3)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5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4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5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모든 사업은 상황에 따라 지방채가 소멸된 것임

주5)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② '24~'25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 2) 지방채 발행

- '25회계연도의 지방채 **발생액**은 직전회계연도(1조 6,226억 3,700만원)보다 33.9%, 5,513억 7,900만원 증가된 2조 1,740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차환한 지방채 1,500억원과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조 6,845억 1,600만원, 기금에서 지방채 3,395억원을 발행한 것임
  
- 회계별로 세부 발행내역을 검토하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20회계연도에 발행한 지방채 1,500억원을 차환하기 위해 모집공채 1,500억원을 발행한 것임
  - **특별회계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1조 1,118억 3,700만원)보다 △2,703억 2,100만원 감소된 8,415억 1,6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 ① **도시철도공채** 5,700억 1,600만원이 매출공채로 발행되었으며 ② '25회계연도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도시철도공채**('18회계연도 발행분)중 일부(870억원)를 차환하는 모집공채를 발행하고,
    - ③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895억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200억원) 등의 지하철 건설사업과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750억원)에 총 1,845억원의 모집공채를 발행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3,240억원)보다 1,090억원 증가된 4,33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 '25회계연도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2,650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1,080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600억원)을 차환하는 모집공채를 발행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968억원)보다 323.5%, 3,132억원 증가된 4,1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 '25회계연도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2,800억원)을 차환하는 모집공채를 발행하고,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400억원)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25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300억원), **양재대로 구조개선**(250억원),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신설**(100억원)의 재원 조성을 위해 모집공채를 발행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법령에 따라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나 예산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 '25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3조 854억 6,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통해 총 2조 2,838억 5,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음

- 결산결과 실제 발행규모(2조 1,740억 1,600만원)는 지방채 최종예산(2조 2,838억 5,800만원)보다 △1,098억 4,200만원 감소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편성된 대로 전액 발행하였지만
- ① 특별회계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는 실제 매출규모(5,700억 1,600만원)가 최종예산 편성 당시 추계(6,669억 5,800만원)보다 △969억 4,200만원 감소되었으며,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편성한 정부자금채 24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고, ③ 기금의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 자원조성**을 위해 최종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것(3,500억원)보다 △105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최종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정부자금채 24억원을 차입하지 않았음에도 세입예산 규모를 경정하지 않아 세출예산에서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바,
-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액을 증·감 조정하여 회계의 운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22〉 202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예산 편성현황 및 실제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한도액	기본 한도액	별도 한도액	한도액	산정내역				
'2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3,085,466	1,544,400	1,541,066		◦ 기본 한도액 = [경상일반재원(25,483,214,048천원) - 채무잔액(11,442,497,734천원)] × 11% ◦ 별도 한도액 = 도시철도공채 발행액(570,016,000천원)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 총액의 50%(971,050,000천원)				
사업명	예산 편성 현황				실제 발행 현황					발행액과 편성액 간 차이
	발행방법	예산편성액 (최종예산)	기본도내 편성액	별도도내 편성액	발행액 <sup>주1)</sup>	발행일	발행방법	발행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①			②					③-①
<b>총 계</b>		<b>2,283,858</b>	<b>1,141,900</b>	<b>1,141,958</b>	<b>2,174,016</b>					<b>△109,842</b>
<b>일반회계 소계</b>		<b>150,000</b>	<b>75,000</b>	<b>75,000</b>	<b>150,000</b>					<b>-</b>
재난관리기금 지방채(차환)	모집공채	150,000	75,000	75,000	150,000	7.16.	모집공채	2.952%	7년물	-
<b>특별회계 소계</b>		<b>1,783,858</b>	<b>716,900</b>	<b>1,066,958</b>	<b>1,684,516</b>					<b>△99,342</b>
<b>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b>		<b>938,458</b>	<b>228,000</b>	<b>710,458</b>	<b>841,516</b>					<b>△96,942</b>
도시철도 매출공채 <sup>주2)</sup>	매출공채	666,958	-	666,958	570,016	연중	매출공채	2.5%	7년물	△96,942
도시철도공채 상환(차환) <sup>주3)</sup>	모집공채	87,000	43,500	43,500	87,000	3.27.	모집공채	2.945%	5년물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집공채	20,000	20,000	-	20,000	12.12.	모집공채	3.3%	3년물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집공채	89,500	89,500	-	89,500	12.12.	모집공채	3.11%	2년물	-
노후전동차 교체	모집공채	75,000	75,000	-	75,000	12.9.	모집공채	3.212%	3년물	-
<b>주택사업특별회계</b>		<b>433,000</b>	<b>216,500</b>	<b>216,500</b>	<b>433,000</b>					<b>-</b>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차환)	모집공채	85,000	42,500	42,500	85,000	10.29.	모집공채	3.117%	10년물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차환)	모집공채	180,000	90,000	90,000	180,000	11.20.	모집공채	3.622%	15년물	-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차환)	모집공채	60,000	30,000	30,000	60,000	11.20.	모집공채	3.622%	15년물	-
공공임대주택 매입(차환)	모집공채	108,000	54,000	54,000	108,000	10.29.	모집공채	3.117%	10년물	-
<b>도시개발특별회계</b>		<b>412,400</b>	<b>272,400</b>	<b>140,000</b>	<b>410,000</b>					<b>△2,400</b>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차환)	모집공채	280,000	140,000	140,000	280,000	4.17.	모집공채	2.803%	7년개물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모집공채	25,000	25,000	-	25,000	3.27.	모집공채	2.945%	5년물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모집공채	30,000	30,000	-	30,000	3.27.	모집공채	2.945%	5년물	-
국화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집공채	40,000	40,000	-	40,000	3.27.	모집공채	2.945%	5년물	-
다산로 지하차도 건설	모집공채	10,000	10,000	-	10,000	3.27.	모집공채	2.945%	5년물	-
양재대로 구조개선	모집공채	25,000	25,000	-	25,000	3.27.	모집공채	2.945%	5년물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 자금채 <sup>주4)</sup>	2,400	2,400	-	-	-	-	-	-	△2,400
<b>기금 소계</b>		<b>350,000</b>	<b>350,000</b>	<b>-</b>	<b>339,500</b>					<b>△10,500</b>
재난관리기금 조성(1차)	모집공채	350,000	350,000	-	169,500	12.19.	모집공채	3.46%	5년개물	△10,500
재난관리기금 조성(2차)	모집공채				170,000	12.23.	모집공채	3.497%	5년개물	

주1) '2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액(2조 1,740억 1,600만원)은 모두 당해연도분('25회계연도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며, '24회계연도 분을 '25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2)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 그 자체에 대한 것임

주3)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것임

주4) "정부자금채"는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505 ('26. 5.20)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③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추가경정예산서

④ '25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 서울시의 지방채중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등기·등록(자동차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사안별로 일정 금액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 다른 지방채와는 달리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는 발행규모가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매출액이 세입예산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 3-23〉 도시철도공채 예산 편성현황 및 실제 매출현황(2021~2025)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예산 편성액	본예산	773,850	810,675	777,252	665,965	666,958
	최종예산 ㉓	773,850	810,675	716,252 <sup>주1)</sup>	665,965	666,958
실 제	매 출 액 ㉔	816,351	756,016	690,690	597,837	570,016
차	액 ㉔-㉓	42,501	△54,658	△25,561	△68,128	△96,942

주1) '23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23. 7 의결)을 통해 기정예산(7,772억 5,200만원)보다 △610억원 감액조정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0635 ('22. 4. 7)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④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⑤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⑥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를 재구성

-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 중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재원으로서 본예산에 기 편성한 규모보다 초과매출이 발생될 경우,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하지 않는다면 초과매출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회계연도 중에는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만일 본예산에 기 편성한 규모보다 부족매출이 발생될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 도시철도공채 세입예산액을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매출공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배분받아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자원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는 '21회계연도부터 '25회계연도까지 5개 회계연도 중 '23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 매출공채 편성규모를 증·감조정 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실제로 '2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도시철도공채 세입 예산현액은 6,669억 5,800만원이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5,700억 1,600만원으로 △969억 4,200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바,
  - 연도말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도시철도공채 세입예산을 일정부분 감액 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손(△45억 8,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세출예산은 실제 수납된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해당 회계는 결산상 잉여재원이 음수(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으로써, 이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로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5회계연도의 경우, 모든 지방채를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①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지방채를 '25회계연도 중 발행하거나, ② '2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5회계연도중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들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것이나,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회계연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30억원 이상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세부사업이 3개 사업으로 검토됨
  - 해당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이전에 지방채를 당초 편성된 규

모대로 발행하여 발행액(원금)과 그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발생시키며 재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시비와 지방채를 포함한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검토됨

〈표 3-24〉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 중 당해연도 예산이 30억원 이상 미집행(이월·불용)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지방채 차입선과 발행액 / 발행일)	재 원 구 분	최종예산 <sup>주1)</sup>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최종예산 중 미집행액		
						합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 (모집공채 895억원 / '25.12.12)	계	153,564	149,813	147,797	20,350	5,931	14,419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107,864	115,313	113,297	6,050	5,931	119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45,700	34,500	34,500	14,300	-	14,3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집공채 200억원 / '25.12.12)	계	71,951	76,166	72,397	3,796	3,768	28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45,251	49,466	45,697	3,796	3,768	28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26,700	26,700	26,700	-	-	-
재난안전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 (모집공채 300억원 / '25. 3.27)	계	35,048	38,742	26,199	12,543	12,543	-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35,048	38,742	26,199	12,543	12,543	-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	-	-	-	-	-

주1)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월예산은 미포함된 것임(의회의결 또는 간주처리를 거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의미하는 것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등)  
 ② '25년도 예산서 및 '25년도 추가경정예산서 ③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6744 ('26. 4. 8)  
 ④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6182 ('26. 4. 6) 등을 재구성

- 따라서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된 대로 전액 발행하기보다는 서울시 부담재원 중 기 확보된 시비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한 후 지방채는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될 규모에 한정하여 발행할 필요가 있고,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된다면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다음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이월발행 하는 등 지방채 발행규모와 시기를 실 집행과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세출예산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나, '24년 6월

행정안전부의 훈령을 개정·시행하여 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수입이 미확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추가로 집행하게 될 서울시 부담재원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先) 집행한 후 집행결과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지방채 소멸

- '25회계연도의 지방채 **소멸액**은 직전회계연도(1조 7,275억 9,400만원)보다 12.4%, 2,144억 9,100만원 증가된 1조 9,420억 8,500만원임
- 회계별·기금별로 세부 소멸내역을 검토하면, 특별회계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8,313억 1,400만원)보다 △569억 7,500만원 감소된 7,743억 3,900만원이 소멸된 것인 바, ① '18회계연도에 발행된 매출공채인 도시철도공채 7,743억 3,900만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4,173억 500만원)보다 722억 6,500만원 증가된 4,895억 7,0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 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95년부터 '01년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정부자금채(6,852억 2,700만원) 중 565억원과 '20년 11월 발행한 모집공채 1,08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총 1,646억원을 상환하고,
    - ②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2,650억원('20년 11월 발행 850억원과 '23년 11월 발행 1,800억원), ③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6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069억 7,500만원)보다 1,212억 증가된 3,281억 7,5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 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해 '24년 9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60억원)와 ② **양재대로 구조개선**을 위해 '24년 9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

자금채(240억원) 전액을 상환한 것임

- ③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을 위해 '20년 7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412억원)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51억 5,000만원을 상환하고,
  - ④ **신림~봉천터널 건설**을 위해 '19년 12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242억원) 중 상환시기가 도래한 30억 2,500만원과 '24년 9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100억원) 전액을 상환한 것이며
  - 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20년 5월 발행한 모집공채 2,8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자원 조성**을 위해 '20년 7월(1,500억원)과 '22년 2월(2,000억원)에 발행한 모집공채 총 3,5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으로서,
- '20년 7월에 차입한 1,500억원의 경우에는 '25년 7월에 모집공채를 발행하여 차환하였으나, '22년 2월에 차입한 2,000억원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원금 2,000억원과 이자 25억 8,500만원을 상환한 것인 바,
  - 다른 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회계나 기금에서 직접 상환하거나,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대신 상환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도 조례를 근거로 다른 회계나 기금의 사례를 적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직접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나,

- 조례는 해당 기금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지급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시 조례에 사실상의 특례규정을 두고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받아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조례를 근거로 다른 회계나 기금과 동일하게 운용하는 것은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일 수 있어 조례를 정비하거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상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이미 지난 '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동일한 사안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25회계연도에도 반복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방채 현재액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의 채무 현재액(11조 5,694억 7,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말(11조 3,375억 3,900만원)보다 2.0%, 2,319억 3,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계획에 따라 채무총액을 관리하고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여 채무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재정지표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직전회계연도(21.5%)보다 1.4%p 감소된 20.1%로 확인됨에도 이는 채무 규모가 감소한 것이 아닌 직전회계연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하여 채무비율이 낮아진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채무 현재액이 증가하여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한다면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방채 발행 규모와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5〉 직전회계연도 대비 예산대비 채무비율 변동현황(결산시점 기준)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채무 현재액 (채무잔액)	최 종 예 산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 산	기 금		
	㉑	㉒			㉑/㉒
2024회계연도 ㉓	11,337,539	52,668,999	47,414,393	5,254,606	21.5
2025회계연도 ㉔	11,569,471	57,691,472	52,142,651	5,548,821	20.1
증 감 ㉔-㉓	231,932	5,022,473	4,728,258	294,215	△1.4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등을 재구성

- 아울러 서울시의 전체 채무(11조 5,694억 7,100만원) 중 '26회계연도부터 '30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약 7조 9,259

억원(전체 채무의 68.5%)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채무 규모가 직전회계연도말(약 8조 2,135억원, 전체 채무의 72.4%)보다 소폭 감소된 결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채무 발생을 최소화시킬 시점으로 판단됨

〈표 3-26〉 연도별 채무 만기도래액 현황('25.12.31 기준)

(단위 : 억원, %)

전체 채무규모	5년간 만기도래 채무						2031 이후 만기도래 채무
	소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115,695 (100.0)	79,259 (68.5)	18,354 (15.8)	15,673 (13.5)	15,160 (13.1)	15,148 (13)	14,924 (12.8)	36,435 (31.4)

※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채무규모(11조 5,695억원) 중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3473 ('26. 3.13) “2026년 지방채 발행 및 관리 계획”의 내용을 재구성

〈표 3-27A〉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년 <sup>주1)</sup>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5년도말 현재액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6년도말 현재액 (잔액)
				발행 금리 <sup>주2)</sup>	거치·상환 기간		발생액 <sup>주3)</sup>	소멸액 <sup>주4)</sup>	이자 지급액	
<b>채 무 총 계</b> (가)+(나)+(다)			12,045,050			11,569,471	1,841,709	1,841,709	237,116	11,569,471
<b>지 방 채</b> (가)=①+②+③			12,045,050			11,569,471	1,841,709	1,841,709	237,116	11,569,471
<b>일 반 회 계</b> ①			184,200			184,200	184,200	34,200	8,073	334,200
마곡산업단지 공공자원센터(M+센터) 건립	공공모집공채	'21.12.7	24,000	2,29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24,000	24,000	24,000	549	24,000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공공모집공채	'21.12.7	8,200	2,29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8,200	8,200	8,200	187	8,200
단절된 녹지축 연결	공공모집공채	'21.12.7	2,000	2,29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2,000	2,000	2,000	45	2,000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공공모집공채	'25.7.16	150,000	2,95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150,000	150,000	-	7,289	300,000
<b>특 별 회 계</b> ②=①+②			11,371,350			10,895,771	1,657,509	1,657,509	215,951	10,895,771
<b>기 타 특 별 회 계</b> ③			11,229,068			10,895,771	1,657,509	1,657,509	215,951	10,895,771
<b>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b>										
도시철도공채 상환(일리금 상환)	도시철도공채	'19~'25	5,070,871	1,000~2,50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5,070,871	594,687	767,217	64,909	4,898,341
		'26.1~'12	-	2,00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상환(일리금 상환)	도시철도공채	'21.11.19	190,000	2,367(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3.11.13	253,000	4,263(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750,000	615,529	443,000	24,715	922,529
	공자기금	'24.10.31	220,000	3,123(고정)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도시철도공채	'25.3.27	87,000	2,945(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도시철도공채	'20.11.5	38,600	1,695(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1.12.7	23,100	2,424(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213,600	81,900	81,900	6,732	213,600
	도시철도공채	'23.11.13	81,900	4,263(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4.12.5	70,000	2,895(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공채	'20.11.5	4,200	1,695(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1.12.7	45,000	2,424(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3.11.13	47,000	4,263(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299,700	-	47,000	9,494	252,700
	도시철도공채	'24.9.27	114,000	3,110(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5.12.12	89,500	3,110(고정)	2년거치, 알시상환					
산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공채	'20.11.5	92,200	1,695(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52,200	-	-	3,017	152,200
	도시철도공채	'21.12.7	60,000	2,424(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도시철도공채	'23.11.13	28,000	4,263(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83,000	-	28,000	2,886	55,000
	도시철도공채	'24.12.13	35,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도시철도공채	'25.12.12	20,000	2,950(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6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5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6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차입한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62억 8,000만원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주5)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 그 자체에 대한 것임

주6)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모집공채, 정부자금채 등)에 대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7B〉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sup>주1)</sup>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5년도말 현재액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6년도말 현재액 (잔액)
				발행 금리 <sup>주2)</sup>	거치·상환 기간		발생액 <sup>주3)</sup>	소멸액 <sup>주4)</sup>	이자 지급액	
<b>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b>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 (국비)	모집공채	'23.11.13	51,000	4.263(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51,000	51,000	51,000	5,320	151,000
	모집공채	'24.12.13	25,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12.9	75,000	3.212(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지하철 4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시비)	모집공채	'24.12.13	50,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50,000	-	-	1,475	50,000
<b>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b>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모집공채	'19.11.22	42,000	1.790(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213,000	81,000	81,000	5,261	213,000
	모집공채	'21.12.7	81,000	2.29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4.12.13	90,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공자기금	'20.10.30	83,400	1.365(고정)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83,400	-	83,400	1,314	-
	모집공채	'26.3.23	83,400	3.682(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	83,400	-	153	83,400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21.12.7	30,000	2.424(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30,000	-	-	727	30,000
<b>주택사업특별회계</b>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기금	'96~'01	670,332	3.000(고정)	10년거치 20년분할상환	666,981	58,957	58,957	16,330	666,981
	주택기금	'15~'17	333,347	1.800(변동)	30년거치 15년분할상환					
	모집공채	'25.10.29	108,000	3.11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21.6.11	120,000	2.03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602,000	37,000	37,000	18,051	602,000
	모집공채	'21.12.1	37,000	2.23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공자기금	'24.10.31	180,000	3.123(고정)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모집공채	'25.10.29	85,000	3.11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11.20	180,000	3.622(고정)	15년거치 알시상환					
일반(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	모집공채	'24.9.27	12,000	3.110(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2,000	-	-	373	12,000
청년 매입임대 사업	모집공채	'19.11.14	180,000	1.885(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80,000	-	-	3,393	180,000
	모집공채	'24.9.27	12,000	3.110(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2,000	-	-	373	12,000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모집공채	'25.11.20	60,000	3.622(고정)	15년거치 알시상환	60,000	-	-	2,173	60,000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24.12.5	120,000	2.895(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20,000	-	-	3,474	120,000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6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5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6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차입한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62억 8,000만원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7C〉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sup>주1)</sup>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5년도말 현재액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6년도말 현재액 (잔액)
				발행 금리 <sup>주2)</sup>	거치·상환 기간		발생액 <sup>주3)</sup>	소멸액 <sup>주4)</sup>	이자 지급액	
<b>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b>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시공원)	모집공채	'19.10.30	210,000	1,847(고정)	30년거치 알시상환	1,280,000	-	-	26,415	1,280,000
	모집공채	'19.11.22	190,000	1,685(고정)	3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19.12.24	180,000	1,742(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0. 7.23	150,000	1,359(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1. 5.14	150,000	2,245(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1.12. 1	120,000	2,454(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 4.17	280,000	2,803(고정)	7.5년거치 알시상환					
풍납토성 복원	모집공채	'19.11.22	48,000	1,790(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48,000	-	-	859	48,000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모집공채	'19.11.22	15,000	1,790(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5,000	-	-	268	15,00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모집공채	'19.11.22	12,000	1,790(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2,000	-	-	214	12,000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모집공채	'19.11.22	10,000	1,790(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0,000	-	-	179	10,000
신림~봉천터널 건설	상생기금	'19.12.20	24,200	1,500(고정)	2년거치 8년 분할상환	56,343	3,025	3,025	1,194	56,343
	모집공채	'20.11.20	23,000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1.11.24	22,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6. 3.23	-	3,682(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상생기금	'20. 7.24	41,200	0,750(고정)	2년거치 8년 분할상환	82,175	5,150	5,150	1,806	82,175
	모집공채	'21.11.24	59,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6. 3.23	-	3,682(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안양교 확장	공자기금	'20.10.30	14,500	1,365(고정)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1,500	14,500	14,500	572	31,500
	모집공채	'21.11.24	17,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6. 3.23	-	3,682(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공자기금	'20.10.30	16,900	1,365(고정)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16,900	1,690	1,690	145	16,900
	모집공채	'26. 3.23	-	3,682(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	-	-	-	-
월드컵 대교 건설	모집공채	'20.11.20	66,000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24,500	-	-	2,560	124,500
	모집공채	'21.12. 1	58,500	2,383(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모집공채	'20.11.20	44,996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99,996	-	-	2,242	99,996
	모집공채	'21.11.24	55,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강남순환도로 고속도로 건설	모집공채	'20.11.20	57,611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65,611	-	-	1,228	65,611
	모집공채	'21.11.24	8,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양재대로 구조개선	모집공채	'20.11.20	16,000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49,000	-	-	1,229	49,000
	모집공채	'21.11.24	8,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 3.27	25,000	2,945(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서울예술포터널 건설	모집공채	'20.11.20	4,393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32,393	-	-	814	32,393
	모집공채	'21.11.24	28,000	2,632(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한강상교량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모집공채	'20.11.20	11,000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11,000	-	-	194	11,000
율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모집공채	'20.11.20	2,000	1,767(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2,000	-	-	35	2,000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6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5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6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차입한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62억 8,000만원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7D〉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sup>주1)</sup>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5년도말	2026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6년도말	
				발행 금리 <sup>주2)</sup>	거치·상환 기간	현재액	발생액 <sup>주3)</sup>	소멸액 <sup>주4)</sup>	이자 지급액	현재액 (잔액)	
<b>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b>											
	사당로 (구) 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모집공채	'20.11.20	4,000	1.767(고정)	10년거치, 일시상환	4,000	-	-	70	4,000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모집공채	'21.11.19	5,000	2.367(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5,000	5,000	5,000	118	5,000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모집공채	'21.11.19	3,000	2.367(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3,000	3,000	3,000	71	3,000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모집공채	'21.11.19	2,000	2.367(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2,000	2,000	2,000	47	2,000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모집공채	'21.12.7	1,100	2.424(고정)	7년거치, 일시상환	21,100	-	-	648	21,100
		모집공채	'24.9.27	20,000	3.110(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집공채	'24.9.27	30,000	3.110(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70,000	-	-	2,111	70,000
		모집공채	'25.3.27	40,000	2.945(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모집공채	'25.3.27	30,000	2.945(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30,000	29,000 (미정)	-	883	59,000 (미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재)	모집공채	'25.3.27	25,000	2.945(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25,000	46,000 (미정)	-	736	71,000 (미정)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모집공채	'25.3.27	10,000	2.945(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10,000	-	-	294	10,000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안기금	'26.5.26.11	-	3,000(고정)	7년거치, 13년분할상환	-	6,280	6,280	-	-
<b>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b>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모집공채	'19.11.22	11,000	1.790(고정)	10년거치, 일시상환	11,000	-	-	196	11,000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모집공채	'19.11.22	2,000	1.790(고정)	10년거치, 일시상환	5,000	3,000	3,000	102	5,000
		모집공채	'21.12.1	3,000	2.23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모집공채	'21.12.1	7,000	2.23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7,000	7,000	7,000	156	7,000
	서림신원음향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조환사업))	모집공채	'21.12.1	2,500	2.23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2,500	2,500	2,500	55	2,500
	평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모집공채	'21.12.7	14,000	2.29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14,000	14,000	14,000	320	14,000
<b>공 기 업 특 별 회 계</b>			②	-	-	-	-	-	-	-	-
<b>기 금</b>			◎	489,500	-	-	489,500	-	150,000	13,092	150,000
<b>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b>				489,500	-	-	489,500	-	150,000	13,092	150,000
	재 난 관 리 기 금	모집공채	'21.3.26	150,000	1.71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489,500	-	150,000	13,092	150,000
	재 원 조	모집공채	'25.12.19	339,500	3.460(고정)	5.5년거치, 일시상환					
	성	모집공채	'25.12.23		3.497(고정)						
<b>채 무 부 담 행 위</b>			(나)	-	-	-	-	-	-	-	-
<b>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b>			(다)	-	-	-	-	-	-	-	-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6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5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6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차입한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62억 8,000만원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8〉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기관의 부채·채무 현황 (2025~202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4	2023
서울시 및 투자기관 총계	부 채	51,100,212	46,867,114	43,429,021
	채 무	25,338,007	22,786,765	21,714,185
서울시	부 채	20,913,712	18,633,017	18,089,181
	채 무	11,569,471	11,337,539	11,442,497
서울시투자기관	부 채	30,186,500	28,234,097	25,339,839
	채 무	13,768,536	11,449,225	10,271,687
서울교통공사	부 채	7,756,397	7,347,323	6,832,164
	채 무	4,535,000	4,188,000	3,958,000
서울시설공단	부 채	251,909	252,659	245,661
	채 무	-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 채	213,496	213,125	197,104
	채 무	91,444	98,218	94,1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up>주1)</sup>	부 채	21,582,963	20,023,630	17,706,889
	채 무	8,867,835	6,892,888	5,960,188
서울에너지공사	부 채	374,969	380,955	349,126
	채 무	274,255	270,118	259,37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 채	6,763	16,403	8,893
	채 무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257 ('26. 4.22)

## 4. 세출결산

### (1) 세출결산 총괄

- '25회계연도 최종예산 규모는 52조 1,426억 5,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202억 9,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3조 629억 4,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9조 1,049억 5,000만원) 보다 예산현액 규모가 8.1%, 3조 9,579억 9,100만원 증가함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51조 2,074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직전회계연도(95.3%) 보다 1.2%p 증가하였음
- '25회계연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 9,403억 5,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9,202억 9,000만원) 보다 200억 6,7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0.1%, 599억 2,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79억 200만원) 보다 △179억 7,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 8,552억 4,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3,252억 8,000만원)보다 △4,700억 3,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29〉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계	52,142,651	920,290	53,062,941	51,813,972	51,207,414	940,357	59,925	855,243
예산현액 대비	-	-	100.0	97.6	96.5	1.8	0.1	1.6
일반회계	37,775,648	189,535	37,965,184	37,538,669	37,372,151	237,467	23,931	331,633
예산현액 대비	-	-	100.0	98.9	98.4	0.6	0.1	0.9
특별회계	14,367,001	730,753	15,097,756	14,275,302	13,835,261	702,889	35,994	523,608
예산현액 대비	-	-	100.0	94.6	91.6	4.7	0.2	3.5

- 아울러 2024회계연도에 이어 2025회계연도에도 실·본부·국간 또는 부서 간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29건, 253억 1,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8건, 153억 3,700만원) 보다 △19건, △99억 7,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30〉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합계	25,315	15,337	24,036
(건수)	(129)	(148)	(165)
일반회계	20,050	10,794	12,067
(건수)	(103)	(129)	(138)
특별회계	5,265	4,542	11,970
(건수)	(26)	(19)	(27)
기타특별회계	4,550	3,685	3,531
(건수)	(20)	(17)	(18)
공기업특별회계	714	857	8,439
(건수)	(6)	(2)	(9)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건수임

## (2) 불용액 관련

### 1) 불용액(집행잔액) 발생 현황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 4,1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8,552억 4,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3,252억 8,000만원)보다 △35.5%, △4,700억 3,7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31〉 서울시 세출결산 현황('25회계연도~'24회계연도)<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2025 회계연도 ㉑	2024 회계연도 ㉒	증 감 액 ㉓=㉑-㉒	증 감 륜 ㉓/㉒
예 산 현 액	①	53,062,941	49,104,950	3,957,991	8.1
지 출 액	②	51,207,414	46,781,476	4,245,938	9.1
( 집행 륜 )	②/①	(96.5)	(95.2)	(1.3)	
다음연도 이월액	③	940,357	920,290	20,067	2.2
( 이 월 륜 )	③/①	(1.8)	(1.8)	(0.0)	
보조금 반납금	④	59,925	77,902	△17,977	△23.1
(보조금반납금 비율)	④/①	(0.1)	(0.1)	(0.0)	
<b>불 용 액</b>	<b>⑤=①-②-③-④</b>	<b>855,243</b>	<b>1,325,280</b>	<b>△470,037</b>	<b>△35.5</b>
( 불 용 륜 )	⑤/①	(1.6)	(2.6)	(△1.0)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표 3-32〉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2 0 2 5	53,062,941	855,243	1.6
2 0 2 4	49,104,950	1,325,280	2.6
2 0 2 3	51,490,048	2,238,850	4.3
2 0 2 2	53,468,799	1,995,105	3.7
2 0 2 1	47,759,128	1,180,681	2.4
2 0 2 0	46,798,514	1,223,944	2.6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불용액 발생 현황을 회계별로 검토하면 일반회계는 직전회계연도(6,786억 7,300만원)보다 △51.1%, △3,470억 4,000만원 감소된 3,316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고,
-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6,466억 600만원)보다 △19.0%, △1,229억 9,700만원 감소된 5,236억 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기타특별회계중 ①교통사업특별회계(△74.4%, △568억 400만원 감소),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89.9%, △52억 5,200만원 감소), ③주택사업특별회계(△18.3%, △340억 1,200만원 감소), ④도시개발특별회계(△29.6%, △244억 6,200만원 감소), ⑤균형발전특별회계(△69.8%, △70억 4,400만원 감소), ⑥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6.1%, △6,200만원 감소), ⑦소방특별회계(△61.2%, △214억 9,200만원 감소)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 ⑧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53.4%, 245억 1,100만원 증가), ⑨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5,058.1%, 37억 4,300만원 증가), ⑩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09.8%, 233억 5,800만원 증가)를 포함한 3개 특별회

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증가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61억 8,000만원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978억 7,900만원)보다 불용액이  $\Delta 11.9\%$ ,  $\Delta 116$ 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7억 200만원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844억 8,500만원)보다 불용액이  $\Delta 16.3\%$ ,  $\Delta 137$ 억 8,3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33〉 회계별 불용액 발생현황('25회계연도~'24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p)

회 계 명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합 계	53,062,941	855,243 (1.6)	49,104,950	1,325,280 (2.6)	3,957,991	△470,037 (△1.0)
일 반 회 계	37,965,184	331,633 (0.9)	34,502,585	678,673 (1.9)	3,462,599	△347,040 (△1.0)
특 별 회 계	15,097,756	523,609 (3.5)	14,602,365	646,606 (4.4)	495,391	△122,997 (△0.9)
기타특별회계	12,710,716	366,726 (2.9)	12,505,405	464,241 (3.7)	205,311	△97,515 (△0.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73,809	70,446 (3.8)	2,192,501	45,935 (2.0)	△318,692	24,511 (1.8)
교통사업 특별회계	1,981,800	19,595 (1.0)	1,818,772	76,399 (4.2)	163,028	△56,804 (△3.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7,123	591 (0.7)	286,302	5,843 (2.0)	△199,179	△5,252 (△1.3)
주택사업 특별회계	3,107,128	151,837 (4.9)	3,035,935	185,849 (6.1)	71,193	△34,012 (△1.2)
도시개발 특별회계	2,384,274	58,182 (2.5)	2,085,456	82,644 (3.9)	298,818	△24,462 (△1.4)
균형발전 특별회계	208,251	3,046 (1.5)	227,487	10,090 (4.4)	△19,236	△7,044 (△2.9)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274	3,817 (17.9)	9,594	74 (0.7)	11,680	3,743 (17.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2,159	44,625 (2.2)	1,790,363	21,267 (1.1)	211,796	23,358 (1.1)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9,452	959 (3.3)	32,258	1,021 (3.2)	△2,806	△62 (0.1)
소 특별 방 특별회계	1,015,441	13,623 (1.3)	1,026,732	35,115 (3.4)	△11,291	△21,492 (△2.1)
공기업특별회계	2,387,040	156,882 (6.6)	2,096,959	182,365 (8.6)	290,081	△25,483 (△2.0)
수도사업 특별회계	1,144,918	86,180 (7.5)	1,020,431	97,879 (9.5)	124,487	△11,699 (△2.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42,122	70,702 (5.7)	1,076,527	84,485 (7.8)	165,595	△13,783 (△2.1)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①보조금정산잔액, ②예산절감액,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낙찰차액, ⑤지출잔액, ⑥예비비를 포함한 6가지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표 3-34〉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사유 비교<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발	생	사	유 <sup>주2)</sup>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5 회계연도	불용액	855,243	69,708	7,213	317,545	90,743	337,069	32,962
	구성비	100.0	8.1	0.8	37.1	10.6	39.4	3.9
2024 회계연도	불용액	1,325,280	164,460	4,609	301,570	68,533	686,273	99,833
	구성비	100.0	12.4	0.3	22.8	5.2	51.8	7.5
2023 회계연도	불용액	2,238,850	382,014	6,144	547,759	81,831	1,131,386	89,713
	구성비	100.0	17.1	0.3	24.5	3.7	50.5	4.0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른 각 사유(원인)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1. 보조금정산잔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액 : ①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②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지출잔액**의 경우, 서울시 전체 불용액(8,552억 4,300만원) 중 39.4%에 해당하는 3,370억 6,9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서 ①불용액의 규모는 직전회계연도(1조 3,252억 8,000만원)보다 △35.5%, △4,700억 3,700만원 감소되었고, ②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39.4%)도 직전회계연도(51.8%)보다 △12.4%p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8,552억 4,300만원) 중 37.1%에 해당하는 3,175억 4,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서 ①불용액의 규모가 직전회계연도(3,015억 7,000만원)보다 5.3%, 159억 7,500만원 증가되었고, ②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차지하는 비중(37.1%)도 직전회계연도(22.8%)보다 14.3%p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불용액 중 **보조금정산잔액**은 직전회계연도(1,644억 6,000만원)보다 △58.1%, △967억 5,200만원 감소된 697억 800만원이 발생한 것이며, 예비비 편성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예비비**는 직전회계연도(998억 3,300만원)보다 △67.0%, △668억 7,100만원 감소된 329억 6,200만원이 발생한 것임
- 아울러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직전회계연도(685억 3,300만원)보다 32.4%, 222억 1,000만원 증가된 907억 4,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직전회계연도(46억 900만원)보다 56.4%, 26억 400만원 증가된 72억 1,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의 실·본부·국 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주택실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불용액의 19.3%, 1,653억 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지출잔액**(131억 6,300만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1,415억 8,400만원) 등이 발생사유로 확인됨
- 복지실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13.4%, 1,147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716억 7,900만원)과 **지출잔액**으로 인한 불용액(264억 8,600만원) 등으로 확인되며
- 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11.7%, 998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324억 200만원)과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331억 2,600만원) 등으로 확인됨

〈표 3-35〉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 (계)	구성비 <sup>주2)</sup>	발생사유별 불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약변경 등 집행유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855,243	100.0	69,708	7,213	317,545	90,743	337,069	32,962
주 택 실	165,309	19.3	7,174	13	141,584	705	13,163	2,667
복 지 실	114,736	13.4	16,365	0.97	71,679	204	26,486	-
물 순 환 안 전 국	99,853	11.7	406	54	32,402	33,126	32,948	915
서 울 아 리 수 본 부	86,180	10.1	192	1,244	4,322	19,079	51,879	9,461
여 성 가 족 실	57,064	6.7	10,698	88	8,120	614	37,543	-
교 통 실	52,128	6.1	17,026	245	5,614	5,702	22,473	1,065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39,284	4.6	-	87	1,210	273	37,714	-
기 후 환 경 본 부	32,281	3.8	4,405	1,179	9,729	445	16,520	-
평 생 교 육 국	26,970	3.2	59	13	13,641	179	13,077	-
재 난 안 전 실	22,473	2.6	142	79	2,025	13,470	6,897	-
기 획 조 정 실	20,777	2.4	-	-	65	287	3,227	17,196
행 정 국	18,826	2.2	10,507	28	802	112	7,376	-
경 제 실	16,831	2.0	29	2,634	1,531	541	12,093	-
정 원 도 시 국	14,419	1.7	339	124	1,526	3,276	9,153	-
소 방 재 난 본 부	13,623	1.6	610	-	696	1,039	10,212	1,065
시 민 건 강 국	10,122	1.2	918	100	1,798	877	6,427	-
재 무 국	10,017	1.2	0.14	-	8,718	153	1,145	-
민 생 노 동 국	7,997	0.9	51	25	6,390	155	1,373	-
문 화 본 부	6,786	0.8	190	164	478	1,883	4,069	-
관 광 체 육 국	6,704	0.8	429	324	1,960	179	3,810	-
미 래 한 강 본 부	6,366	0.7	-	-	338	2,304	3,724	-
균 형 발 전 본 부	5,324	0.6	23	-	1,522	115	3,074	589
디 지 털 도 시 국	3,535	0.4	7	497	13	1,547	1,469	-
의 회 사 무 처	3,416	0.4	-	25	86	295	3,009	-
도 시 공 간 본 부	2,302	0.3	-	-	602	1,137	562	-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671	0.2	11	-	-	230	1,428	-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467	0.2	94	150	43	135	1,044	-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257	0.1	-	-	328	296	632	-
인 재 개 발 원	1,226	0.1	-	-	-	114	1,111	-
디 자 인 정 책 관	1,210	0.1	4	-	95	686	423	-
홍 보 기 획 관	1,133	0.1	-	32	100	472	527	-
시 립 미 술 관	953	0.1	-	34	29	428	460	-
글로벌도시정책관	945	0.1	8	63	44	128	700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564	0.1	-	-	23	133	407	-
건 설 기 술 정 책 관	521	0.1	152	-	3	104	260	-
비 상 기 획 관	373	0.0	0.034	-	-	270	102	-
감 사 위 원 회	235	0.0	-	-	-	-	235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8	0.0	-	-	-	-	208	-
민 생 사 법 경 찰 국	88	0.0	-	-	15	-	73	-
대 변 인	47	-	-	-	-	29	17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5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 20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36〉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물순환안전국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90	6,290
민생노동국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도시개발특별회계)	6,000	6,000
평생교육국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778	3,778
기후환경본부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	2,000	2,000
균형발전본부	국가상징 가로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1,262	1,262
재난안전실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	915	915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1	861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5	745
정원도시국	서울수유 정원마을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620	620
도시공간본부	(구)공항고 부지 회계간재산이관 추진(도시개발특별회계)	600	600
물순환안전국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0	460
물순환안전국	유출 지하수 배수 설비 시범 사업	332	332
문화본부	천도교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305	305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00	300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200	200
문화본부	상암동 문화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60	60
주택실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30	30
교통실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교통사업특별회계)	3	3
의회사무처	의회의 정책 기능 지원	2	2
교통실	화물 위법행위 관련 포상금(교통사업특별회계)	1	1

주1)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그리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제외한 것임

주2) 세부사업은 불용액 규모 순으로 정렬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민생노동국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0%, 60억원이 불용된 바,

〈표 3-3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내역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6,000	6,000 (100.0)	-	-	6,000 (100.0)	-	-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내시를 근거로 '25년도 본예산에 국비(18억원)와 용자(24억원) 그리고 대응되는 시비(18억원)를 포함한 60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가내시('24. 9.13) 이후 '25년도중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 일정이 지연되어 실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60억원의 불용액중 ①18억원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②용자 24억원도 국비가 교부되지 않자 농안기금에서 차입하지 않은 것으로, 총 42억원은 장부상 허수인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하며 ③대응편성된 시비 18억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자체재원인 시비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불용액 발생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국비 교부규모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내시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 변경내시 등 국비가 감액된 경우라면,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재원없는 불용'에 적극 대응하고, 매칭시비의 불용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의 예산액과 실제 교부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은 예산현액 100.0%, 62억 9,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3-38〉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sup>주1)</sup>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6,290	6,290 (100.0)	-	-	6,290 (100.0)	-	-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동 사업은 직전회계연도로부터 32억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대치역사거리 일대의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빗물펌프장과 유입·방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예산 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및 사업 장기화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사업방향 전환 여부를 재검토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경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은 '25회계연도 본예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기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100.0%, 20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표 3-39〉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내역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sup>주1)</sup>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00	2,000 (100.0)	-	-	-	-	2,000 (100.0)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5861 ('26. 4. 7)

- 동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 내 비주거 신축 민간 건물중 재생열의 의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여 개소당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 상반기 운영 결과, 민간 수요가 저조하여 개소당 2억 5,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상향하고, 설비 규모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수요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불용 사례의 경우,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과 착공·준공 일정상 연내 집행 가능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사업계획을 변경('25. 7)하여 지원규모와 지원단가를 조정하였음에도, 8월 이후 당해연도 착공·준공이 가능한 물량에 대한 산정 없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결국 전액 불용처리한 바,
- 시범사업의 특성상 초기 수요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상반기

사업추진 결과를 통해 집행부진이 확인된 시점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만큼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불용액 20억원에 대하여 결산서에는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에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실제로 집행한 후 남은 잔액에 한하여 **지출잔액**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을 변경·취소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더욱이 동 사업은 상반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수요 부재로 전액 불용된 사례로서 결산서의 불용사유 분류조차 부적절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불용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천도교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는 예산 현액 3억 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24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24회계연도에 관련 종교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서가 3억 5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한 바, '25회계연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전액(3억 500만원)을 불용 처리 한 것임

〈표 3-40〉 천도교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sup>주1)</sup>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05	305 (100.0)	-	-	305 (100.0)	-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5589 ('26. 4. 7)

-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3억 500만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이월된 재원은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용이나 전용,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또한 불가능하여 불용 이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이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30개 세부사업으로서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4,439억 3,800만원)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8,552억 4,300만원) 중 51.9%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41A〉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주 택 실	재 개발 임대 주택 매 입	320,220	54,483	17.0	-
복 지 실	의 료 급 여 사 업 운 영	2,002,159	44,625	2.2	-
주 택 실	신 혼 부 부 매 입 임 대	179,329	26,107	14.6	-
주 택 실	공공주택 건설(통합공공임대주택)	47,226	22,724	48.1	-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156,231	22,596	14.5	340
복 지 실	기 초 연 금 지 급	3,448,413	21,840	0.6	-
복 지 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563,440	20,269	1.3	-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76,078	20,000	26.3	31,396
교 통 실	9 호 선 전 동 차 증 차 지 원	22,552	16,910	75.0	2,821
여 성 가 족 실	누 리 과 정 보 육 료 지 원	198,262	14,751	7.4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 북 선 경 전 철 건 설 ( 민 자 )	168,148	14,419	8.6	5,931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09,073	13,768	6.6	
주 택 실	일 반 ( 다 가 구 ) 매 입 임 대 주 택	142,299	12,977	9.1	6,740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63,506	12,063	19.0	6,483

주1)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그리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은 제외한 것임

주2) 세부사업은 불용액 규모 순으로 정렬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표 3-41B〉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주 택 실	주 거 급 여 수 급 자 지 원	838,072	11,888	1.4	-
교 통 실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42,658	11,200	26.3	-
행 정 국	민 생 회 복 소 비 쿠폰 지 원	2,048,890	10,507	0.5	-
기후환경본부	자 원 회 수 시 설 설 치	55,555	10,268	18.5	44,905
평 생 교 육 국	친 환 경 학 교 급 식 지 원	218,176	10,070	4.6	-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49,124	9,832	3.9	-
복 지 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88,220	9,276	10.5	-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38,153	8,538	22.4	1,916
경 제 실	서 울 매 력 일 자 리	71,129	7,608	10.7	-
여 성 가 족 실	아 이 돌 보 지 원 ( 보 조 )	65,491	6,208	9.5	-
주 택 실	청 년 안 심 주 택 매 입	85,661	6,014	7.0	-
주 택 실	신 혼 부 부 청 년 등 임 차 보 증 금 이 자 지 원	72,397	5,835	8.1	-
주 택 실	청 년 매 입 임 대	56,142	5,535	9.9	-
여 성 가 족 실	국 공 립 어 린 이 집 확 충	13,825	4,827	34.9	-
물순환안전국	중 량 물 재 생 센 터 운 영	68,502	4,567	6.7	-
여 성 가 족 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8,582	4,233	5.4	-

주1)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그리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은 제외한 것임

주2) 세부사업은 불용액 규모 순으로 정렬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표 3-42〉 불용률이 90% 이상 100% 미만인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균형발전본부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	261	251	96.3	-
균형발전본부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389	361	92.9	-
도시공간본부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51	46	90.0	-

주1) 불용률인 100%인 세부사업(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세부사업)은 제외한 것임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소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5:3:2로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수 통계를 바탕으로 편성한 급식 예산총액중 서울시가 재원분담 비율만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진출하는 바,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2,181억 7,600만원)의 4.6%, 100억 7,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4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발생현황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218,176	10,070 (4.6)	-	-	-	-	10,070 (4.6)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의 경우, '25회계연도에 100억 7,000만원이 불용되고, '24회계연도는 119억 8,400만원, '23회계연도 127억 100만원이 불용된 사업으로,

- 불용액 발생 원인이 서울시에 있지 않더라도 매년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서울시 재정의 한정성을 잠식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 정확한 재원 부담액을 산출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①교육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교부하면(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전입금), ②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전입되는 재원으로 소요재원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25회계연도 예산현액(1,982억 6,200만원)의 7.4%, 147억 5,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44〉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98,262	14,751 (7.4)	-	-	-	-	14,751 (7.4)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은 이전재원으로서 불용이 예측되어도 감액조정하거나 예산의 변경을 통해 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과도한 불용규모는 결국 서울시 재정운용 성과에 부적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예산이 교부되어 집행되도록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 매력일자리**는 예산현액(711억 2,900만원)의 10.7%, 76억 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45〉 서울 매력일자리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현황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1,129	7,608 (10.7)	-	-	-	-	7,608 (10.7)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사업부서는 불용사유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기관·사업 수 대비 승인 기관·사업의 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 사업부서는 '25년 3월부터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에는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승인 사업 수 및 집행 진행률 등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액과 불용액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다면 집행가능한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감액조정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사료됨
- 불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불용액 규모가 76억 8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야 불용처리 하기 보다는 '25년 도중 두 번의 추경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4) 이월예산이 불용된 사업

○ '25회계연도의 경우, '24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원(이월예산)을 집행한 결과 10억원 이상 불용된 세부사업은 11개 사업으로 확인됨

〈표 3-46〉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원(이월예산<sup>주1)</sup>)을 집행한 결과 10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중 이월예산		이월예산에 대한 불용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월예산에 대한 재이월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교 통 실	9호 선 전 동 차 증 차 지 원	22,552	11,269	16,910 (74.9)	11,269 (100.0)	2,821	-
물 안 순 전 환 국	신림 재 정비 축 진 지구내 저류조 설치	7,000	5,000	1,402 (20.0)	4,902 (98.0)	1,098	98 (8.9)
물 안 순 전 환 국	대치역사거리일대 빗물펌프장신증설 및 배수 개선	6,290	3,200	6,290 (100.0)	3,200 (100.0)	-	-
물 안 순 전 환 국	물재생센터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9,652	3,002	2,370 (24.6)	2,370 (78.9)	-	-
관 광 체 육 국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 준비	2,377	1,975	1,858 (78.2)	1,752 (88.7)	44	-
물 안 순 전 환 국	차집관로 성능 개선	12,923	3,567	1,356 (10.5)	1,282 (35.9)	3,856	-
균형발전본부	국가상징가로 조성	1,262	1,262 (100.0)	1,262 (100.0)	1,262 (100.0)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서부선 건설(민자)	1,421	1,421	1,204 (84.7)	1,204 (84.7)	-	-
정원도시국	도시자연공원구역 협 의 매 수	18,255	13,437	1,201 (6.6)	1,201 (8.9)	3,566	3,150 (88.3)
서 울 아 리 수 본	정 시 수 설 센 터 비	63,506	2,016	12,063 (19.0)	1,197 (59.4)	6,483	-
물 안 순 전 환 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38,153	2,135	8,538 (22.4)	1,095 (51.3)	1,916	-

주1) 이월예산은 ① 예산현액 중 일부로서 ② '24회계연도로부터 '25회계연도로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건설개량이월 포함)된 재원을 의미하며,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됨

주2) 세부사업은 불용액 규모 순으로 정렬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도시자연공원구역협의매수**는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134억 3,700만원중 67.6%, 9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23.4%, 31억 5,000만원은 재이월(사고이월)하고, 12억 100만원 (8.9%)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검토됨

〈표 3-47〉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협의매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2025년)	합계	18,255	13,468	73.8	3,566	0	1,201
	당해연도 예산	4,818	4,410	91.5	416	0	0
	이월예산	13,437	9,085	67.6	3,150	0	1,201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등 재구성

- 동 사업은 '25회계연도중 협의매수를 추진하던 대상 필지중 토지 소유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토지매수를 위해 확보하였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기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이나, 동 사업의 경우, '24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26회계연도로까지 이월됨으로써(31억 5,000만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으로 인하여 예산의 한정성을 저해한 사례로 사료됨
  - 이월된 재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여도 이용이나 전용,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결국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소관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준비**는 예산현액(23억 7,700만원)의 78.2%, 18억 5,800만원이 불용된 것인 바,

〈표 3-48〉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준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2036하계올림픽 유치준비 (2025년)	합계	2,377 <sup>주1)</sup>	473	19.9	44	-	1,858
	① 당해연도 예산	407	251	61.7	44	-	106
	② 이월예산	1,975	222	11.2	-	-	1,752

주1) △500만원 포함(전용)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과-4344 ('26. 4. 8) 등 재구성

- ①하계올림픽 유치가 불발되어 '24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19억 7,500만원중 17억 5,2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서 이월된 재원은 이용·전용·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불용 이외에는 처리방법이 없어 재원의 이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②아울러 '25년도에 편성한 4억 700만원의 경우, 예산액의 61.7%(2억 5,100만원)를 집행하고, 4,400만원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25년 7월, 수시학술용역심의회 심의에서 보완의견이 제시되고 '25년 9월, 재심의를 거쳐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5)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된 사업

-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소관 **도심항공교통(UAM)버티포트 구축**은 예산현액 25억원의 80.9%, 20억 2,100만원이 불용된 바,

〈표 3-49〉 도심항공교통(UAM)버티포트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500	241 (9.6)	237 (9.5)	-	237 (9.5)	-	2,021 (80.9)

주1)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주2)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원 포함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은 '25년 8월,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서울시의 S-UAM (서울시 도심항공 버티포트) 사업에서 여의도 공원이 실증 대상에서 제외 되어 예산의 불용이 확실시되었음에도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5. 9.12 의결)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287억 1,100만원)의 5.7%, 16억 4,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3-50〉 가정양육수당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내역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x15,473) 28,711	(x888) 1,647 (5.7)	(x-) 759 (2.6)	-	-	-	(x888) 888 (3.1)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결산자료"

- 동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237억 8,800만원 (국비: 128억 2,000만원, 시비: 10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중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7억 1,100만원(국비: 154억 7,300만원, 시비: 132억 3,8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음
-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2회 서울시 추경 의결('25. 9.12) 이후인 9월26일, 2차 변경내시를 통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감액한 바, 서울시는 추경 의결 이후 통보된 국비 감액내시에 대하여 대응하여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표 3-51〉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본예산	변경내시	
	1차 변경내시	2차 변경내시
x12,820	x15,473	x14,585

※ 자료근거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2609 ('24.12.17)

교육부, 영유아재정과-3909 ('25. 9.26)

- 결과적으로, 감액조정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8억 8,800만원은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고, 시비 7억 5,900만원은 **보조금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

처리된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중앙정부 등 행정주체의 계획변경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은 경비는 불용사유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하고,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되지 않은 자체재원(시비)는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25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되어야 할 재원없는 불용(국비)을 지출잔액으로 구분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분으로 판단됨

### (3)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2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 및 부서간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155건, 4,502억 9,3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제출됨

〈표 3-52〉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155	450,293	△450,293
일 반 회 계	132	374,391	△374,391
특 별 회 계 <sup>주1)</sup>	23	75,902	△75,902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체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이관하기 전까지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을 이관 받는 부서로서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직무권한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사업부서가 예산에 대한 이체를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예산부서가 심사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25년 7월, 서울시 규칙을 개정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음에도 디지털도시국의 이체 사례(5건)의 경우에는 제출된 결산서에 시행규칙이 아닌 국장전결 방침을 근거로 이체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바, 제출된 결산서대로라면 법령상 직무권한 변동이 발생하기 이전임에도 예산 이체가 요구된 사례일 수밖에 없고,
  - 이는 법령에서 정한 예산 이체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에는 결산서에 적정한 사유가 기재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3A〉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계	155	155	△450,293	450,293	
기 획 조 정 실	17	17	△32,276	32,276	<감액> ■ 기획조정실 내 조직변경 △32,276(17건) <증액> ■ 기획조정실 내 조직변경 32,276(17건)
경 제 실	2	2	△3,224	3,224	<감액> ■ 경제실 내 조직변경 △3,224(2건) <증액> ■ 경제실 내 조직변경 3,224(2건)
복 지 실	16	16	△229,667	229,667	<감액> ■ 복지실 내 조직변경 △229,667(16건) <증액> ■ 복지실 내 조직변경 229,667(16건)
기 후 환 경 본 부	12	12	△12,872	12,872	<감액> ■ 기후환경본부 내 조직변경 △12,872(12건) <증액> ■ 기후환경본부 내 조직변경 12,872(12건)
문 화 본 부	19	2	△16,632	1,300	<감액> ■ 문화본부→시립미술관 △15,332(17건) ■ 문화본부 내 조직변경 △1,300(2건) <증액> ■ 문화본부 내 조직변경 1,300(2건)
디 지 털 도 시 국	5	5	△277	277	■ 디지털도시국 내 조직변경(5건)

〈표 3-53B〉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미래공간기획관	0	9	0	8,339	<증액> ■ 주택실→미래공간기획관 8,339(9건)
디자인정책관	1	0	△214	0	<감액> ■ 디자인정책관→도시공간본부 △214(1건)
재난안전실	46	46	△132,590	132,590	■ 재난안전실 내 조직변경(46건)
주택실	9	0	△8,339	0	<감액> ■ 주택실→미래공간기획관 △8,339(9건)
도시공간본부	0	1	0	214	<증액> ■ 디자인정책관→도시공간본부 214(1건)
물순환안전국	15	15	△8,767	8,767	<감액> ■ 물순환안전국 내 조직변경 △8,767(15건) <증액> ■ 물순환안전국 내 조직변경 8,767(15건)
시립미술관	0	17	0	15,332	<증액> ■ 문화본부→시립미술관 15,332(17건)
자치경찰위원회	13	13	5,430	5,430	■ 자치경찰위원회 내 조직변경(13건)

#### (4)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법령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을 통해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5년도 서울시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회계연도 이후 '25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된 바 없음

## (5)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5회계연도의 경우, 129건을 전용한 것으로 예산현액 53조 629억 4,100만원중 0.04%, 253억 1,5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됨
  - 전용 건수는 지난 '24회계연도 보다 △19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99억 7,800만원 증가한 바, ①일반회계의 경우, 103건, 200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24회계연도보다 전용 건수는 △26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92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②기타특별회계는 20건, 45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 대비 3건, 8억 6,400만원 증가하였고, ③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6건, 7억 1,4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4건 증가, △1억 4,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3-5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5		2024		2023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29	25,315	148	15,337	165	24,036
일반회계	103	20,050	129	10,794	138	12,067
특별회계	26	5,265	19	4,542	27	11,970
기타특별회계	20	4,550	17	3,685	18	3,531
공기업특별회계 <sup>주1)</sup>	6	714	2	857	9	8,439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예산 전용 기준에 따라 분류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은 법령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표 3-55〉 예산의 전용 규정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 사용은 가능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160

- 다만, 지난 '25년 12월 2일, 관련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당초 전용이 제한되던 통계목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삭제되어 전용이 가능하게 된 바,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용한 사례는 총 2건으로 검토됨
    - 시설비를 전용한 2건의 전용 사례의 경우, 전용 승인일자가 '25년 12월 29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시행일('25.12. 2)이후 전용된 사례로 시행령 개정에 앞서 추진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관련 법령이 '25년 12월 2일 개정 및 시행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서울시의 기준에는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바,
    - 두 기준이 시기적으로 법률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수립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와 예산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의 관련 기준을 현행화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규정 개선이 건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직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9개 실·본부·국에서 129건을 전용한 것으로 복지실 26건(18억 1,700만원), 시민건강국 13건(82억 2,700만원), 교통실 9건(6억 500만원)을 전용한 바,
- **복지실**은 '24회계연도(33건, 17억 3,800만원)에 이어 전용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조직으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등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자 전용을 시행한 사례는 전용을 통해 소요예산 추계의 오류를 희석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점부터 소요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추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건강국**의 경우, 전용 건은 13건이나, 전용 규모는 82억 2,700만원으로 총 전용액(253억 1,500만원)중 가장 큰 비중(32.5%)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의 경우에는 자본형성적인 비용임에도 경상적인 성격의 예산과목으로 설정하여 64억원을 전용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권역 모자의료센터 및 중증 모자의료센터 설치**의 경우에는 경상적인 성격인 비용을 자본형성적의 통계목으로 전용한 바, 이는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상이한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부터 적정 통계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56〉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 <sup>주1)</sup>		전 용 건 수	전 용 액	전체 전용액 대비
계		129	25,315	100.0
시 민 건 강 국		13	8,227	32.5
재 무 국		1	5,986	23.6
소 방 재 난 본 부		4	2,988	11.8
복 지 실		26	1,817	7.2
미 래 공 간 기 획 관		5	751	3.0
물 순 환 안 전 국		7	716	2.8
교 통 실		9	605	2.4
민 생 노 동 국		5	578	2.3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500	2.0
관 광 체 육 국		5	435	1.7
균 형 발 전 본 부		2	400	1.6
기 후 환 경 본 부		3	390	1.5
주 택 실		4	335	1.3
문 화 본 부		7	316	1.3
여 성 가 족 실		6	315	1.2
정 원 도 시 국		6	176	0.7
의 회 사 무 처		2	149	0.6
행 정 국		3	115	0.5
홍 보 기 획 관		2	113	0.4
경 제 실		4	111	0.4
시 립 미 술 관		3	95	0.4
글 로 벌 도 시 정 책 관		4	91	0.4
재 난 안 전 실		1	34	0.1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	20	0.1
기 획 조 정 실		1	15	0.1
미 래 한 강 본 부		1	13	0.1
디 지 털 도 시 국		1	8	0.0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	3	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	0.0

주1) 전용액 규모순

1.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2. “구성비”는 전체 실·본부·국의 전용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여성가족실 소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보건복지부의 집행지침 변경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 시도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9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임

〈표 3-57〉 예산 전용 현황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보 호 출 산 신 생 아 긴 급 보 호 비 지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4	△139	-	'25. 3.27
"	사 무 관 리 비	-	-	139	

- 동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서대문구)에 교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서울시가 직접 지출하고자 '25년 3월, 편성된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25년 6월, 보건복지부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여 변경 내시함에 따라 서울 시도 지난 '25년 8월 제출된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을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추경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전용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전용 정정”이라는 방법으로 이른바 ‘치유’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 사례를 “전용 정정”이라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법령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운용 방식을 동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서,

- 전용한 통계목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전용”을 한 사례로 판단됨
- 관련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전용 취소’는 법령 및 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상의 기능일 것으로 판단되어 전용취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동 전용 사례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교통실 소관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은 버스정류소(홍대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2심 판결 및 민사종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기편성된 재원을 배상금등(3억 2,800만원)으로 전용한 것임

〈표 3-58〉 예산 전용 현황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승 인 일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시 설 비	1,520	△60	-	'25.12.29
	배 상 금 등	-		60	
"	공 공 운 영 비	398	△35		'25.12.29
	배 상 금 등	60		35	
온 열 의 자 설 치	공 공 운 영 비	133	△119		'25.12.29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배 상 금 등	95		119	
온 열 의 자 설 치	시 설 비	2,484	△40		'25.12.29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배 상 금 등	214		40	
저 상 버 스 도 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9,015	△74		'25.12.29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배 상 금 등	254	-	74	

- 당초 법령은 전용제한 항목으로 시설비 등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지난 '25년 12월 2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되어 시설비에 대한 전용제한이 삭제된 바,

- 서울시가 동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12월 29일에 시설비를 다른 예산 과목으로 전용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전용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3-59〉 지방재정법 시행령<sup>주1)</s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삭 제>
3. (생 략) ②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주1)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85호, 2025. 12. 2, 일부개정]

- 또한 동 전용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후, 소송 결과가 확정되고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회계연도중 예상치 못한 배상금이 발생된 사안으로 전용을 통해 배상금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요예산 7건에 대해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도 5건의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도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동 전용 사례와 같이 전용으로 소송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보다 전용을 우선시하여 재원을 확보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으로 재원의 일부를 전용한 **온열의자 설치**의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377만원만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된 바, 전용액(1억 1,900만원)과 변경액(1,400만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25년도 예산액(1억 4,700만원)중 97.5%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부서에 따르면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통해 온열의자에서 발생하는 동절기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정류소 유지관리업체와의 관리이관 협의가 완료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기설치('24년도 설치분 208개)된 온열의자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납부는 서울시가 아닌 유지보수관리 업체가 하게 되었고,
  - 일부 정류장은 온열의자 설치가 '25년 12월에 준공되어 운영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당초 편성된 예산액의 2.5%, 377만원만 지출한 것임

〈표 3-60〉 온열의자 설치 결산 결과 (공공운영비)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예 산 액	전 용	변 경	예 산 현 액	집 행 액	불 용 액
공 공 운 영 비	147	△119	△14	14	3	10

- 사업운영주체(민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은 유의미한 조치로 사료되나 예산액의 80.9%를 전용해주는 것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에 대해 집행잔액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 향후에는 회계 연도중 불용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조정하고, 연도말 대규모 전용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지역 상생관광 활성화**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안테나 숲의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 유입을 확대하고자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에 편성된 사무관리비중 3억원을 동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표 3-61〉 예산 전용 현황 (서울-지역 상생관광 활성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	사 무 관 리 비	535	△300	-	'25. 7.23
서울-지역 상생관광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78	-	300	

- 관련 법령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관광정책과가 예산을 전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을 검토하면 동 사업 명칭은 “상생관광 팝업행사”이고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해당되어 법령에 따라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난 '25년도에 총 8회의 서울시 투자심사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일 수밖에 없어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시민건강국 소관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액 전액인 64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전용한 것임

〈표 3-62〉 예산 전용 현황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	△6,400	-	'25. 9.30
"	민간자본사업보조 ( 이 전 재 원 )	-	-	6,400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에 대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본 형성적인 성격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는 당초 경상비로 편성요청함에 따라, 투자심사를 회피할 의도로 사료되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하고
  - 이전재원이 포함된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가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한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되, 소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한 경우도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 가내시된 국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이 40억원 이상 사업인 동 사업(64억원)의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법정 절차인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여야 함에도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경상비인 것처럼 포장하여 우회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사례로 사료됨

- 사업부서(공공의료과)는 지난 '25년 5월에서야 방침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5년 7월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았으며 '25년 9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액 전액(64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법정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이행한 후에 '25년도에 있었던 두 번의 추경 예산안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통계목으로 설정하면서까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부서(공공의료과)가 재원의 확보만을 우선시한 결과로 판단됨
  - 동 전용 사례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투자심사를 회피하고자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요청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전용으로 재원을 확보한 한 사례로서 부적절한 재정운용 사례로 사료되어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6) 명시이월 관련

###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 관련 법령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5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 53조 629억 4,100만원 중 0.4%, 2,438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198억 2,200만원)도 포함된 것임

〈표 3-63〉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합 계		53,062,941	243,861 <sup>주1)</sup>	0.4
	일반회계	37,965,184	76,595	0.2
	기타특별회계	12,710,716	147,444	1.2
	공기업특별회계	2,387,040	19,822 <sup>주2)</sup>	0.8

주1) '25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198억 2,2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

※ 자료근거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는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는 달리 이월의 종류를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는 바,
  - 공기업특별회계에만 있는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활용되는 명시이월과 비교하면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한다는 점과, 다음연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 다음연도로 재이월(사고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근거, 이월대상, 이월에 대한 승인권자 등의 차이가 있어 상호 구별이 필요한 제도임

〈표 3-64〉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25~'23)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sup>주1)</sup>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2025	합계 ①+②+③		53,062,941	126	243,861 <sup>주2)</sup>	0.7
	명시이월	소계 ①+②	50,675,900	117	224,039 <sup>주3)</sup>	0.4
		일반회계 ①	37,965,184	53	76,595	0.2
		기타특별회계 ②	12,710,716	64	147,444	1.2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387,040	9	19,822	0.8
2024	합계 ①+②+③		49,104,950	156	345,777 <sup>주2)</sup>	0.7
	명시이월	소계 ①+②	47,007,990	129	320,972 <sup>주3)</sup>	0.7
		일반회계 ①	34,502,585	43	44,396	0.1
		기타특별회계 ②	12,505,405	86	276,576	2.2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96,959	27	24,804	1.1
2023	합계 ①+②+③		51,490,048	137	829,975 <sup>주2)</sup>	1.6
	명시이월	소계 ①+②	49,487,336	115	797,073 <sup>주3)</sup>	1.6
		일반회계 ①	36,507,392	48	42,345	0.1
		기타특별회계 ②	12,979,944	67	754,727	5.8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02,711	22	32,902	1.6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 -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등 재구성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결산서에 ①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과 ②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이 상호 구분되어 작성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기준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서울시도 이에 공감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 지난 '26년 1월, 개정 통보된 기준에도 여전히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에 통합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산 총괄부서도 기준에 따라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됨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55억 400만원)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43억 1,700만원)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은 2,240억 3,900만원으로

- 우리 시의회는 '26년도 예산심사시 서울시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사하여 '25회계연도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90개 세부사업, 119개 통계목에 대해 2,608억 7,9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승인('25.12)하였으나,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명시이월된 규모는 당초 승인된 명시이월 규모 보다 △2개(△2개 통계목) 감소된 88개 세부사업(117개 통계목)에 대해 당초 승인된 명시이월액보다 △368억 9,400만원 감소된 2,240억 3,900만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65〉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관련 의회 승인 및 실제 이월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의회 승인현황 (2025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결결과)			실제 이월현황 (결산결과)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 승인액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액
90	119	260,879	88	117	224,039

- 실제 '26년도로 명시이월된 규모(2,240억 3,900만원)가 시의회의 승인 규모(2,608억 7,900만원)보다 △14.1%, △368억 4,000만원 감소된 것은 예산안 제출시점('25.10.31)에는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경비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시점('25.12.31)까지 집행하고자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명시이월 규모에서 실제로는 85.8%만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일 수밖에 없어 시의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저해한 사례일 수 있어 향후에는 이월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한 명시이월 발생건수는 117건으로 직전회계연도(129건)보다 △12건 감소되었고, 발생규모도 직전회계연도(3,209억 7,200만원)보다 △969억 3,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765억 9,5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 명시이월액(443억 9,600만원)보다 321억 9,900만원 증가하였음에도
  -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발생규모(76억 7,700만원)가 직전회계연도(893억 6,800만원)보다 △816억 9,100만원 감소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 규모(942억 6,900만원)가 직전회계연도(1,152억 300만원)보다 △209억 3,300만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됨
- 주요 명시이월 사례를 검토하면, **일반회계**에 편성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경우, 마포구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25년 1월 10일,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나,

- 서울시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2심 소송 판결 이후 사업을 재개하고자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임
- 그러나 '26년 2월 12일, 서울시가 2심에서도 패소하고 소송 결과를 수용하여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사업의 이월액(449억 500만원)은 전액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이월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도 “불용처리”외에는 다른 활용 방안이 없고, 회계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6〉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원회수시설 설치)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55,555	381	44,905	44,264	640	-	10,268
사무관리비	265	153	-	-	-	-	1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30	129	-	-	-	-	0.1
시 설 비	54,037	97	43,782	43,141	640	-	10,157
감 리 비	881	-	881	881	-	-	-
시설부대비	242	-	242	242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5861 ('26. 4. 7)

-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물순환안전국 소관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의 경우, 서울시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와 관련된 사업이나, 사업추

진중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현액(560억 1,600만원)의 64.3%, 360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의 명시이월액 규모(360억원)는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 규모(2,240억 3,900만원)의 16.0%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4회계연도에도 140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우리 위원회는 이월 규모가 과도한 점을 지적한 바,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7〉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56,016	14,247	41,769	36,000	5,769	-	-
시 설 비	54,340	12,647	41,691	36,000	5,692	-	-
시설부대비	96	19	77	-	77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정원도시국 소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은 연천군과 협의를 통해 연천군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연천군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158억 8,200만원)의 99.0%, 157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됨
- 사업부서(동물보호과)의 방침에 따르면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시점을 '25년 3월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용역 시행시에는 '25년 5월 준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추진중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2회 연기됨에 따라 설계준공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실제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57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그러나, 사업부서가 지난 '26년 3월, 동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시점을 '26년 6월로 연기하여 실제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용역이 준공된 이후인 '26년 7월이 되어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된 예산 (157억 2,500만원)의 집행 가능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과 같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면 ①서울시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 지자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②지연에 따른 계획변경, 추가비용 발생 등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별로 계획된 기한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68〉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15,882	21	15,861	15,725	19	-	0.2
사무관리비	33	13	19	-	19	-	0.2
시 설 비	15,145	7	15,137	15,137	-	-	-
감 리 비	683	-	683	683	-	-	-
시설부대비	20	-	20	2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5327 ('26. 4. 6)

○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나 사고이월과는 다르게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 의회의 예산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다만, 명시이월 또한 이월의 한 종류로서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감추경 또한 불가능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제한적 사유를 제외하고 법령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9〉 직전회계연도 대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증감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건수 <sup>주1)</sup>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건수 <sup>주1)</sup>	이월액 (이월률)	건수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3,062,941	126	243,861 <sup>주2)</sup> (0.7)	49,104,950	156	345,777 <sup>주2)</sup> (0.7)	△30	△101,916 (△29.4)
① + ②								
명시이월 (계)	50,675,900	117	224,039 <sup>주3)</sup> (0.4)	47,007,990	129	320,972 <sup>주3)</sup> (0.7)	△12	△96,933 (△30.1)
①								
일반회계	37,965,184	53	76,595 (0.2)	34,502,585	43	44,396 (0.1)	10	32,199 (72.5)
기타특별회계	12,710,716	64	147,444 (1.2)	12,505,405	86	276,576 (1.9)	△22	△129,132 (△46.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73,809	4	8,466 (0.5)	2,192,501	5	15,541 (0.7)	△1	△7,075 (△45.5)
교통사업 특별회계	1,981,800	8	29,124 (1.5)	1,818,772	10	36,037 (2.0)	△2	△6,913 (△19.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7,123	3	1,184 (1.4)	286,302	4	4,802 (1.7)	△1	△3,617 (△75.3)
주택사업 특별회계	3,107,128	3	7,677 (0.2)	3,035,935	11	89,368 (2.9)	△8	△81,691 (△91.4)
도시개발 특별회계	2,384,274	39	94,269 (4.0)	2,085,456	47	115,203 (5.5)	△8	△20,933 (△18.1)
균형발전 특별회계	208,251	7	6,722 (3.2)	227,487	5	1,736 (0.8)	2	4,985 (287.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274	-	- (0.0)	9,594	-	- (0.0)	-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2,159	-	- (0.0)	1,790,363	-	- (0.0)	-	-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9,452	-	- (0.0)	32,258	-	- (0.0)	-	- (-)
소방 특별회계	1,015,441	-	- (0.0)	1,026,732	4	13,886 (1.4)	△4	△13,886 (△100.0)
건설개량이월 (계)	2,387,040	9	19,822 (0.8)	2,096,959	27	24,804 (1.1)	△18	△4,982 (△20.0)
②								
공기업특별회계	2,387,040	9	19,822 (0.8)	2,096,959	27	24,804 (1.1)	△18	△4,982 (△20.0)
수도사업 특별회계	1,144,918	6	5,504 (0.5)	1,020,431	7	5,542 (0.5)	△1	△38 (△0.6)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42,122	3	14,317 (1.2)	1,076,527	20	19,261 (1.7)	△17	△4,944 (△25.6)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등 재구성

## 2)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 건설개량이월은 법령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중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중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
- '25회계연도에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2조 3,870억 4,000만원) 중 0.8%에 해당하는 198억 2,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48억 400만원)보다 △20.0%, △49억 8,2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회계별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는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6건이 발생되어 직전회계연도(7건)보다 △1건 감소하였고, 건설개량이월액은 55억 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5억 4,200만원)보다 △0.6%, △3,800만원 감소되었으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는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3건이 발생되어 직전회계연도(20건)보다 △17건 감소하였고, 건설개량이월액은 직전회계연도(192억 6,100만원)보다 △25.6%, △49억 4,400만원 감소된 143억 1,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0〉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발생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가)	건설개량이월			
		건수 (세목 기준)	건설개량이월액 (나)	건설개량이월률 (나)/(가)	
2025 회계연도	계	2,387,040	9	19,822	0.8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144,918	6	5,504	0.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42,122	3	14,317	1.2
2024 회계연도	계	2,096,959	27	24,804	1.1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20,431	7	5,542	0.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6,527	20	19,261	1.7
2023 회계연도	계	2,002,711	22	32,902	1.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8	8	9,053	0.9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7,442	14	23,848	2.3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된 사업내역을 검토하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소관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은 암사정수장 재건설 시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용수 부족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강북 정수센터와의 송수계통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1,600만원중 68.7%, 17억 3,0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5년 11월에 준공되어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소요예산의 68.7%, 17억 3,0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것으로 검토됨

〈표 3-71〉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2,516	785	1,730	1,730	-	-	0 <sup>주1)</sup>
시 설 비	2,041	775	1,265	1,265	-	-	-
감 리 비	200	-	200	200	-	-	-
시설부대비	275	10	264	264	-	-	0 <sup>주1)</sup>

주1) 불용액은 320원임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95 ('26. 4. 6)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소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는 취수원을 이중화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9,000만원중 1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7,4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것임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5년 11월에 준공되어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소요예산의 97.0%, 37억 7,4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것으로 검토됨

〈표 3-72〉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3,890	115	3,774	3,774	-	-	0 <sup>주1)</sup>
시 설 비	3,637	108	3,529	3,529	-	-	-
감 리 비	241	-	241	241	-	-	-
시설부대비	12	7	4	4	-	-	0 <sup>주1)</sup>

주1) 불용액은 310원임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95 ('26. 4. 6)

-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을 검토하면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는 모두 '26년 9월 착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재원을 건설개량이월하기 보다는 '25회계연도에 편성된 재원은 불용 처리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 활용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는 건설개량이월과 관련된 방침을 수립하며 서로 다른 두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이월계획을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작성하였고,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수립한 방침에서도 추진 일정 등을 동일하게 작성한 바,

- 사업내용과 집행 여건이 상이한 두 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집행계획을 서술하기 보다는 “행정절차 이행”, “용역 업체 선정” 등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월계획에는 “26년 7월 착공”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발주계획에는 “2026년 9월 착공(예정)”으로 상이하게 기재한 것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별로 이월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73〉 시설부 이월 관련 방침 대조

강 북 ~ 암 사 송 수 계 통 연 결	광 암 정 수 센 터 취 수 원 안 정 화
시설건설과-14195 ('25.12.11)	시설건설과-14146 ('25.12.11)
<p>□ 세출예산 이월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건설개량이월 하고자 함.</li> <li>-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계획)</li> <li>○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계획 수립 '26.1</li> <li>○ 사전 행정절차 협의 '26.2~4</li> <li>○ 시설공사 계약의뢰(조달청) '26.4</li> <li>○ 감리용역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의뢰(서울시) '26.1</li> <li>○ 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 '26.6</li> <li>○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26.7</li> </ul>	<p>□ 세출예산 이월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건설개량이월 하고자 함.</li> <li>-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계획)</li> <li>○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계획 수립 '26.1</li> <li>○ 사전 행정절차 협의 '26.2~4</li> <li>○ 시설공사 계약의뢰(조달청) '26.4</li> <li>○ 감리용역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의뢰(서울시) '26.1</li> <li>○ 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 '26.6</li> <li>○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26.7</li> </ul>
시설건설과-4898 ('26. 4.17)	시설건설과-3913 ('26. 3.30)
<p>IV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 4 ~ 6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li> </ul> </li> <li>○ 2026. 5 ~ 8 공사계약의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한 ‘발주계획 변경’</li> </ul> </li> <li>※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사관련 용역 심사 및 발주</li> <li>○ 2026. 9 공사계약 및 착공(예정)</li> </ul>	<p>IV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 4 ~ 6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li> </ul> </li> <li>○ 2026. 5 ~ 8 공사계약의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한 ‘발주계획 변경’</li> </ul> </li> <li>※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사관련 용역 심사 및 발주</li> <li>○ 2026. 9 공사계약 및 착공(예정)</li> </ul>

- 더욱이 동 건설개량이월 방침에 첨부된 “이월사업별 명세서”에는 회계연도 중 집행한 예산내역을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이월대상액만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①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은 이월사업별 명세서에 예산현액 및 이월액을 17억 3,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원인행위액이나 지출액 등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은 25억 6,1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7억 8,500만원으로 확인됨
- 또한, ②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는 이월사업별 명세서에 예산현액 및 이월액을 37억 7,400만원으로 기재하고, 지출액 등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은 38억 9,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1,500만원으로 확인됨

〈표 3-74〉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명세서와 실집행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예산현액	(재)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강 북 ~ 암 사 송수계통 연결	명 세 서 <sup>주1)</sup>	1,730	-	-	-	1,730 (-)	-
	실집행내역	2,561	2,561	785	785	1,730 (1,730)	0 <sup>주3)</sup>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명 세 서 <sup>주2)</sup>	3,774	-	-	-	3,774 (-)	-
	실집행내역	3,890	3,890	115	115	3,774 (3,774)	0 <sup>주4)</sup>

주1)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건설과-14195 ('25.12.11), 붙임2. 이월사업별 명세서

주2)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건설과-14146 ('25.12.11), 붙임2. 이월사업별 명세서

주3) 불용액은 320원임

주4) 불용액은 310원임

- 관련 법령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비에 한하여 건설개량이월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는 건설개량이월과 관련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원인행위 미필액”조차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사안으로
  - 관련 법령과 이월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요청한 결과로써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사안임
  - 특히, 건설개량이월 제도는 명시이월과 다르게 소관부서 장의 요구로 서울시장이 승인하는 내부절차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어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도림천 일대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은 예산액 60억원중 80.2%, 48억 1,6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되고 12.3%, 7억 4,000만원은 불용되었음

〈표 3-75〉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도림천 일대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6,000	444	4,816	4,816	-	-	740
시 설 비	5,260	444	4,816	4,816	-	-	-
감 리 비	720	-	-	-	-	-	720
시설부대비	20	-	-	-	-	-	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시비)에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로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5년 11월 18일 자치구로 재배정되었으나
  - 재배정된 자치구중 구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가 공사 전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사유로 재배정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서울시의 재배정 공문에는 원인행위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내년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 자치구로 재배정된 시기('25년 11월 18일)가 회계연도 종료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이고, 동절기에는 공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유사한 성격의 예산에 대한 재배정 일정 등을 보다 앞당

기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은 “빗물받이 설치”, “통수능 부족관로 개량”, “하수관로 개량” 등 여름철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히 예산배정 및 재배정시기를 관리하고, 집행시 공기(工期)관리 등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181억 7,000만원중 8.0%, 94억 6,9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었음

- 동 건설개량이월의 경우, ①중림동 399-4번지 일대 외 12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42억 1,000만원), ②광장동 141-5번지 일대 외 9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1억 5,000만원), ③쌍문동 309-3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33억 9,300만원), ④'21~'23년 지하침하 발생지(27개 지역) 관로 정비(17억 1,600만원)로 확인됨

〈표 3-76〉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	118,170	32,076	84,724	9,469	75,255	-	1,368
시 설 비	117,306	31,537	84,418	9,469	74,949	-	1,349
감 리 비	864	539	305	-	305	-	1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사업부서는 지난 '25년 9월, 과거 지반 침하지역과 설치 후 30년이 도래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산 배부 방침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 재배정된 자치구에서 ①사업대상지가 구도심으로 지장물 이설을 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②동절기 시작 전 열선 재설치가 어려워 연내 추진이 불가하거나, ③하반기에 예산이 교부(재배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공사 발주가 어려워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로 회신함에 따라 사업부서가 건설개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은 지난 '25년 3월, 대형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이월된 예산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7) 사고이월 관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 4,100만원)의 1.3%, 6,964억 9,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745억 1,300만원)보다 21.2%, 1,219억 8,200만원 증가된 바,

〈표 3-77〉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가)	사 고 이 월		
			건 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나)	사고이월률 (나)/(가)
2 0 2 5 회계연도	계	53,062,941	676	696,495	1.3
	일반회계	37,965,184	306	160,871	0.4
	특별회계 <sup>주1)</sup>	15,097,756	370	535,624	3.5
2 0 2 4 회계연도	계	49,104,950	646	574,513	1.2
	일반회계	34,502,585	287	145,139	0.4
	특별회계 <sup>주1)</sup>	14,602,365	359	429,374	2.9
2 0 2 3 회계연도	계	51,490,048	706	860,581	1.6
	일반회계	36,507,392	306	213,859	0.5
	특별회계 <sup>주1)</sup>	14,982,655	400	646,721	4.3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37조 9,651억 8,400만원)의 0.4%, 1,608억 7,1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1,451억 3,900만원)보다 10.8%, 157억 3,200만원 증가되었고,
-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15조 977억 5,600만원)의 3.5%, 5,356억 2,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293억 7,400만원)보다 24.7%, 1,062억 5,000만원이 증가됨

○ '25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액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액 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체 이월액의 발생규모는 9,403억 5,700만원이나,

- 총 이월규모는 직전회계연도보다 2.1%, 200억 6,700만원 증가한 바, 이는 예산현액(53조 629억 4,1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49조 1,049억 5,000만원)보다 8.0% 증가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8〉 예산이월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 =(다)+(라)+(마)	명시이월액 <sup>주1)</sup>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나)/(가)	(다) 이월률 (다)/(가)	(라) 이월률 (라)/(가)	(마) 이월률 (마)/(가)			
2025	53,062,941	940,357	1.8	224,039	0.4	19,822	0.0	696,495	1.3
2024	49,104,950	920,290	1.9	320,972	0.7	24,804	0.1	574,513	1.2
2023	51,490,048	1,690,556	3.2	797,073	1.5	32,902	0.1	860,581	1.6

주1)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등 재구성

- 아울러 이전 회계연도 결산결과 비교하여 이월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발생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 이월예산은 ①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고, ②현액으로 관리되어 다음회계연도에 사업 추진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추경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없으며 ③이·전용을 통한 활용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미리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집행상황 및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액을 우선 확보한 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

**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에 주의하여 검토되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조직별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서울시의 전체 실·본부·국 (40개) 중 사고이월액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실·본부·국인 ①물순환안전국(2,856억 4,500만원), ②재난안전실(714억 700만원), ③정원도시국(516억 3,900만원), ④서울아리수본부(446억 3,400만원), ⑤교통실(375억 6,100만원)에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6,964억 9,500만원)의 70.4%에 해당하는 4,908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물순환안전국은 직전회계연도에도 사고이월 규모(1,500억 7,700만원)가 가장 많았던 부서로 '25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2,856억 4,500만원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41.0%에 해당되는 규모임을 인식하고, 해당부서는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3-79〉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건수(통계목 기준) 및 사고이월사유<sup>주1)</sup>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sup>주2)</sup>	사유별 사고이월액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합의 자연	사전절차 자연	유관사업 자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재 구매자연	용역 준공한 미도래	기타
합 계	676	696,495	100.0	92,077 (13.2)	12,637 (1.8)	184,731 (26.5)	78,613 (11.2)	29,007 (4.1)	5,741 (0.8)	260,399 (32.8)	32,288 (9.3)
물순환안전국	140	285,645	41.0	34,952	8,114	120,034	7,683	11,290	353	96,951	6,265
재난안전실	80	71,407	10.3	18,746	-	4,192	19,045	7,397	-	22,025	-
정원도시국	60	51,639	7.4	6,135	4,522	34,156	4,759	159	-	1,528	377
서울아리수본부	34	44,634	6.4	3,953	-	10,015	22,357	5,071	280	167	2,788
교통실	32	37,561	5.4	-	-	123	21,406	1,591	2,627	1,905	9,906
도시반사설본부	10	25,753	3.7	-	-	-	-	-	1,095	24,658	-
균형발전본부	27	24,653	3.5	6,924	-	42	140	178	-	17,368	-
미래공간기획관	28	20,828	3.0	-	-	1,507	100	-	-	19,220	-
기후환경본부	19	19,670	2.8	3,007	-	308	-	-	1,123	11,093	4,138
미래한강본부	39	18,925	2.7	714	-	3,702	1,867	296	-	10,243	2,101
관광체육국	9	17,783	2.6	17,284	-	-	-	-	-	499	-
문화본부	44	16,556	2.4	48	-	-	-	-	-	15,240	1,267
시민건강국	19	14,901	2.1	-	-	565	171	71	244	8,456	5,391
도시공간본부	26	9,335	1.3	-	-	38	-	2,858	-	6,240	197
행정국	8	6,272	0.9	-	-	-	-	-	-	6,272	-
경제실	12	5,504	0.8	-	-	1,276	-	-	-	4,227	-
복지실	12	5,196	0.7	-	-	-	-	-	-	5,182	13
소방재난본부	6	4,257	0.6	-	-	3,834	-	-	-	-	422
주택실	25	4,063	0.6	-	-	200	-	-	-	3,863	-
디지털도시국	6	2,835	0.4	-	-	1,853	-	72	-	909	-
홍보기획관	5	2,589	0.6	-	-	-	-	-	-	2,575	14
디자인정책관	8	1,639	0.2	310	-	634	231	-	-	462	-
민생노동국	2	1,082	0.2	-	-	1,005	-	-	-	-	77
여성가족실	2	968	0.1	-	-	960	-	-	-	7	-
시립미술관	5	912	0.1	-	-	-	850	18	-	42	-
기획조정실	2	521	0.1	-	-	-	-	-	-	521	-
의회사무처	2	326	0.05	-	-	-	-	-	-	-	326
건설기술정책관	3	209	0.03	-	-	-	-	-	16	193	-
글로벌도시정책관	3	209	0.03	-	-	-	-	-	-	209	-
비상기획관	1	156	0.02	-	-	156	-	-	-	-	-
인재개발원	1	122	0.02	-	-	122	-	-	-	-	-
자치경찰위원회	1	117	0.02	-	-	-	-	-	-	117	-
미래청년기획관	2	109	0.02	-	-	-	-	-	-	109	-
평생교육국	3	104	0.02	-	-	-	-	-	-	104	-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나,

-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8개 실·본부·국(대변인,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건설기술정책관, 서울역사박물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은 작성이 생략된 것임

주2) 구성비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745억 1,300만원) 중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이나, 사고이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실·본부·국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①물순환안전국의 경우, '25회계연도 결산결과 회계연도중 추진한 462개 세부사업중 23.4%, 108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140건, 2,856억 4,5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41.0%)이 사고이월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예산현액 26억 5,500만원의 37.6%, 10억원), **수변체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예산현액 3억원의 92.4%, 2억 7,700만원) 등 24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760억 7,800만원의 41.2%, 313억 9,600만원),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356억 4,400만원의 27.0%, 96억 4,200만원),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560억 1,600만원의 10.2%, 57억 6,900만원) 등 10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예산현액 6억 700만원의 8.2%, 5,000만원) 1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3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예산현액 1,181억 7,000만원의 63.6%, 752억 5,500만원), **차집관로 보수공사**(예산현액 185억원의 55.6%, 102억 9,700만원) 등이 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②재난안전실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회계연도중 추진한 330개 세부사업중 18.5%, 61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80건, 714억 7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0.3%)이 사고이월 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예산현액 23억 4,500만원의 46.9%, 10억 9,900만원),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예산현액 8억 9,800원의 27.2%, 2억 4,400만원) 등 8개 세부사업이 사고이

될 것이고,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예산현액 157억 4,300만원의 23.3%, 36억 6,900만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예산현액 55억 5,000원의 65.4%, 36억 2,8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예산현액 387억 4,200만원의 32.4%, 125억 4,300만원),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예산현액 214억 2,400원의 51.4%, 110억 500만원) 등 48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임
- ③정원도시국의 경우, '25회계연도 결산결과 회계연도중 추진한 297개 세부사업중 16.8%, 50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60건, 516억 3,9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7.4%)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근교산 등산로 정비**(예산현액 244억 7,900만원의 16.9%, 41억 5,800만원), **서울 광장숲 조성**(예산현액 53억 3,600만원의 49.1%, 26억 2,100만원) 등 31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개 세부사업,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예산현액 40억원의 13.3%, 5억 3,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예산현액 638억 9,900만원의 1.8%, 11억 6,800만원), **공원 내 책심터 조성**(예산현액 42억 7,800원의 89.4%, 38억 2,600만원) 등 18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운용되는 ④서울아리수본부는 '25회계연도에 8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산결과 21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34

건, 446억 3,5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6.4%)이 사고이월된 바,

-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예산현액 755억 9,300만원의 15.0%, 113억 4,600만원),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예산현액 88억 2,000만원의 96.0%, 84억 7,100만원) 등의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⑤교통시설은 '25회계연도에 16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산결과 27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32건, 375억 6,1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5.4%)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예산현액 115억 8,100만원의 20.9%, 24억 1,500만원) 1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되었고,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예산현액 510억 6,900만원의 39.3%, 200억 7,600만원), **저상버스 도입**(예산현액 592억 1,700만원의 12.0%, 71억 2,000만원), **보호구역 시설 개선(전환사업)**(예산현액 245억 8,800만원의 4.4%, 10억 8,600만원) 등 21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소공로 도로공간 재편**(예산현액 37억 2,000만원의 51.7%, 19억 2,100만원), **도로공간재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예산현액 4억원의 58.1%, 2억 3,200만원) 2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제2차 변경 계획 및 제3차 구축계획 수립**(예산현액 7억 4,500만원의 50.6%, 3억 7,700만원),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 타당성 개선**(예산현액 2억 5,000만원의 49.5%, 1억 2,300만원),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예산현액 1,526억 2,400원의 0.01%, 2,100만원)를 포함하여 총  
3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임

〈표 3-80〉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현황(세부사업수,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의 비율)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명	전체 세부사업수 ①	사고이월이 발생된 세부사업수 ②	사고이월이 발생된 세부사업 비율 ②/①	전체 예산현액 ③	사고이월액 ④	사고이월률 <sup>주1)</sup> ④/③
<b>합계</b>	<b>4,280</b>	<b>527</b>	<b>12.3</b>	<b>53,062,941</b>	<b>696,496</b>	<b>1.3</b>
물 순환 안전국	462	108	23.4	1,607,311	285,645	17.8
재난안전실	330	61	18.5	1,537,898	71,407	4.6
정원도시국	297	50	16.8	917,384	51,639	5.6
서울아리수본부	84	21	25.0	1,144,918	44,635	3.9
교통실	161	27	16.8	3,675,182	37,56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23	6	26.1	1,162,178	25,754	2.2
균형발전본부	68	19	27.9	1,565,514	24,654	1.6
미래공간기획관	56	23	41.1	88,737	20,828	23.5
기후환경본부	127	17	13.4	637,900	19,671	3.1
미래한강본부	78	29	37.2	149,640	18,926	12.6
관광체육국	96	7	7.3	332,908	17,784	5.3
문화본부	279	33	11.8	712,304	16,556	2.3
시민건강국	346	11	3.2	786,617	14,902	1.9
도시공간본부	96	25	26.0	52,377	9,335	17.8
행정국	90	6	6.7	6,833,447	6,273	0.1
경제실	141	9	6.4	730,768	5,504	0.8
복지실	237	9	3.8	11,445,358	5,196	0.045
소방재난본부	85	4	4.7	1,989,828	4,257	0.2
주택실	188	25	13.3	4,376,053	4,064	0.1
디지털도시국	73	4	5.5	185,925	2,835	1.5
홍보기획관	36	1	2.8	75,574	2,589	3.4
디자인정책관	48	8	16.7	67,968	1,639	2.4
민생노동국	142	2	1.4	262,105	1,083	0.4
여성가족실	204	1	0.5	3,357,055	968	0.029
시립미술관	31	4	12.9	41,895	912	2.2
기획조정실	67	2	3.0	1,196,844	521	0.044
의회사무처	48	2	4.2	43,131	326	0.8
건설기술정책관	31	3	9.7	8,022	210	2.6
글로벌도시정책관	48	2	4.2	54,242	209	0.4
비상기획관	21	1	4.8	8,063	157	1.9
인재개발원	19	1	5.3	18,668	122	0.7
자치경찰위원회	43	1	2.3	26,281	118	0.4
미래청년기획관	23	2	8.7	107,950	110	0.1
평생교육국	74	3	4.1	4,539,072	105	0.002
대변인	9	-	-	2,260	-	-
재무국	40	-	-	3,292,712	-	-
민생사법경찰국	6	-	-	1,309	-	-
서울역사박물관	37	-	-	24,676	-	-
감사위원회	18	-	-	1,653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8	-	-	1,212	-	-

※ 주1) 사고이월률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 것이나,

- 예산현액에 비해 사고이월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취하면 “0.0”으로 기재되는 실·본부·국에 한정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 1) 주요 사고이월 발생사례 검토

-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를 검토하면, ①용역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2,603억 9,9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45.3%), ②사전절차 지연을 사유로 1,847억 3,1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6.5%), ③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사유로 920억 7,7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3.2%), ④유관사업 지연 사유로 786억 1,3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1.2%)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표 3-81〉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5~'23)<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sup>주2)</sup>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sup>주2)</sup>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2025	696,495	92,077	12,637	184,731	78,613	29,007	5,741	260,399	33,288
	(100.0)	(13.2)	(1.8)	(26.5)	(11.2)	(4.1)	(0.8)	(45.3)	(5.7)
2024	574,513	70,489	11,246	140,110	14,031	20,341	4,817	240,960	72,516
	(100.0)	(12.2)	(1.9)	(24.3)	(2.4)	(3.5)	(0.8)	(41.9)	(12.6)
2023	860,581	75,800	122,142	146,464	30,055	81,491	18,760	279,654	106,211
	(100.0)	(8.8)	(14.1)	(17.0)	(3.4)	(9.4)	(2.1)	(32.4)	(12.3)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2,603억 9,9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2,409억 6,000만원)보다 194억 3,900만원 증가되었고,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45.3%)도 '24회계연도(41.9%)보다 3.4%p 증가된 것임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주요 사고이월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용역)의 준공시점이 '25회계연도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사고이월의 특성에 대해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 하는 것은 사고이월 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 심사 마다 회계연도 내 준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집행이 가능한 범위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계약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거쳐 승인되는 절차인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사유로 사고이월된 규모(2,603억 9,900만원)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중 가장 큰 비중(45.3%)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월제도를 남용하는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소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77억 8,200만원중 34.3%, 439억원이 이월된 것임

〈표 3-82〉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27,782	83,824	43,900	27,000	16,900	-	57
시 설 비	122,088	78,514	43,547	27,000	16,574	-	-
감 리 비	5,593	5,266	326	-	326	-	-
시설부대비	100	42	-	-	-	-	5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6744 ('26. 4. 9)

- 동 사업은 “트램”사업 적용 법률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교통안전심의회가 지연됨에 따라 '25년 6월 교통안전심의회에 대해 일부 가결 통보되었으나, 사업부서는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스템 설치 및 검증기간을 고려하여 약 11개월의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원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지난 '19회계연도부터 '25회계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업부서가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확보를 우선시한 결과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83〉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25~'1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보조금반납금 비율)	불용액 (불용률)
			계 (이월률)	명시이월 (명시이월률)	사고이월 (사고이월률)		
2025	127,782	83,824 (65.5)	43,900 (34.3)	27,000 (21.1)	16,900 (13.2)	- (0.0)	57 (0.04)
2024	143,625	91,347 (63.6)	52,174 (36.3)	33,050 (23.0)	19,124 (13.3)	- (0.0)	103 (0.07)
2023	79,733	56,253 (70.5)	23,030 (28.8)	14,091 (17.6)	8,938 (11.2)	- (0.0)	449 (0.5)
2022	21,910	9,226 (42.1)	12,603 (57.5)	- (0.0)	12,603 (57.5)	- (0.0)	79 (0.3)
2021	21,460	9,802 (45.6)	11,595 (54.0)	5,383 (25.0)	6,211 (28.9)	- (0.0)	62 (0.2)
2020	2,819	845 (29.9)	1,966 (69.7)	1,966 (69.7)	- (0.0)	- (0.0)	7 (0.2)
2019	1,000	- (0.0)	819 (81.9)	- (0.0)	819 (81.9)	- (0.0)	180 (18.0)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26년 5월 현재, 위례선 트램은 12월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철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예정보다 지연되면 다른 사업보다 큰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에는 공정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소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노들섬을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327억 4,000만원)의 40.0%, 130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84〉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32,740	19,575	13,091	13,091	-	-	73
사무관리비	337	334	-	-	-	-	3
행사운영비	55	55	-	-	-	-	-
시 설 비	30,534	17,485	13,030	13,030	-	-	18
감 리 비	1,612	1,541	60	60	-	-	9
시설부대비	200	158	-	-	-	-	4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4097 ('26. 4. 6)

- 동 사업은 ①군부대 협의가 지연되고, ②사업추진중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과업이 추가되는 등 설계용역 준공이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가 사고이월 된 것임
- 관련 법령은 서울시 전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노들섬에는 군사시설도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가 필요한 바, 사업부서가 지난 '25년 3월, “조건부 동의”를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사업추진중 멸종위기종(맹꽁이) 서식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 준공이 2개월 지연됨에 따라 조성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도 순연되어 관련 재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다만,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두 번의 추경이 있어 예산 편성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과업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예산도 감액조정할 여지가 있었으나,

- 사업부서는 감추경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편의적으로 이월을 결정한 사례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소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는 당초 '25년 11월에 곤돌라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25년도 본예산에 잔여 공사비를 편성요청한 것이나,

- 기존에 케이블카를 운영하던 업체와 소송이 진행되어 당초 편성액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25년 5월,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268억 2,900만원을 감액조정한 바, 예산현액(152억 8,700만원)의 54.4%, 83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85〉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5,287	6,775	8,312	8,312	-	-	198
사무관리비	802	444	165	165	-	-	19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817	1,817	-	-	-	-	0 <sup>주1)</sup>
시 설 비	11,995	3,976	8,013	8,013	-	-	5
감 리 비	670	536	134	134	-	-	-
시설부대비	0.4	0.4	-	-	-	-	-

주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은 2,000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4043 ('26. 4. 9)

- 아울러, 지난 '25년 12월 19일, 서울시는 본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동 소송에 대해서도 항고하여 5월 현재, 2심 변론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

는 바, 소송결과에 따라 '26년도로 이월된 재원이 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중지된 사업의 경우는 소송결과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과를 낙관하여 전년도에서 이월한 재원은 회계연도 개시 후 패소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재원의 이월을 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6〉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통 계 목	본 예산	추경조정액	최종예산	전 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9,362	△26,829	12,533	0	15,287	6,775	8,312	198
사 무 관 리 비	738	-	738	△200	802	444	165	193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325	△707	1,617	200	1,817	1,817	-	0 <sup>주1)</sup>
시 설 비	34,561	△24,833	9,727	-	11,995	3,976	8,013	5
감 리 비	1,728	△1,278	450	-	670	536	134	-
시 설 부 대 비	10	△9	0.4	-	0.4	0.4	-	-

주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은 2,000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4043 ('26. 4. 9)

-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소관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은 노후시설 개선 및 시립 정신병원으로서 역할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2억 8,200만원중 49.5%, 75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87〉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5,282	7,693	7,561	7,561	-	-	27
시 설 비	13,745	6,691	7,041	7,041	-	-	12
감 리 비	1,504	992	500	500	-	-	10
시설부대비	32	9	19	19	-	-	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2000 ('26. 4. 7)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당초 '26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병원을 운영하며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공사 일정이 매년 지연되고 있음
-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고, 공사 주관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음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은평병원 관련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사업부서는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2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일정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8〉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시 설 비	73,929	31,320	42.4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시 설 비	122,089	16,574	13.6
미래공간기획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 설 비	30,535	13,030	42.7
물순환안전국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 - 1 단 계)	시 설 비	30,901	10,120	32.7
물순환안전국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17,964	9,875	55.0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33,471	8,043	6.0
균형발전본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시 설 비	11,996	8,013	66.8
물순환안전국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20,191	7,931	39.3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시 설 비	13,745	7,041	51.2
물순환안전국	서남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시 설 비	16,499	5,986	36.3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 설 비	9,471	5,522	58.3
재난안전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 설 비	17,861	4,446	24.9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시 설 비	6,756	4,315	63.9
재난안전실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시 설 비	6,586	4,125	62.6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시 설 비	7,424	3,856	51.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 설 비	73,326	3,769	5.1
행정국	노후 시설물 개선	시 설 비	5,856	3,631	62.0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사업	시 설 비	4,000	3,586	89.7
복지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7,100	3,543	49.9
물순환안전국	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3,615	3,500	96.8

※ 주1) 통계목 기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1,847억 3,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401억 1,000만원)보다 446억 2,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6.5%)도 직전회계연도(24.3%)보다 2.2%p 증가된 것임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내부절차를 이행하거나,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인허가·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 동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기에는 관련 절차의 이행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다음에는 당초 전망보다 절차를 이행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기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를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사업부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뒤늦게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함으로써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회계연도중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회계연도내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대규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른 바,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 1단계 사업인 바,

- ①**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313억 9,600만원(예산현액 760억 7,800만원의 41.3%), ②**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96억 4,200만원(예산현액 356억 4,400만원의 27.1%), ③**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57억 6,900만원(예산현액 560억 1,600만원중 10.3%)이 사고이월된 것임

- 사업부서에 따르면 '2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회계연도대로 본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설계가 준공된 후 지하안전평가, 도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 및 '25년 10월에 본공사를 계약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제출하였음

■ 동 사업들은 첫 해인 '23회계연도에는 편성된 예산액(338억 6,400만원)중 88.9%, 301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1,350억 4,800만원)의 64.9%, 877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고,

■ '25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1,677억 3,800만원)의 49.3%, 828억 9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추진중 매년 이월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당초 계획보다 준공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추가 민원발생,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89〉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결산현황 ('25~'23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구분	계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2023	예산현액 <sup>주1)</sup>	33,864 (33,864)	12,124 (12,124)	13,740 (13,740)	8,000 (8,000)
	지출액	-	-	-	-
	이월액 <sup>주2)</sup>	30,124	12,124	10,000	8,000
	불용액	3,740	-	3,740	-
2024	예산현액 <sup>주1)</sup>	135,048 (100,924)	62,124 (50,000)	42,040 (32,040)	30,884 (22,884)
	지출액	16,385	6,045	6,355	3,983
	이월액	87,738	56,078 <sup>주3)</sup>	11,644 <sup>주4)</sup>	20,016 <sup>주5)</sup>
	불용액	30,924	-	24,040	6,884
2025	예산현액 <sup>주1)</sup>	167,738 (80,000)	76,078 (20,000)	35,644 (24,000)	56,016 (36,000)
	지출액	64,924	24,681	25,995	14,247
	이월액	82,809	31,396 <sup>주6)</sup>	9,642 <sup>주7)</sup>	41,769 <sup>주8)</sup>
	불용액	20,004	20,000	4	-

주1) 괄호안의 수치는 당해연도 예산액임 ('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일치함)

주2)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임

주3) 명시이월액 479억 4,800만원, 사고이월액 81억 3,000만원 (재이월액 60억 7,800만원)

주4) 명시이월액 31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 84억 9,900만원 (재이월액 36억 4,500만원)

주5) 명시이월액 140억 5,900만원, 사고이월액 59억 5,700만원 (재이월액 40억 200만원)

주6) 사고이월액 313억 9,600만원 (명시이월액 없음)

주7) 사고이월액 96억 4,200만원 (명시이월액 없음)

주8) 명시이월액 360억원, 사고이월액 57억 6,900만원

- 특히, 동 사업들은 '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는 202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는 준공시기가 2030년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싱크홀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하발생 지역 주변 및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81억 7,000만원의 63.7%, 752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90〉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계	118,170	32,076	84,724	75,225	9,469	-	1,368
시 설 비	117,306	31,537	84,418	74,949	9,469	-	1,349
감 리 비	864	539	305	305	-	-	1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사업부서가 지난 '25년 6월, 추정심사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동 사업의 추진기간을 '25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25년 9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에 따르면 사업 추진기간을 '25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기재하고 있고, “예산집행계획”에도 하수관로 종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6년 3월 준공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 초기부터 예산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으로 해당 특별회계가 법령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동 회계의 여유재원이 발생되어도 일반회계나 다른 기타 특별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 관련 법령은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운용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을 운용할 시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표 3-91〉 노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 사업별설명서 및 방침 비교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

####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신설개량 28건, 지하침하 및 노후불량 관로 정비 23건
- 사업기간 : '2025. 6. ~ '2025. 12.

### “「지반침하지역 및 30년 도래」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

#### □ 정비계획

- 위 치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기 간 : '25. 9. ~ '26. 12.

#### □ 예산집행계획(예산 조정)

- 시비 추경 예산 조정 후 자치구별 정비공사 시행
  -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강남권역, 강북권역)’을 시행중으로 추경편성시 물량 대비 서초구 등 현재물량 증가 ※ 용역기간 : '24. 9. ~ '26. 3.
  - 자치구별 정비제외 물량(기정비, 재개발·재건축, 중복사업 등) 반영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17  
②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4954 ('25. 9.10) 중 일부 발취

〈표 3-92〉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117,306	74,950	63.9
물순환안전국	차 집 관 로 보 수 공 사	시 설 비	18,501	10,298	55.7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시 설 비	33,415	9,567	28.6
정원도시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 설 비	31,608	7,180	22.7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시 설 비	62,182	6,352	10.2
물순환안전국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시 설 비	54,340	5,692	10.5
정원도시국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시 설 비	24,473	4,159	17.0
물순환안전국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 설 및 배 수 개 선	시 설 비	4,800	4,005	83.4
정원도시국	공 원 내 책 심 터 조 성	시 설 비	4,119	3,689	89.6
재난안전실	탄 천 변 동 측 도 로 확 장 ( 교 통 관 리 계 정 )	시 설 비	4,700	3,568	75.9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시 설 비	6,653	3,480	52.3
정원도시국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	시 설 비	7,450	3,280	44.0
정원도시국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시 설 비	17,673	3,142	17.8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시 설 비	11,865	2,907	24.5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전산개발비	11,174	2,530	22.6
물순환안전국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5,477	2,201	40.2
물순환안전국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시 설 비	3,314	1,645	49.6
정원도시국	공 원 내 C C T V 개 선	시 설 비	15,600	1,624	10.4
디지털도시국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시 설 비	3,850	1,566	40.7
미래한강본부	자 연 형 호 안 복 원	시 설 비	4,850	1,499	30.9

※ 주1) 통계목 기준, “사전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3.2%, 920억 7,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04억 8,900만원)보다 215억 8,800만원 증가된 것임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소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371억 7,200만원)의 46.4%, 172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93〉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37,172	19,937	17,234	17,234	-	-	0 <sup>주1)</sup>
사무관리비	20	19	-	-	-	-	0 <sup>주1)</sup>
시 설 비	35,350	18,701	16,648	16,648	-	-	-
감 리 비	1,792	1,211	581	581	-	-	-
시설부대비	10	5	4	4	-	-	-

주1) 불용액은 사무관리비에서만 발생하였으며 불용규모는 60만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4344 ('26. 4. 8)

- 사업부서는 최초 사업 추진시에는 '2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공법 변경, 폭우 등 기상 요인 등으로 6차례 공기가 연장되어 현재는 '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확인됨

### 〈표 3-94〉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경위

- '19. 12. ~ '21. 5. : 설계용역 실시
- '22. 7. 25. : 공사계약 및 1차수 공사 착공
- '23. 7. 12. : 1차 공기 연장 (레미콘 수급지연, 증36일)
- '23. 9. 19. : 2차수 공사 착공
- '24. 4. 16. : 2차 공기 연장 (암파쇄공법 변경, 증43일)
- '24. 6. 28. : 3차 공기 연장 (주계약자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증31일)
- '24. 9. 24. : 3차수 공사 착공
- '25. 5. 16. : 4차 공기 연장 (추가공사 반영, 증62일)
- '25. 5. 23. : 4차수 공사 착공
- '25. 10. 4. : 5차 공기 연장 (폭염, 강우 등 기상여건 반영, 증58일)
- '25. 11. 11. : 6차 공기 연장 (실내건축 및 동절기 공사불가, 증130일)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5432 ('25.11.11)

- 동 사업은 여섯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6년도 현재 총사업비는 '22년도 착공시(698만 3,300만원)보다 10.5%, 74억 100만원 증가한 772억 3,400만원인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당초 계획보다 추가 민원발생, 공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준공시기가 지연되면 총사업비가 대규모로 증가하게 되는 바, 향후 잔여 공정은 일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는 지난 '22년 6월, 개정된 법령에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115억 2,600만원)의 20.5%, 23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표 3-95〉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1,526	7,990	2,366	2,366	-	649	520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1,526	7,990	2,366	2,366	-	649	5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5861 ('26. 4. 7)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중 일부 사업장은 냉·난방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작업 일정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으나 추가적인 수리검사 수요가 발생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 공사추진중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제한되더라도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 직전까지 예산집행을 노력하고자 감액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유사사례 발생시 먼저 예산의 감액조정을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월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96〉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관 광 체 육 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35,350	16,649	47.1
재 난 안 전 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시 설 비	19,884	10,491	52.8
물순환안전국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21,249	7,193	33.9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 하 차 도 건 설	시 설 비	25,919	6,924	26.7
물순환안전국	영등포, 신길펌프장 주변 배 수 시 설 ( 관 로 ) 개 선	시 설 비	8,400	6,592	78.5
물순환안전국	용산-2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15,614	5,274	33.8
정원도시국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시 설 비	7,154	3,148	44.0
물순환안전국	시 흥 고 지 - 2 소 구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6,333	2,904	45.9
물순환안전국	불광 1-1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2,594	2,500	96.4
서울아리수본부	미 아 배 수 지 건 설	시 설 비	3,666	2,469	67.3
물순환안전국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6,403	2,437	38.1
물순환안전국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3,139	2,377	75.7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1,526	2,366	20.5
재 난 안 전 실	삼 각 지 고 가 보 수	시 설 비	3,399	2,231	65.6
물순환안전국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10,028	1,799	17.9
정원도시국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	시 설 비	3,000	1,688	56.3
재 난 안 전 실	긴 급 도 로 개 선	시 설 비	4,949	1,478	29.9
재 난 안 전 실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시 설 비	4,588	1,271	27.7
재 난 안 전 실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시 설 비	9,430	1,253	13.3
재 난 안 전 실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시 설 비	3,100	959	30.9

※ 주1) 통계목 기준,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 **유관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786억 1,3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40억 3,100만원)보다 460.2%, 645억 8,200만원 증가되었고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1.2%)도 '24회계연도(2.4%)보다 8.8%p 증가된 것임
- 교통실 교통운영과 소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는 노후 교통신호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보행자 안전확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510억 6,900만원)의 39.3%, 200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97〉 '25회계연도 결산결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51,069	27,686	20,076	20,076	-	-	3,305
시 설 비	45,911	25,347	19,300	19,300	-	-	1,263
감 리 비	5,121	2,309	766	766	-	-	2,035
시설부대비	36	29	-	-	-	-	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6135 ('26. 4. 6)

- 지난 '25년 8월, 경찰청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와 관련된 표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당시에는 동 표준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능이 개선된 제품이 시중에서 생산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됨

- 경찰청은 당초 관련 표준규정을 개정시점('25년 8월)부터 3개월 유예 후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여 유예기한 내에 관련 업체가 공인 성적서를 획득하도록 안내하였으나, ①검사 수행기관이 부족하고 ②검사완료까지 평균 3주가 소요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유예기간을 '26년 5월까지로 정한 것으로
  - 사업부서(교통운영과)도 경찰청의 표준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구에 기능개선 약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기능개선 약속서를 제출한 자치구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재난안전실 소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등의 사업도 유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사업도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이월사유를 분류한 것으로 검토됨

〈표 3-98〉 유관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 통 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시 설 비	45,911	19,300	42.0
재 난 안 전 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시 설 비	36,097	12,085	33.5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시 설 비	74,086	11,302	15.3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시 설 비	6,718	6,391	95.1
물순환안전국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설 비	12,615	3,632	28.8
물순환안전국	수 처리 분야 기계 설비 유 지 보 수 및 개 량	시 설 비	9,207	2,718	29.5
정원도시국	서울 광 장 숲 조 성	시 설 비	5,337	2,621	49.1
재 난 안 전 실	가 공 배 전 선 지 중 화	시 설 비	20,054	2,521	12.6
미래한강본부	화 장 실 유 지 관 리	시 설 비	3,849	1,867	48.5
재 난 안 전 실	잠 수 교 전 면 보 행 화	시 설 비	2,100	1,769	84.2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감 리 비	1,674	1,674	100.0
정원도시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 변 녹 지 량 확 충	시 설 비	13,002	1,585	12.2
서울아리수본부	봉 은 및 삼 성 배 수 지 급 수 공 급 체 계 개 선	시 설 비	2,919	1,136	38.9
재 난 안 전 실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시 설 비	2,339	1,100	47.0
교 통 실	보호구역 시설 개선(전환사업)	시 설 비	24,395	1,087	4.5
재 난 안 전 실	중 랑 천 보 행 교 량 건 설	시 설 비	1,186	850	71.7
서울아리수본부	배수지 · 가압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054	805	11.4
교 통 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감 리 비	5,121	777	15.2
물순환안전국	노 후 불 량 하 수 맨 홀 정비	시 설 비	21,789	656	3.0
서울아리수본부	정수 센터 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7,154	526	1.9

※ 주1) 통계목 기준, “유관사업 지연”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3-99A〉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4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170	32,076	75,255	63.7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76,078	24,681	31,396	41.3
교통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51,069	27,686	20,076	39.3
관광체육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37,172	19,937	17,234	46.4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27,782	83,824	16,900	13.2
미래공간기획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32,740	19,575	13,091	40.0
재난안전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정구간)	38,742	26,199	12,543	32.4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75,593	62,740	11,346	15.0
재난안전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21,424	10,418	11,005	51.4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32,719	22,380	10,339	31.6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보수공사	18,500	8,189	10,297	55.7
물순환안전국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444	9,288	10,155	52.2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35,644	25,995	9,642	27.1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8,820	348	8,471	96.0
균형발전본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15,287	6,775	8,312	54.4
물순환안전국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634	13,570	8,064	37.3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135,155	121,896	8,043	6.0
물순환안전국	일원 - 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344	6,392	7,950	55.4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8,064	20,458	7,603	27.1
물순환안전국	천호 - 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884	3,983	5,957	19.2

〈표 3-99B〉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4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15,282	7,693	7,561	49.5
물순환안전국	이문-2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5,066	7,728	7,338	48.7
정원도시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31,608	23,596	7,180	22.7
교통실	저상버스 도입	59,217	51,916	7,120	12.0
물순환안전국	영등포, 신길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9,460	2,676	6,762	71.5
서울아리수본부	정수센터 시설 정비	63,506	44,960	6,483	10.2
물순환안전국	용산-22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591	11,171	6,161	35.0
물순환안전국	서남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16,499	10,203	5,986	36.3
물순환안전국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56,016	14,247	5,769	10.3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10,527	4,380	6,126	58.2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9,044	4,463	4,580	50.6
재난안전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7,861	12,010	4,445	24.9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7,188	2,720	4,375	60.9
물순환안전국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5,270	926	4,208	79.9
정원도시국	근교산 등산로 정비	24,479	19,296	4,158	17.0
재난안전실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6,985	2,859	4,125	59.1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9,351	21,705	4,063	13.8
물순환안전국	명륜-4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115	115	4,000	97.2

## 2) 이월액 확정 이후 사고이월액을 임의변경한 사례 검토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 규칙에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확정기한(1월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25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변경한 사례가 2건(통계목 기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00〉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정정한 사례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확정된 이월액 (1월 10일) (가)	변경된 이월액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정정일
문 화 본 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자 산 및 물품취득비	14	-	△14	'26. 1.27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시 설 비	277	189	△88	'26. 2. 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729 ('26. 4.20)

○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소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은 '25년 1월 9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5,100만원)중 1,400만원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사업부서는 사고이월액 확정 이후 추가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여 1월 27일,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1,400만원)을 0원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한 기한이 이미 경과된 1월 27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은 '25년 1월 9일, **시설비** 예산현액(26억 4,100만원)중 2억 7,700만원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26년도로 이월한 후 추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음을 사고이월 확정기한 이후 인지하고, 확정된 사고이월액에 대해 정정요청하여, 예산부서가 지난 2월 2일, 요청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로서는 실제 지출된 예산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 산정된 이월예산액을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서울시 규칙에서 회계연도 이월규모 확정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최대 10일의 유예기간이 두고 있는 것은 지출액, 이월가능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월규모를 확정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월예산을 법정일자 이후 변경하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인 것은 물론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과도 맞지 않는 행정일 수 밖에 없어 정정액의 과소를 떠나 회계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함
-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3조 2,825억 8,0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바, 직전회계연도(1조 4,870억 2,200만원)보다 120.7%, 1조 7,955억 5,8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101〉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합	계	3,282,580	1,487,022	1,645,991
	일반회계	3,010,903	929,028	932,676
	특별회계 <sup>주1)</sup>	271,677	557,994	713,314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9,290억 2,800만원)보다 224.1%, 2조 818억 7,500만원 증가한 3조 109억 3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5,579억 9,400만원)보다 △ 51.3%, △2,863억 1,700만원 감소한 2,716억 7,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지방소비세(△1,445억 3,200만원), 자동차세(△723억 2,900만원), 담배소비세(△209억 6,700만원)는 감소하였으나,
  - 취득세(2조 3,868억 1,500만원), 재산세(1,240억 7,200만원), 지방소득세(7,330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2,065억 100만원) 등은 초과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37조 9,651억

8,400만원)보다 7.1%, 2조 6,812억 5,300만원 증가한 40조 6,464억 3,7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10조 1,905억 3,800만원)의 99.6%, 10조 1,468억 8,700만원 지출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14조 1,950억 8,400만원)의 98.7%, 14조 168억 9,800만원 지출하였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9,075억 6,700만원)의 93.9%, 8,524억 4,700만원, 환경분야는 예산현액(8,588억 5,100만원)의 82.3%, 7,068억 6,700만원 등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37조 9,651억 8,400만원의 98.4%, 37조 3,721억 5,1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제출된 바,
- 세입결산액(40조 6,464억 3,7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37조 3,721억 5,1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1조 2,161억 2,300만원)보다 169.2%, 2조 581억 6,300만원 증가한 3조 2,742억 8,5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 다음연도 이월액(2,374억 6,7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244억 4,500만원) 등을 차감한 **일반회계 세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9,290억 2,800만원)보다 224.1%, 2조 818억 7,500만원 증가한 3조 109억 300만원으로 제출됨

〈표 3-102〉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5~'23)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최종예산 ①	37,775,648	34,246,379	36,232,230
전년도이월액 ②	189,535	256,205	275,161
예산현액 ③=①+②	37,965,184	34,502,585	36,507,392
세입결산액(수납액) ④	40,646,437	34,781,517	36,215,268
세출결산액(지출액) ⑤	37,372,151	33,565,393	34,928,472
결산상잉여금 ⑥=④-⑤	3,274,285	1,216,123	1,286,796
채무상환 ⑦	-	-	-
명시이월액 ⑧	76,595	44,231	42,345
사고이월액 ⑨	160,871	145,139	213,859
계속비이월액 ⑩	-	-	-
보조금실제반납금 ⑪	24,445	97,723	97,913
물납등 ⑫	97,723	-	-
지정재원잉여금 ⑬	1,470	-	-
세계잉여금 ⑭=⑥-(⑦+⑧+⑨+⑩+⑪+⑫+⑬)	3,010,903	929,028	932,67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7848 ('26. 4. 8)

-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25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 109억 300만원 중 관련 법에 따라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8,237억 6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4,944억 400만원), ③타 회계에 대한 전출(489억 7,600만원) 등 이른바 “법정정산분”(1조 3,670억 8,7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1조 6,438억 1,500만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3-103〉 '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A)	법정정산분				순세계 잉여금 (C)= (A)-(B)	조례상 기금적립분		가용 재원 (D)= (C)-④-⑤
	소계 (B)	자치구 교부 ①	교육청 부전 출 ②	타회계 출 ③		(C)의 50% 이상 ④ <sup>주1)</sup>	(C)의 10% 이상 ⑤ <sup>주2)</sup>	
3,010,903	1,367,087	823,706	494,404	48,976	1,643,815	821,907	164,381	657,526

주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주2)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진흥기금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7848 ('26. 4. 8) 재구성

-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3조 109억 300만원)의 경우, 법정정산분(1조 3,670억 8,700만원)을 제외한 1조 6,438억 1,5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8,219억 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5년 9월, 조례를 제정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을 주택진흥기금에 적립하도록 한 바,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1조 6,438억 1,5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643억 8,100만원을 주택진흥기금에 적립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계잉여금** 일부를 결산 전 선(先)이입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어 향후 법정 의무 경비정산분 및 조례상 기금적립분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 편성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을 차기 추경예산을 통해 정산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0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및 제1회 추경 세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사용계획			제1회 추경 기반영
세계잉여금	3,010,903	A	세 계 잉 여 금	3,010,903	1,031,756
법 정 산 분	1,367,087	①	조정교부금교부	646,365 <sup>주1)</sup>	352,969
			재정보전금교부	79,407 <sup>주2)</sup>	-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97,933 <sup>주3)</sup>	-
		②	교육청전출	494,404 <sup>주4)</sup>	-
		③	타회계전출	48,976 <sup>주5)</sup>	-
조 례 상 기금적립	821,907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821,907 <sup>주6)</sup>	100,000
	164,381	⑤	주택진흥기금적립	164,381 <sup>주7)</sup>	-
순 세 계 잉 여 금	657,526	가용재원 {A-(①+②+③+④+⑤)}		657,526 <sup>주8)</sup>	578,787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주2) '25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주3) '25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6년 예산으로 지급함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①지방세 정산분(2,883억 8,200만원),

② 담배소비세 정산분(40억 800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2,020억 1,300만원)

주5)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 70.0%(280억 1,100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 10.0%(40억 100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 10.0%(40억 100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주차장관리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 10.0%(40억 100만원)

■ 소방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 100% - 시세징수교부금(소방분) 교부액(89억 5,900만원)

주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주7)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진흥기금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

주8) 순세계잉여금(6,575억 2,600만원)중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 편성액을 차감한 실제 가용재원은 787억 3,9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담당관-4710 ('26. 4.17.)재구성

- 서울시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26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매년 직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에 대해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본예산에 선(先)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로서는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한정되어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편성일 수 있으나, '26년도 세입예산에 12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8개 계정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미리 편성한 바 있음
  -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중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25회계연도 결산이후 발생 규모가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6개 특별회계, 8개 계정에 '26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으로 미리 편성한 것임

〈표 3-105〉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A)	2026년도 본예산 세입 편성액 (순세계잉여금B)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편성액 (순세계잉여금C)	잉여금 잔액 ( A - B - C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3	19,414	-	△ 19,261
도시개발특별회계	32,480	49,645	-	△ 17,164
소방특별회계	11,688	22,869	-	△ 11,180
인건비계정	2,124	13,588	-	△ 11,463
소방정책사업비 계 정	9,563	9,280	-	282
교통사업특별회계	25,622	22,231	6,748	△ 3,357
교통관리계정	14,932	8,183	6,748	-
주차관리계정	10,690	14,048	-	△ 3,357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78	597	-	△ 218
수도사업특별회계	77,842	79,097	-	△ 33,94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800 ('26. 4.21)

○ 결국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인건비계정),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관리계정),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 발생규모가 '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액보다 감소된 바,

- 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194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 192억 6,1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고
-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8,000만원임에도 '26년도 본예산에 496억 4,500만원을 미리 편성함에 따라 잉여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는 △ 171억 6,4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됨

- ③ **소방특별회계(인건비계정)**의 경우,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2,400만원임에도 '26년도 본예산에 135억 8,800만원을 미리 편성함에 따라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26년도 여유재원은 △114억 6,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됨
- ④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관리계정)**의 경우, '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9,000만원임에도 2026년도 본예산에 140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결산결과에 따른 여유재원 △33억 5,7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인건비계정)**의 경우,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26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간 불부합액 규모가 각각 △100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임에도 개선없이 반복 편성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을 본예산에 선(先) 이입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회계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사실상 '26년도 세입결손이 발생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인건비계정),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관리계정),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 기업회계의 경우라면 특정 계정이 음수(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차입운용이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는 단식부기 기반의 현금주의 회계라는 점에서 잉여재원이 음수(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재정운용이 불가하기에 '26회계연도중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경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현행 법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고,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지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부터 최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결산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미리 이입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동일 편성 사례를 반복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1,028억 1,7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78억 1,9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45억 8,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5억 400만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례는 결국, 해당 회계의 잉여재원이 실제로는 음수(마이너스)인 것으로써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반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서 잉여재원이 음수(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재정운용은 불가하기에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106〉 '2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결손액 (A)	세출집행잔액 (B)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C= A+B)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 189,809	86,992	△ 102,817
균형발전특별회계	△ 10,518	2,699	△ 7,81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75,027	70,446	△ 4,58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27	19,595	△ 1,504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중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재구성

-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계정별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결산서 서식은 회계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계정별 세수결손 등의 필수결산 결과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의 경우, △1,028억 1,7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회계**별로 제출된 결산결과는 오히려 순세계 잉여금 879억 6,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표기되어 계정별 회계 운용 결과를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계정별로 결산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서식 개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07〉 '25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출-세입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A)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107,129	3,043,255	2,942,238	101,017	11,639	1,414	87,964
국 민 주 택 사 업 계 정	1,231,756	1,041,947	1,135,695	△93,749	7,654	1,414	△102,817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계정	1,636,642	1,757,202	1,570,567	186,635	2,957	0	183,678
재정비촉진 사 업 계 정	238,730	244,107	235,975	8,131	1,028	0	7,10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9126 ('26. 5.26)

## (9)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관련 검토

### 1) 개요

- 서울시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는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별도로 제출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음

## 2)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 관련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산결과, 예산현액 1조 1,449억 1,800만원의 7.5%, 861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2,421억 2,200만원의 5.7%, 707억 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08〉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 산 액	예 산 후 증 감 액	예 산 현 액 ( 가 )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sup>주1)</sup>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금 액 ( 나 )	비 율 (나)/(가)
계	2,241,506	145,533	2,387,040	1,937,409	292,748	-	156,882	6.6
수도사업	1,116,189	28,728	1,144,918	1,008,598	50,139	-	86,180	7.5
공 기 업 하수도사업	1,125,317	116,805	1,242,122	928,810	242,608	-	70,702	5.7

주1)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됨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과는 달리 사업별 불용사유를 ①보조금 정산잔액, ②예산 절감액,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낙찰차액, ⑤지출잔액, ⑥예비비로 유형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별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미 우리 위원회는 다른 기준처럼 사업별 불용사유가 유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 공기업담당관에서 '25년 11월, 행정안전부에 결산기준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개선의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불용사유별로 불용액을 관리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선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위원회는 현행 기준의 제한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불용액 발생사유를 다른 기준에 준하여 제출받은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5사업연도에 발생한 불용액 861억 8,000만원중 지출잔액이 전체의 60.2%, 518억 7,900만원 발생되었고, **낙찰차액**은 22.1%, 190억 7,9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09〉 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180 (100.0)	192 (0.2)	1,244 (1.4)	4,322 (5.0)	19,079 (22.1)	51,879 (60.2)	9,461 (11.0)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708억 4,300만원이며 이 중 78.4%, 556억 500만원이 15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10〉 사업비<sup>주1)</sup> 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반 환 금 등	113,072	93,420	-	19,652	17.3
정수센터 시설 정비	63,506	44,960	6,483	12,063	18.9
녹물 걱정 없는 클린 닥터 서비스	6,054	3,133	-	2,920	48.2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29,025	25,976	525	2,523	8.6
아리수 생산재료비 (원수구입비)	55,342	52,907	-	2,434	4.3
아리수 생산재료비 (슬러지케익처리비)	7,300	4,885	-	2,414	33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4,400	438	2,147	1,814	41.2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10,002	8,189	-	1,812	18.1
수도계량기 교체	23,095	21,490	21	1,584	6.8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75,593	62,740	11,346	1,506	1.9
노후 밸브 정비	31,100	29,598	-	1,501	4.8
배수지 내부 방식	12,290	10,301	544	1,444	11.7
장기사용 배급수관 (350mm 이하) 정비	77,276	75,892	-	1,384	1.7
아리수 생산재료비 (약품비)	12,432	11,063	-	1,369	11.0
배수지·가압장 노후 기전 시설 개량	10,752	9,571	-	1,180	10.9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96 ('26. 4. 6)

○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4억원중 9.9%, 4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48.7%, 21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41.2%, 18억 1,400만원이 불용된 바,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등 외부 연계 사업의 추진일정이 순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규모 이전사업의 경우 외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과 집행 시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연계사업 진행상황 및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적정 규모의 자원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1〉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사업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지잔	출액	낙차	찰액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4,400	438	2,147	1,814		1,511		303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4396 ('26. 4. 6)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이 해당 회계로 재순환되는 구조로 인하여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향후에는 과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5사업연도에 707억 200만원이 불용된 바, 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291억 9,200만원)과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302억 3,300만원)은 전체 불용액의 84.0%, 594억 2,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지출계획이 소요예산보다 과다 편성된 결과일 수 있어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을 원인으로 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 산 잔 액	예 절 감 산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공 기 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702	-	35	10,593	30,233	29,192	647
	(100.0)	-	(0.1)	(15.0)	(42.8)	(41.3)	(0.9)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

- 아울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95.5%, 674억 9,9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사업비 불용액의 61.9%, 417억 6,200만원으로 검토됨

〈표 3-113〉 사업비<sup>주1)</sup>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09,073	195,304	-	13,768	6.59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8,153	27,698	1,916	8,538	22.4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6,290	-	-	6,290	10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68,502	63,934	-	4,567	6.7
중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25,139	21,999	710	2,429	9.7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9,652	7,282	-	2,370	24.6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170	32,076	84,724	1,368	1.2
차집관로 성능개선	12,923	7,711	3,856	1,356	10.5
탄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8,286	7,209	-	1,076	13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의 경우, 예산현액(62억 9,000만원) 전액 불용된 것임

- 대치역사거리 일대의 반복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및 유입·방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나, 재건축 추진 및 지역맞춤형 통합 대책 검토에 따라 기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소멸되어 과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14〉 대치역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전 이 년 월 도 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 용 률
대치역사거리일대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 개선	3,200	6,290	-	6,290	100%

※ 자료근거 :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5698 ('26. 4. 8)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24회계연도로부터 32억원이 이월되었고, '25년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건축 단지와 연계한 사업 방향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 가능 규모에 대한 재검토 및 감액조정 없이 예산규모를 유지하여 결국 연도말 전액 불용 처리된 바,
- 향후에는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감추경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 법령과 규칙에 따른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것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25회계연도 자산은 158조 7,637억 300만원, 부채는 20조 9,137억 1,2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7조 8,499억 9,1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비용**은 43조 8,500억 4,900만원이나, **수익**이 44조 2,856억 8,000만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4,356억 3,100만원 흑자임

〈표 3-115〉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25	158,763,703	20,913,712	137,849,991	44,285,680	43,850,049	435,631
2024	155,210,905	18,628,158	136,582,747	38,692,753	39,516,050	△823,297
증감액	3,552,798	2,285,554	1,267,244	5,592,927	4,333,999	1,258,928
(증감률)	2.3	12.3	0.9	14.5	11.0	△152.9

##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5회계연도말 **자산**은 158조 7,637억 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자산(155조 2,109억 500만원)보다 2.3%, 3조 5,527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 '25회계연도의 **부채**는 20조 9,137억 1,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부채(18조 6,281억 5,800만원)보다 12.3%, 2조 2,855억 5,400만원 증가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37조 8,499억 9,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순자산(136조 5,827억 4,700만원)보다 0.9%, 1조 2,672억 4,400만원 증가하였음

### 1)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서울특별시의 2025회계연도말 자산은 158조 7,637억 300만원으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87조 9,914억 4,700만원(55.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34조 5,810억 3,200만원(21.7%),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18조 5,629억 500만원(11.6%), 현금 및 현금성자산인 **유동자산** 7조 6,108억 7,400만원(4.7%) 등으로 자산 현황을 제출함

〈표 3-116〉 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158,763,703	100.0	155,210,905	100.0	3,552,798	2.3
유동자산 <sup>주1)</sup>	7,610,874	4.7	6,249,437	4.0	1,361,437	21.8
투자자산 <sup>주2)</sup>	18,562,905	11.6	18,578,875	11.9	△15,970	△0.1
일반유형자산 <sup>주3)</sup>	8,761,918	5.5	8,971,168	5.7	△209,250	△2.3
주민편의시설 <sup>주4)</sup>	34,581,032	21.7	32,596,637	21.0	1,984,395	6.1
사회기반시설 <sup>주5)</sup>	87,991,447	55.4	87,574,156	56.4	417,291	0.5
기타비유동자산 <sup>주6)</sup>	1,255,527	0.8	1,240,632	0.7	14,895	1.2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임목 등을 말한다.

주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주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주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3조 5,527억 9,800만원 증가한 바, **일반유형자산**(△2,092억 5,000만원 감소)과 **투자자산**(△159억 7,000만원 감소)은 감소하였으나, **주민편의시설**(1조 9,843억 9,500만원 증가), **유동자산**(1조 3,614억 3,700만원 증가), **사회기반시설**(4,172억 9,100만원 증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유동자산**의 경우, 이자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상품**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9.5%, △5,679억 4,500만원 감소하고, **단기대여금**도 직전회계연도보다 △79.7%, △5,679억 4,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직전회계연도보다 58.3%, 1조 9,597억 4,500만원 증가하여 유동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3,614억 3,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17〉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7,610,873	6,249,436	1,361,437	21.8
현금및현금성자산 <sup>주1)</sup>	5,320,739	3,360,994	1,959,745	58.3
단기금융상품 <sup>주1)</sup>	580,379	1,148,293	△567,914	△49.5
미수세금 <sup>주2)</sup>	949,375	815,647	133,727	16.4
미수세외수입금 <sup>주3)</sup>	309,124	252,096	57,028	22.6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29,009	158,592	△29,583	△18.7
단기대여금 <sup>주4)</sup>	44,597	220,044	△175,447	△79.7
재고자산 <sup>주5)</sup>	31,484	31,072	412	1.3
기타유동자산	246,164	262,696	△16,532	△6.3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과 기금이 연도말까지 예치한 자금

주2)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으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주3)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으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주4)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주5)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 **투자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Delta 0.1\%$ ,  $\Delta 159$ 억 7,000만원 감소한 바,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주식투자 등에 따른 **장기투자증권**은 장부가액이 낮아져  $\Delta 1,908$ 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나, 민간 및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에 1년 이상 용자하는 **장기대여금**이 1,875억 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18〉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8,562,904	18,578,875	$\Delta 15,971$	$\Delta 0.1$
장 기 금 용 상 품		10,000	$\Delta 10,000$	$\Delta 100.0$
장 기 대 여 금 <sup>주1)</sup>	1,295,822	1,108,310	187,512	16.9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Delta 8,321$	$\Delta 6,509$	$\Delta 1,812$	27.8
장 기 투 자 증 권 <sup>주2)</sup>	17,257,144	17,447,984	$\Delta 190,840$	$\Delta 1.1$
기 타 투 자 자 산	18,258	19,089	$\Delta 83$	$\Delta 4.4$

주1)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

주2) 민간이나 지방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2.3%, △2,092억 5,000만원 감소된 바,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분할합병 등 자산유형변경과 토지 매각 등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695억 4,600만원 감소하였고, **건물**은 취득과 매각 등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303억 5,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집기비품**의 경우, 소방구조장비 등 건설중인 자산이 완공되어 일반유형자산으로 분개처리 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56억 9,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19〉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761,918	8,971,167	△209,250	△2.3
토 지	7,307,633	7,477,179	△169,546	△2.3
입 목	3,011	3,011	0	0
건 물 <sup>주1)</sup>	902,237	932,596	△30,359	△3.3
구 축 물 <sup>주1)</sup>	138,110	11,168	2,641	23.6
기 계 장 치 <sup>주1)</sup>	2,899	3,612	△714	△19.8
차 량 운 반 구 <sup>주1)</sup>	100,196	104,335	△4,139	△4.0
집 기 비 품 <sup>주1)</sup>	224,045	218,348	5,697	2.6
임 차 개 량 자 산 <sup>주1)</sup>	-	-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8,086	220,916	△12,830	△5.8

주1)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한 금액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9,843억 9,400만원 증가된 바,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주차장,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은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하고, 공원, 기타주민편의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은 토지가액 상승 등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0〉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4,581,032	32,596,637	1,984,394	6.1
도 서 관 <sup>주1)</sup>	100,029	100,314	△284	△0.3
주 차 장 <sup>주1)</sup>	1,457,578	1,481,011	△23,433	△1.6)
공 원 <sup>주1)</sup>	13,705,354	12,495,241	1,210,112	9.7
박 물 관 및 미 술 관 <sup>주1)</sup>	644,634	579,379	65,254	11.3
동 물 원 <sup>주1)</sup>	1,164천원	1,517천원	△352천원	△23.2
수 목 원 및 휴 양 림 <sup>주1)</sup>	355,819	353,667	2,151	0.6
문 화 및 관 광 시 설 <sup>주1)</sup>	4,359,290	4,237,222	122,068	2.9
체 육 시 설 <sup>주1)</sup>	1,870,235	1,880,025	△9,789	△0.5
사 회 복 지 시 설 <sup>주1)</sup>	1,552,957	1,530,822	22,134	1.4
의 료 시 설 <sup>주1)</sup>	638,413	651,684	△13,271	△2.0
교 육 시 설 <sup>주1)</sup>	994,357	1,003,129	△8,771	△0.9
기 타 주 민 편 의 시 설 <sup>주1)</sup>	6,523,118	6,324,516	198,601	3.1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2,379,241	1,959,619	419,622	21.4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0.5%, 4,172억 9,100만원 증가한 바,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따라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재활용시설 등이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하고,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 등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과 도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1〉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7,991,447	87,574,155	417,291	0.5
도 로 <sup>주1)</sup>	61,470,515	61,321,901	148,614	0.2
도 시 철 도 <sup>주1)</sup>	4,623,496	4,597,483	26,013	0.6
상 수 도 시 설 <sup>주2)</sup>	6,552,834	6,581,574	△28,740	△0.4
수 질 정 화 시 설 <sup>주2)</sup>	6,381,242	6,389,690	△8,447	△0.1
하 천 부 속 시 설	3,661,628	3,653,811	7,817	0.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sup>주2)</sup>	100,984	101,181	△197	△0.2
재 활 용 시 설 <sup>주2)</sup>	129,529	134,760	△5,231	△3.9
농 수 산 기 반 시 설 <sup>주2)</sup>	300,073	300,665	△592	△0.2
기 타 사 회 기 반 시 설 <sup>주2)</sup>	21,352	22,119	△766	△3.5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749,789	4,470,967	278,821	6.2

주1) 사용수익권 차감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기타비유동자산**은 청사·관사의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콘도 회원권 등의 용익물권,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등으로서 직전회계연도보다 1.2%, 148억 9,400만원 증가된 바,
- 기타보증금중 장기안심주택 임대보증금(56건, 664억원 증가)이 증가하여 ①보증금이 직전회계연도보다 447억 3,500만원 증가하고, ②무형자산의 경우, 신월여의지하도로 지상권 등과 콘도회원권을 포함한 용익물권이 지난해회계연도보다 382억 2,900만원 증가함에 따라 무형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58억 8,5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③기타비유동자산은 하수도회전기금에 대한 내부거래 등의 사유로 직전회계연도보다 △457억 2,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2〉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255,526	1,240,631	14,894	1.2
보 증 금	577,786	533,051	44,735	8.4
임 차 보 증 금	60,807	61,315	△508	△0.8
전 신 전 화 가 입 권	5,324천원	7,366천원	△2,042천원	△22.7
기 타 보 증 금	516,974	471,728	45,245	9.6
무 형 자 산	194,667	178,781	15,885	8.9
지 적 재 산 권	2,917	5,000	△2,083	△41.7
전 산 소 프 트 웨 어	34,138	55,097	△20,959	△38.0
용 익 물 권	152,858	114,628	38,229	33.4
건 설 중 인 무 형 자 산	4,753	4,054	698	17.2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83,072	528,799	△45,726	△8.6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85,750	91,820	△6,069	△6.6
유 산 자 산	64,998	64,103	895	1.4
생 물 자 산	1,295	1,156	138	12.0
장 기 일 반 미 수 금 <sup>주1)</sup>	330,837	286,425	44,411	15.5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90	85,292	△85,102	△99.8

주1) 대손충당금 차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2) 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됨

○ 2025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총부채**는 20조 9,137억 1,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8조 6,281억 5,800만원)보다 12.3%, 2조 2,855억 5,4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123〉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부	채 총 계	2,0913,712	18,628,158	2,285,554	12.3
	유 동 부 채 <sup>주1)</sup>	4,955,721	3,845,839	1,109,882	28.9
	장 기 차 입 부 채 <sup>주2)</sup>	9,734,042	9,375,454	358,588	3.8
	기 타 비 유 동 부 채 <sup>주3)</sup>	6,223,948	5,406,863	817,085	15.1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권,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증권 등인 **유동부채**는 총부채의 23.7%, 4조 9,557억 2,100만원이며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인 **장기차입부채**는 총부채의 46.5%, 9조

7,340억 4,200만원 그리고 유동부채에는 포함되나 차입금 성격이 아닌 **기타비유동부채**는 총부채의 29.8%, 6조 2,239억 4,8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유동부채의 경우, 자치구 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법정교부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28.9%, 1조 1,098억 8,100만원 증가한 바,

〈표 3-124〉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4,955,721	3,845,839	1,109,881	28.9
단 기 차 입 금	0	0	0	0
유 동 성 장 기 차 입 부 채	1,835,429	1,962,085	△126,655	△6.5
유 동 성 장 기 차 입 금	0	0	0	0
유 동 성 지 방 채 증 권	1,756,817	1,837,339	△80,522	△4.4
유 동 성 장 기 정 부 차 입 금	0	0	0	0
기 타 유 동 부 채	3,120,291	1,883,754	1,236,537	65.6
일 반 미 지 급 금	2,662,805	1,453,992	1,208,813	83.1
선 수 금	198,266	174,201	24,065	13.8
선 수 수 익	40,568	23,304	17,263	74.1
단 기 예 수 보 관 금	102,658	118,746	△16,087	△13.5
일 반 미 지 급 비 용	113,993	111,509	2,483	2.2
유 동 성 장 기 미 지 급 금	2,000	2,000	0	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장기차입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3,585억 8,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①**장기차입금**중 1년 이내 상황이 도래하는 유동성대체액을 차감하면 직전회계연도보다 △586억 1,200만원 감소한 것으로써 만기도래액 등을 상환하고, 결산일 기준 1년 이내 상환예정액 등이 감소하여 장기차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②**지방채증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상황이 도래하는 유동성대체액을 차감하면 직전회계연도보다 4,171억 9,900만원 증가한 바, 직전회계연도보다 유동성대체액이 감소하였고, 동북선 등 공모채 신규발행 등의 사유로 지방채증권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25〉 장기차입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③+⑥		9,734,042	9,375,454	358,587	3.8
장기차입금	소계 ①	1,108,300	1,213,046	△104,745	△8.6
	금융기관차입금	0	0	0	0
	주택도시기금 <sup>주1)</sup>	558,981	615,552	△56,570	△9.2
	지역상생발전기금	34,518	82,693	△48,175	△58.3
	공공자금관리기금	514,800	514,800	0	0.0
	장기예수금	0	0	0	0
	유동성대체액 ②	78,612	124,745	△46,133	△37.0
	※유동성대체후 잔액 ③=①-②	1,029,688	1,088,300	△58,612	△5.4
지방채증권	소계 ④	10,461,171	10,124,493	336,677	3.3
	도시철도공채	5,070,871	5,275,193	△204,322	△3.9
	일반공모채(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3,910,800	3,641,300	269,500	7.4
	일반공모채(도시철도건설)	1,479,500	1,208,000	271,500	22.5
	유동성대체액 ⑤	1,756,817	1,837,339	△80,522	△4.4
	※유동성대체후 잔액 ⑥=④-⑤	8,704,354	8,287,154	417,199	5.0

주1) 국토부 공공임대주택매입 사업 관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8,170억 8,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①퇴직급여충당부채가 직전회계연도보다 81억 8,400만원 증가하고, ②기타비유동부채 중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서울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수납액 증가 등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7,786억 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26〉 기타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6,223,948	5,406,863	817,084	15.1
퇴직급여충당부채	97,654,724	89,470	8,184	9.1
기타비유동부채	6,126,293	5,317,393	808,900	15.2
장기예수보증금	85,750	91,820	△6,069	△6.6
장기미지급금	5,062	7,874	△2,812	△35.7
임대보증금	5,636,577	4,857,927	778,650	16.0
장기미지급이자	183,854	169,880	13,974	8.2
우발부채	215,048	189,889	25,158	13.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2025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부채가 12.3%, 2조 2,855억 5,400만원 증가하여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1.2%p 증가한 바, 자산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보다 2.3%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2.3%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어 공공 자산에 대한 비약적인 신장세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채 증가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27〉 재정상태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자 산 ( a )	158,763,702	155,210,905	152,170,872
부 채 ( b )	20,913,712	18,628,158	19,360,205
순 자 산 (a-b)	137,849,990	136,582,747	132,810,666
자 산 대 부 채 비 율 (b/a)	13.2%	12.0%	12.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최근3년간 자산 현황, 최근3년간 부채 현황)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다만,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직전회계연도보다 △8.9%p 낮아져 1년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에 대해 상환 능력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유동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유동비율의 상대적인 감소가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28〉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유 동 자 산 ( a )	7,610,874	6,249,437	10,505,677
유 동 부 채 ( b )	4,955,721	3,845,840	4,879,528
유 동 비 율 (Current Ratio) (a/b)	153.6	162.5	215.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최근3년간 자산 현황, 최근3년간 부채 현황)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3)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36조 5,827억 4,600만원)보다 0.9%, 1조 2,672억 4,300만원 증가한 137조 8,499억 9,000만원으로 제출됨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분류되며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7.1%, 120조 739억 9,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7조 9,733억 2,700만원)보다 1.8%, 2조 1,006억 7,100만원 증가하였으나,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4.0%, 5조 5,490억 7,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조 6,535억 5,300만원)보다 △1.8%, △1,044억 2,000만원 감소하였고,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도 직전회계연도(12조 9,558억 6,600만원)보다 △5.6%, △7,289억 4,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9〉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순 자 산 총 계	137,849,990	(100.0)	136,582,746	(100.0)	1,267,243	0.9
고정순자산	120,073,998	(87.1)	117,973,327	(86.4)	2,100,671	1.8
특정순자산	5,549,072	(4.0)	5,653,553	(4.1)	△104,480	△1.8
일반순자산	12,226,919	(8.9)	12,955,866	(9.5)	△728,946	△5.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순자산의 세부내역)

##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항목의 분류 방식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기능별 재정운영표로 작성됨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43조 8,500억 4,900만원)에서 **총수익**(44조 2,856억 8,000만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56억 3,000만원의 재정운영잉여가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30〉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륜
재정운영결과	①-②	435,630	△823,297	1,258,927	△152.9
수	익 ①	44,285,680	38,692,753	5,592,927	14.5
비	용 ②	43,850,049	39,516,050	4,333,999	1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2.성질별 재정운영표)

### 1) 성질별 재정운영표

-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른 2025회계연도 **총수익**은 44조 2,856억 8,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8조 6,927억 5,300만원) 대비 14.5%, 5조 5,929억 2,700만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43조 8,500억 4,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9조 5,160억 5,000만원)대비 11.0%, 4조 3,339억 9,9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131〉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재정운영결과(①-②)	435,630		△823,297		1,258,927	△152.9
수익 ①	44,285,680	100.0	38,692,753	100.0	5,592,927	14.5
자체조달수익 <sup>주1)</sup>	32,166,793	72.6	29,029,301	75.1	3,137,491	10.8
정부간이전수익 <sup>주2)</sup>	11,654,528	26.3	9,168,060	23.7	2,486,467	27.1
기타수익 <sup>주3)</sup>	464,358	1.1	495,391	1.2	△31,032	△6.3
비용 ②	43,850,049	100.0	39,516,050	100.0	4,333,999	11.0
인건비 <sup>주4)</sup>	2,402,167	5.5	2,310,445	5.9	91,721	4.0
운영비 <sup>주5)</sup>	8,624,673	19.7	8,274,405	20.9	350,268	4.2
정부간이전비용 <sup>주6)</sup>	18,087,361	41.3	16,662,312	42.2	1,425,048	8.6
민간등이전비용 <sup>주7)</sup>	12,381,459	28.3	9,996,504	25.3	2,384,955	23.9
기타비용 <sup>주8)</sup>	2,354,386	5.4	2,272,381	5.8	82,004	3.6

주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대세외수익 등

주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주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주4)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주5)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주6)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주7)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주8)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재정운영표(성질별)

- **비용**의 경우, **정부간이전비용**은 전체 비용의 41.3%(18조 873억 6,1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8.3%(12조 3,814억 5,9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19.7%(8조 6,246억 7,300만원), **인건비**가 5.5%(2조 4,021억 6,700만원), **기타비용**이 5.4%(2조 3,543억 8,600만원)로 제출됨
- 비용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간등이전비용**의 경우, 출연금과 전출금은 감소하였으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직전회계연도보다 23.9%, 2조 3,849억 5,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운영비**의 경우,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위탁대행사업비 864억 7,300만원 증가),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징수교부금 884억 200만원 증가), 지방채 등 이자비용(이자비용 354억 9,700만원 증가) 등이 증가하여 3,502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급여인상(609억 8,500만원), 기여금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198억 5,3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기타 직인건비 증가(41억 8,400만원) 등으로 917억 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 **정부간이전비용**의 경우에도,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증가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4,250억 4,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32A〉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비용총계	43,850,049	39,516,049	4,333,999	11.0
인건비	2,402,167	2,310,445	91,721	4.0
1. 급여	1,605,166	1,535,280	69,885	4.6
2. 복리후생비	513,579	493,725	19,853	4.0
3. 기타인건비	258,159	253,974	4,184	1.6
4. 퇴직급여	25,262	27,464	△2,202	△8.0
운영비	8,624,673	8,274,405	350,268	4.2
1. 도서구입 및 인쇄비	15,162	14,031	1,131	8.1
2. 소모품비	108,407	113,164	△,756	△4.2
3. 홍보 및 광고비	23,984	22,486	1,497	6.7
4. 지급수수료	442,868	419,360	23,507	5.6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70,407	54,133	16,273	30.1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94,595	359,357	35,237	9.8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541,946	1,561,319	△19,372	△1.2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113,306	101,113	12,193	12.1
9. 교육훈련비	28,118	31,016	△2,898	△9.3
10. 제세공과금	77,278	77,810	△532	△.7
11. 보험료및공제료	20,947	18,390	2,557	13.9
12. 임차료	74,803	74,819	△6	0.02
13. 출장비	12,741	13,098	△357	△2.7
14. 연구개발비	23,908	24,714	△806	△3.3
15. 이자비용	233,944	198,447	35,497	17.9
16. 업무추진비	11,961	11,512	448	3.9
17. 행사비	111,837	95,417	16,419	17.2
18. 의회비	11,615	11,342	273	2.4
19. 위탁대행사업비	4,206,555	4,121,881	84,673	2.1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3,178	3,144	33	1.1
21. 징수교부금	709,073	620,670	88,402	14.2
22. 연료비	155,525	143,004	12,521	8.8
23. 원·정수구입비	52,927	53,082	△154	△0.3
24. 공립대학운영비	64,231	62,280	1,950	3.1
25. 기타운영비	115,348	68,804	46,544	67.6

〈표 3-132B〉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륜
정부간이전비용	18,087,361	16,662,312	1,425,048	8.6
1. 시도비보조금	6,361,358	6,328,463	32,894	0.5
2. 자치구조정교부금	6,788,076	6,051,211	736,864	12.2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219,926	40,912	179,013	437.6
4. 국가에대한부담금	4,476	267	4,209	1574.4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423,127	3,963,936	459,191	11.6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290,396	277,521	12,875	4.6
민간 등 이전비용	12,381,459	9,996,504	2,384,955	23.9
1. 민간보조금	10,599,372	7,908,950	2,690,421	34.0
2. 민간장학금	246	219	26	12.3
3. 이차보전금	162,731	166,918	△4,186	△2.5
4. 출연금	853,641	906,492	△52,850	△5.8
5. 전출금비용	512,431	822,934	△310,502	△37.7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74,572	79,100	△4,527	△5.7
7 기타이전비용	178,463	111,889	66,574	59.5
기타비용	2,354,386	2,272,381	82,004	3.6
1. 자산처분손실	1,438	3,104	△1,665	△53.7
2. 자산손상차손	844,509	794,314	50,195	6.3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289,542	194,339	95,202	49.0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303,824	429,561	△125,737	△29.3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44,016	649,230	△5,214	△0.8
6. 무형자산상각비	37,836	32,390	5,446	16.8
7. 대손상각비	221,156	163,952	57,204	34.9
8. 기타비용	12,060	5,487	6,573	119.8

○ **수익**의 경우, 지방세, 경상세외수익 등인 **자체조달수익**은 수익총계의 72.6%, 32조 1,667억 9,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은 26.3%, 11조 6,545억 2,800만원, 교육청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은 1.0%, 4,643억 5,800만원으로 제출됨

- 수익의 주요 증감사유는 취득세(1조 7,792억원), 지방소득세(1조 1,419억원), 재산세(2,451억원), 지방교육세(1,967억원) 증가 등으로 **자체조달수익**이 3조 1,374억 9,100만원 증가하고, 국고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이 2조 4,607억 9,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3〉 재정운영표(성질별) 수익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륜
수익총계	44,285,680	38,692,753	5,592,927	14.5
자체조달수익	32,166,793	29,029,301	3,137,491	10.8
1. 지방세수익	28,476,405	25,048,280	3,428,124	13.7
2. 경상세외수익	2,793,678	2,795,019	△1,340	0.05
3. 임시세외수익	896,709	1,186,001	△289,292	△24.4
정부간이전수익	11,654,528	9,168,060	2,486,467	27.1
1. 지방교부세수익	111,279	152,072	△40,793	△26.8
2. 국고보조금수익	11,133,367	8,672,573	2,460,794	28.4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368,410	301,011	67,399	22.4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41,470	42,402	△932	△2.2
기타수익	464,358	495,391	△31,032	△6.3
1. 전입금수익	438,125	446,677	△8,551	△1.9
2. 기부금수익	6,397	5,587	810	14.5
3. 대손충당금환입	514	9,819	△9,304	△94.8
4. 자산손상차손환입	1,361	26,222	△24,861	△94.8
5. 기타수익	17,958	7,083	10,875	153.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제4장 필수보충정보, 2.성질별 재정운영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2) 기능별 재정운영표

- 원가개념이 반영된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관련 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바,
- **재정운영결과**는 일반수익에서 재정운영순원가 즉,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에는 △8,232억 9,700만원 적자였으나,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4,356억 3,100만원 흑자로 제출됨

〈표 3-134〉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륜
재 정 운 영 결 과	(A-B)	435,631	△823,297	1,258,928	152.9
일 반 수 익	(A)	29,655,320	26,342,376	3,312,944	12.6
재 정 운 영 순 원 가 ( ① + ② + ③ - ④ )	(B)	29,219,689	27,165,673	2,054,016	7.6
사 업 순 원 가	①	26,083,396	24,279,009	1,804,387	7.4
관 리 운 영 비	②	2,482,767	2,467,406	15,361	0.6
비 배 분 비 용	③	1,647,433	1,593,047	54,386	3.4
비 배 분 수 익	④	993,906	1,173,788	△179,882	△15.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재정운영표(기능별)

- **일반수익**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6조 3,423억 7,600만원)보다 3조 3,129억 4,400만원 증가한 29조 6,553억 2,000만원으로 제출됨
- 비용에 해당하는 **재정운영순원가**는 직전회계연도(27조 1,656억 7,300만원)보다 2조 540억 1,600만원 증가한 29조 2,196억 8,9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순원가**는 직전회계연도(24조 2,790억 900만원)보다 1조 8,043억 8,700만원 증가한 26조 833억 9,600만원이며
  - 인건비, 경비,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을 합산한 **관리운영비**는 직전회계연도(2조 4,674억 600만원)보다 163억 6,100만원 증가한 2조 4,837억 6,700만원이고,
  - **비배분비용**은 직전회계연도(1조 5,930억 4,700만원)보다 543억 8,600만원 증가한 1조 6,474억 3,300만원이고,
  - **비배분수익**은 9,939억 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1,737억 8,800만원)보다 △1,798억 8,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를 검토하면, 2025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 규모는 직전회계연도보다 63.2%, 2조 1,791억 5,500만원으로 확인되며 순자산의 감소는 △303억 5,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제출되어 순자산의 순증액은 2조 1,488억 400만원으로 검토됨
- 2025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A) 136조 5,827억 4,600만원과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에 따른 재정운영여분 4,356억 3,000만원(B)를 합산하고, 순자산의 증가분(C)과 순자산의 감소분(D)에 대한 정산액을 합한 **137조 8,499억 9,000만원**으로 지난 '24회계연도(136조 5,827억 4,600만원)보다 0.9%, 1조 2,672억 4,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35〉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순자산 변동 사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기 초 순 자 산 (A)	136,582,746		134,425,626		
재 정 운 영 결 과 (B)	(435,630)		823,296		
순 자 산 의 증 가 (C)	1,266,172	100.0	3,445,328	100.0	
재 산 이 관 · 관리전환으로 ① 생긴 자산증가	236,598	18.7	224,695	6.5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긴 자산 증가 ②	602,031	47.5	918,415	26.7	도시개발 관련 및 민간투자시설 귀속분 감소
기 타 순 자 산 의 ③ 증 가	427,542	33.8	2,302,217	66.8	토지 재평가, 분할 및 합병에 의한 감소 등
순 자 산 의 감 소 (D)	434,559	100.0	464,911	100.0	
재 산 이 관 · 관리전환으로 ④ 생긴 자산증가	228,801	52.7	224,695	48.3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긴 자산 감소 ⑤	5,864	1.3	21,516	4.6	주택재개발 사업 등 시유재산 무상양여 감소
기 타 순 자 산 의 ⑥ 감 소	199,893	46.0	218,699	47.0	토지 분할감소 및 합병말소 등
기 말 순 자 산 ( A + B + C - D )	137,849,990		136,582,746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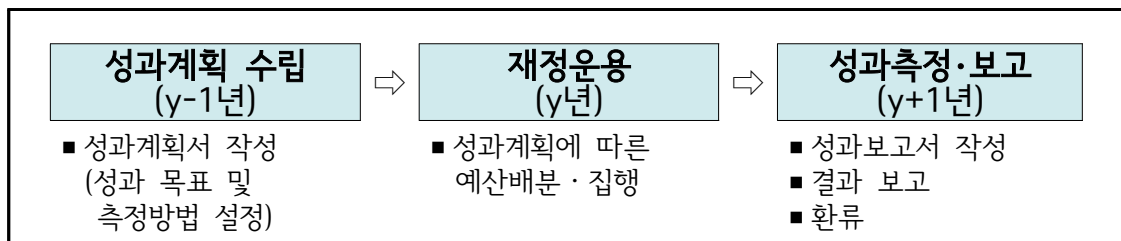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제2장 재무제표, 순자산변동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51 ('26. 4.20)

## 6.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 (1).성과보고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규칙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136〉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6. 1), p.61

- 서울시는 '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수, 239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47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음

〈표 3-137〉 회계연도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 개)

회계연도	성 과 계 획 서			성 과 보 고 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2025	39	239	447	39	246	454
2024	39	228	436	39	241	455
2023	39	225	430	39	227	433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별 결산서

○ '25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39개 실·본부·국에 대한 39개 전략목표수와 246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54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한 바,

- 서울시는 '25년도중 기준(6실 5본부 19국 13관·단 171과·담당관)의 조직에서 6실 5본부 21국 12관·단 172과·담당관으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예산의 이체가 총 155건, 4,502억 9,300만원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6년 2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변경된 조직 및 '25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당초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와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과 일치시키도록 개선 요구한 사례가 있음

- '25회계연도의 경우, 회계연도중 2회의 추경으로 '25년도 본예산(48조 1,144억 5,600만원)과 최종예산(52조 1,426억 5,100만원)이 8.3%, 4조 281억 9,500만원 차이가 있고, '25년 7월에는 조직개편이 있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성과계획서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 서울시는 각 실·국에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 '25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 '26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이 되어서야 각 부서의 판단하에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관련 법령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타 관련 법령에도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사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성과계획서의 수정시기·방법 및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의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요청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초 예산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가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사후적으로 임의 수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54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중 ①71개 지표(15.6%)는 **초과달성**, ②294개 지표(64.7%)는 **달성**, ③89개 지표(19.6%)는 **미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8〉 '25회계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

실·본부·국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9	246	454 (100.0)	71 (15.6)	294 (64.7)	89 (19.6)
대 변 인	1	1	2	0	1	1
홍 보 기 획 관	1	5	11	1	8	2
여 성 가 족 실	1	8	14	6	7	1
글로벌도시정책관	1	4	8	1	7	0
비 상 기 획 관	1	1	2	0	2	0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	3	5	1	4	0
기 획 조 정 실	1	13	20	2	14	4
소 방 재 난 본 부	1	10	24	1	14	9
경 제 실	1	11	22	3	16	3
복 지 실	1	11	19	2	14	3
교 통 실	1	10	18	1	9	8
기 후 환 경 본 부	1	10	15	3	6	6
문 화 본 부	1	11	13	3	8	2
관 광 체 육 국	1	5	9	3	5	1
평 생 교 육 국	1	6	9	0	7	2
시 민 건 강 국	1	12	29	5	18	6
민 생 노 동 국	1	8	13	0	11	2
디 지 털 도 시 국	1	8	15	5	10	0
행 정 국	1	8	12	3	7	2
재 무 국	1	6	12	2	9	1
민 생 사 범 경 찰 국	1	2	4	0	2	2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	4	9	2	3	4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1	4	0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4	7	2	3	2
재 난 안 전 실	1	10	17	1	13	3
주 택 실	1	12	21	4	14	3
도 시 공 간 본 부	1	9	9	3	4	2
균 형 발 전 본 부	1	10	13	0	10	3
정 원 도 시 국	1	13	19	3	12	4
물 순 환 안 전 국	1	4	5	1	4	0
인 재 개 발 원	1	1	3	0	3	0
도 시기반시설본부	1	5	9	0	5	4
미 래 한 강 본 부	1	2	5	3	2	0
서울역사박물관	1	2	4	0	4	0
시 립 미 술 관	1	1	6	3	2	1
의 회 사 무 처	1	3	27	6	16	5
감 사 위 원 회	1	5	9	0	8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	4	0	4	0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0	4	2

- 성과지표별로 검토하면, 여성가족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측정한 것으로써 '25회계연도 목표 지원 건수(16,000건) 대비 259.4%, 41,497건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 성과지표 관련

(단위 : 건,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5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 수	목표	16,000	14,000
		실적	41,497	30,316
		달성률	259.4	216.5

-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성과목표 14,000건 대비 216.5%, 30,316건을 달성하였으나, '25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가 있음에도 목표치를 하회하여 설정한 사례일 수 있어 향후 적정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지표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건수 이외에 지표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여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성과지표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성과지표는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로 사료되어, 정책사업 목표인 '일상생활의 전영역에서 차별없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단순 산출지표는 측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기준은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되, 산출지

표로 설정하더라도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자 지원 건수 이외에 지표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여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성과목표달성의 취지로 사료됨

○ 여성가족실의 **안심물품 지원자 수**는 시민 불안감 해소를 구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안심물품 지원자 수를 성과지표 측정수단으로 하여 '25회계연도 목표 지원 인원 113,000명 대비 50.7%, 57,267명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0〉 안심물품 지원자 수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5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안심물품 지원자 수(명)	안심물품 지원자 수	목표	113,000	57,000
		실적	57,267	57,155
		달성률	50.7	100.3

-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성과목표 57,000명 대비 100.3%, 57,155명을 달성하였으며, '25회계연도도 57,267명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목표치를 113,000명으로 상향 설정함에 따라 달성률이 50.7%로 제출됨
- 관련 기준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목표치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성과지표는 실제 사업 수행실적 및 집행 가능 수준에 비해 목표치가 상향 설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확대 계획에 맞추어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과거 실적 추이, 실제 사업 집행 가능성,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획조정실의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은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시 재결 건수 대비 주부심 지정 건수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25회계연도에 53.0%를 목표로 하여 71.0%를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1〉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성과지표 관련

(단위 :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5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재결 건수 대비 주부심 지정 건수 비율	목표	53.0	56.5
		실적	71.0	59.0
		달성률	134.0	104.0

- 그러나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목표(56.5%) 대비 실적(59%)을 달성(104.0%)하였음에도, '25회계연도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준인 53.0%로 설정한 바,
- 관련 기준은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 동 성과지표는 전년도 목표치보다도 성과지표 수준을 낮춰 자연발생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지표를 설정한 것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료되지 않아 향후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래한강본부의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자 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관리 및 한강문화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업체에서 매일 이용자 수를 집계하여 '25회계연도 목표 지원 건수(226,000명) 대비 244.0%, 552,003건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2〉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자 수(명)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5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자 수(명)	이용객 수 합산	목표	226,000	216,000
		실적	552,003	311,370
		달성률	244.0	144.0

-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성과목표 216,000명 대비 144.0%, 311,370명을 달성하였으나, '25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가 있음에도 목표치를 하향하여 설정한 사례일 수 밖에 없어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사례로 판단됨

- 행정국의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은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정책사업 목표인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구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25회계연도 목표(130,000명) 대비 576.0%, 749,31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3〉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5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명)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참여시민 수	목표	130,000	130,000
		실적	749,317	201,741
		달성률	576.0	155.0

-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도 목표(130,000명) 대비 155.0%, 201,741명이 참여하여 초과 달성된 바 있음에도 '25회계연도 목표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달성률을 576.0%로 확보한 바,
- 동 성과목표치는 '24회계연도에 이미 달성한 성과실적치 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 $\Delta 35.5\%$ ,  $\Delta 71,741$ 명)한 것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로 판단됨

## (2) 성인지결산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성인지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제출한 '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개수는 257개로, 예산안 제출 시(258개) 보다 △1개 감소하였고, 성인지 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4조 2,474억 3,700만원 중 98.1%, 4조 1,68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4〉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57	4,247,437	4,168,800	98.1
일 반 회 계	234	3,990,227	3,913,152	98.0
기타특별회계	20	256,378	254,821	99.3
기 금	3	831	826	99.4

- 성인지 성과목표의 경우, 총 354개 성인지 성과목표 중 243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68.6%를 달성한 것으로 지난 '24회계연도(64.7%)와 '23회계연도(61.9%)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45〉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25~'23)

(단위 : 개, %)

구분	2025	2024	2023
성과목표 수	354	380	388
목표달성지표수	243	246	240
달성률	68.6	64.7	61.9

- 다만, '25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8조 1,144억 5,600만원)대비 최종 예산(52조 1,426억 5,100만원)이 8.3%, 4조 281억 9,500만원 증가하였고, '25년 7월 조직개편을 하여 성인지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법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5년도 제1·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바,
  - 서울시는 지난 '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 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으로 인한 성인지 사업 변동 및 추가경정예산 증감조정으로 성인지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액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성인지예산서 수정방법, 수정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을 건의하거나 조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정합성을 높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기후결산 관련 검토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예산안)**의 경우, 법령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도 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는 기후예산제에 대한 시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예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불비되어 있음
  -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조례를 시행하며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24년 12월에는 관련 조례중 기후결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한 바 있어 조례에 따라 '25회계연도 기후결산서를 제출한 것임
- 2025년도의 경우, 258개 사업을 기후예산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 예산현액(3조 5,114억원)중 84.0%, 2조 9,484억원을 집행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당초 72만 1,895tCO<sub>2</sub>를 목표로 하였으나, 86.1%, 62만 1,365tCO<sub>2</sub>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6〉 기후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 tCO<sub>2</sub>)

구분	사업수	집행액				성과목표				온실가스 감축효과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달성 (A)	미달성 (B)	비대상	달성률 (A/A+B)	감축목표	감축량
총계	258	30,962	35,114	29,484	84.0%	184	64	10	74.2%	721,895	621,365
감축	121	18,329	21,013	18,064	86.0%	83	38	-	68.6%	529,165	435,067
배출	70	6,500	7,346	6,428	87.5%	48	13	9	78.7%	12,633	3,958
혼합	67	6,133	6,755	4,992	73.9%	53	13	1	80.3%	180,096	182,340

- 기후예산 중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의 경우,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

지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운영 등을 통해 재활용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회계연도 예산현액 20억 400만원 중 19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7%에 달하는 것으로 제출됨

- 그러나 성과지표인 '폐비닐 분리배출 증가량'은 목표 대비 실적이 없어 달성률이 0%이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또한 목표(50,297tCO<sub>2</sub>) 대비 감축량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예산집행률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은 '25회계연도 기후결산서에서는 미달성 사유로 선별시설 사고에 따른 가동 중지, 위탁업체 변경, 종량제폐기물 감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달성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집행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147〉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달성 현황

(단위: tCO<sub>2</sub>)

구 분	감축목표 (A)	감축량 (B)	감축달성률(%) (B/A×100)
정량효과	50,297	-	-
정성효과	-	-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의 경우, 예산현액 146억 3,700만원 중 128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실제 집행률은 87.7%로 제출되었고, 성과지표인 녹지 조성면적은 목표(12,152m<sup>2</sup>) 대비 실적(46,825m<sup>2</sup>) 달성률이 385.3%으로 확인됨

-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당초 감축목표(13.1tCO<sub>2</sub>) 대비 감축량이 281.0tCO<sub>2</sub>로 감축 달성률이 2,14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48〉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달성 현황

(단위: tCO<sub>2</sub>)

구 분	감축목표 (A)	감축량 (B)	감축달성률(%) (B/A×100)
정량효과	13.1	281.0	2,142.2
정성효과	-	-	

- 다만, 당초 성과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실제 사업 규모 및 사업효과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목표자체가 과소 계상된 사례일 수 있어 향후 보다 실제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임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20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25년도의 경우, 본예산(48조 1,144억 5,600만원)을 확정된 이후 최종예산(52조 1,426억 5,100만원)까지 8.3%, 4조 281억 9,500만원의 차이가 있고, '25년도 본예산 및 '25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모두 수정의결된바 있어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예산의 수정내역과 연동하여 수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4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25년도 예산안) ( A )	'25년도 본 예산 (의회의결)	'25년도 제1회추경 (의회의결)	'25년도 제2회추경 (의회의결)	'25년도 최종예산 (간주처리 포함) ( B )	증 감 ( B - A )
총계	48,040,683	48,114,456	49,751,942	52,019,259	52,142,651	4,101,968
일반회계	34,383,882	34,418,928	35,601,537	37,683,811	37,775,649	3,391,767
특별회계	13,656,800	13,695,528	14,150,404	14,335,448	14,367,002	710,202

※ 자료근거 :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4.11, p.19

-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당초 본예산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향후 5년간 재정전망 중 2025년도에 목표한 재정규모(48조 407억 원)를 초과한 금액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사료됨

〈표 3-150〉 '25~29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4 (최종)	계획기간				
		2025	2026	2027	2028	2029
총계	473,609	480,407	489,002	495,122	506,517	520,177
일반회계	342,168	343,839	350,918	358,920	368,851	378,919
특별회계	131,440	136,568	138,084	136,202	137,666	141,257

- 다만,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변동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5) 결산서 첨부서류 추가 포함 건의 필요

- ①성과계획서, ②중기지방재정계획, ③성인지 예산서는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④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⑤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기후예산안)은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별책으로 제출하고 있음
- 결산의 경우에도 ①성과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제출하고, ③성인지결산서는 법령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⑤기후결산서의 경우, 조례에 따라 '26년 5월 27일 '25회계연도 기후결산서를 제출하였음
- 다만, ②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과 ④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예산안의 첨부서류 등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결산의 경우에는 법령등에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당초 계획대비 추진결과를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결산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동안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였는지 계수로 표시된 재정운영성과를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법정절차로서 제도적 완결성을 고려한다면 ②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에 대한 결산 보고, ④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결산보고 또한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6. 6.19.)**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696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 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40조 6,464억 3,800만원
- 세출 결산액 37조 3,721억 5,200만원
- 잉여금 3조 2,742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65억 9,600만원 및 사고이월액 1,608억원 7,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44억 4,500만원, 지정재원잉여금 14억 7,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109억 3백만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2조 3,419억 4,500만원
- 세출 결산액 1조 9,374억 900만원
- 잉여금 4,045억 3,6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건설개량이월액) 198억 2,200만원 및 사고이월액 2,729억 2,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7억 8,800만원임.

(3) 기타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12조 5,049억 6,100만원
- 세출 결산액 11조 8,978억 5,400만원
- 잉여금 6,071억 8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474억 4,400만원 및 사고이월액 2,626억 9,8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63억 4,100만원, 지정재원잉여금 7억 3,40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8억 9,000만원임.

나. 기금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조 6,367억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8조 2,171억 5,800만원에 비하여 1조 4,19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조 7,330억 8,8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537억 3,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618억 5,700만원
- 기후대응기금 404억 9,0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45억 6,600만원
- 양성평등가족기금	256억 4,5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4억 4,800만원
- 사회복지기금	575억 2,0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55억 8,100만원
- 재난관리기금	1조 1,194억 2,900만원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1억 800만원
- 지역교류협력기금	16억 4,500만원
- 국제개발협력기금	39억 9,300만원
- 도시재생기금	812억 6,400만원
- 관광진흥기금	73억 3,800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9억 6,500만원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62억 2,100만원
- 고향사랑기금	4억 7,100만원
- 공공시설등설치기금	332억 400만원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억 3,400만원임.

#### 다. 재무제표

(1) 2025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158조 7,637억 3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155조 2,109억 500만원에 비하여 3조 5,52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7조 6,108억 7,400만원
- 투 자 자 산	18조 5,629억 500만원
- 유 형 자 산	131조 3,343억 9,700만원
- 기타비유동자산	1조 2,555억 2,700만원임.

(2) 2025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20조 9,137억 1,2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18조 6,281억 5,800만원에 비하여 2조 2,85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동부채 4조 9,557억 2,100만원
- 장기차입부채 9조 7,340억 4,200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6조 2,239억 4,800만원임.

(3) 202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37조 8,499억 9,1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136조 5,827억 4,700만원에 비하여 1조 2,67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정순자산 120조 739억 9,900만원
- 특정순자산 5조 5,490억 7,300만원
- 일반순자산 12조 2,269억 1,900만원임.

(4)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356억 3,100만원 흑자로 2024회계연도 8,232억 9,700만원 적자에 비하여 1조 2,589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44조 2,856억 8,000만원
- 비 용 43조 8,500억 4,900만원
- 재정운영결과 4,356억 3,100만원 흑자임.

## 라. 성과보고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46개 정책사업목표의 454개 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은 71건, 달성은 294건, 미달성은 89건임.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 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 2133-3239)